

**2021년도 신한은행**

#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신한은행**

본 공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 3. 3

신한은행 은행장 진옥동



## CONTENTS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     |
|---------------------------|-----|
| 1. 지배구조 일반 .....          | 1   |
| 2. 이사회 .....              | 17  |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 66  |
|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 115 |
| 5. 대표이사 경영승계 .....        | 174 |
| 5-2.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 180 |
| 6. 감사위원회 .....            | 188 |
| 7. 위험관리위원회 .....          | 209 |
|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 232 |

###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     |
|----------------|-----|
| 1. 보수위원회 ..... | 233 |
| 2. 보수체계 .....  | 243 |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1. 지배구조 일반

####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신한은행(이하 "당행")은 주주,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및 다양성 등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지배구조의 투명성

당행은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규정,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및 은행법 등 관련 법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배구조 관련 공시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배구조법 및 동법 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보고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 은행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정기주주총회에 이를 제출하여 주주,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당행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투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둘째, 정관,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 규정 전문을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당행 지배구조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셋째, 주주총회 결과,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등 당행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시에도 지체 없이 은행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 내 지배구조 관련 공시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info.shinhan.com/hpe/index.jsp#300301040000>

## 2) 지배구조의 건전성

당행은 건전한 지배구조의 구현을 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법, 지배구조법, 은행법 등 외부 법령과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규정 등의 내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배구조를 특정 소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하게 분산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선임에 있어서 은행 등<sup>1</sup>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이사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등의 건전한 견제를 위하여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법적요건인 과반 등을 상회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Clubby Boards)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비상임이사 1인을 포함하는 등 지배구조가 분산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3)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당행은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지배구조 내부규범<sup>2</sup>에 명문화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법이 전문성 요건으로 제시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의 7개 분야 내의 전문가로 고르게 이사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

<sup>1</sup> 지주회사인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를 포함합니다.

<sup>2</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조(이사회 구성) 제3항

경영 현안에 대하여 특정 배경이나 이해관계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배경의 실무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성 요건을 당행 내규에 명문화<sup>3</sup> 하였으며, 해당 요건을 사외이사 선임 및 후보군 관리에 충실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소비자보호/정보기술/글로벌금융 분야 사외이사 후보군 신설, 2021년 ESG 분야 후보군을 신설하는 등 사외이사의 전문분야 다양성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 [참고] 전문분야별 이사회 구성현황

| 구 분        | 금융 | 경제 | 경영 | 회계 | 법률 | 기타 | 총원 |
|------------|----|----|----|----|----|----|----|
| 2018년 12월말 | 4명 | -  | 1명 | 1명 | 2명 | 1명 | 9명 |
| 2019년 12월말 | 4명 | -  | 1명 | 1명 | 2명 | 1명 | 9명 |
| 2020년 12월말 | 4명 | -  | 1명 | 1명 | 2명 | 1명 | 9명 |
| 2021년 12월말 | 5명 | -  | 1명 | 1명 | 1명 | 1명 | 9명 |

※ 기타: 디지털 전문가

#### [참고] 전문분야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구 분        | 금융    | 경제    | 경영    | 회계    | 법률    | 소비자보호 | 정보기술  | 글로벌금융 | ESG  |
|------------|-------|-------|-------|-------|-------|-------|-------|-------|------|
| 2017년 12월말 | 25.7% | 15.6% | 16.5% | 12.8% | 13.8% | 7.3%  | 8.3%  | -     | -    |
| 2018년 12월말 | 18.2% | 14.4% | 14.4% | 16.7% | 14.4% | 10.6% | 11.3% | -     | -    |
| 2019년 12월말 | 17.6% | 14.3% | 15.4% | 14.3% | 12.1% | 9.3%  | 10.4% | 6.6%  | -    |
| 2020년 12월말 | 16.8% | 11.5% | 12.8% | 11.5% | 17.7% | 13.3% | 10.6% | 5.8%  | -    |
| 2021년 12월말 | 20.5% | 10.2% | 10.7% | 9.8%  | 16.4% | 12.3% | 9.8%  | 6.1%  | 4.1% |

둘째,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군 관리에 있어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주주인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 지원부서, 외부 자문기관 등 다양한 경로의

<sup>3</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이사의 자격요건) 제6항 제1호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관리하여 다양성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당행은 이사회 내 여성 사외이사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충분한 실무경험을 갖춘 여성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탐색·검증하여, 여성후보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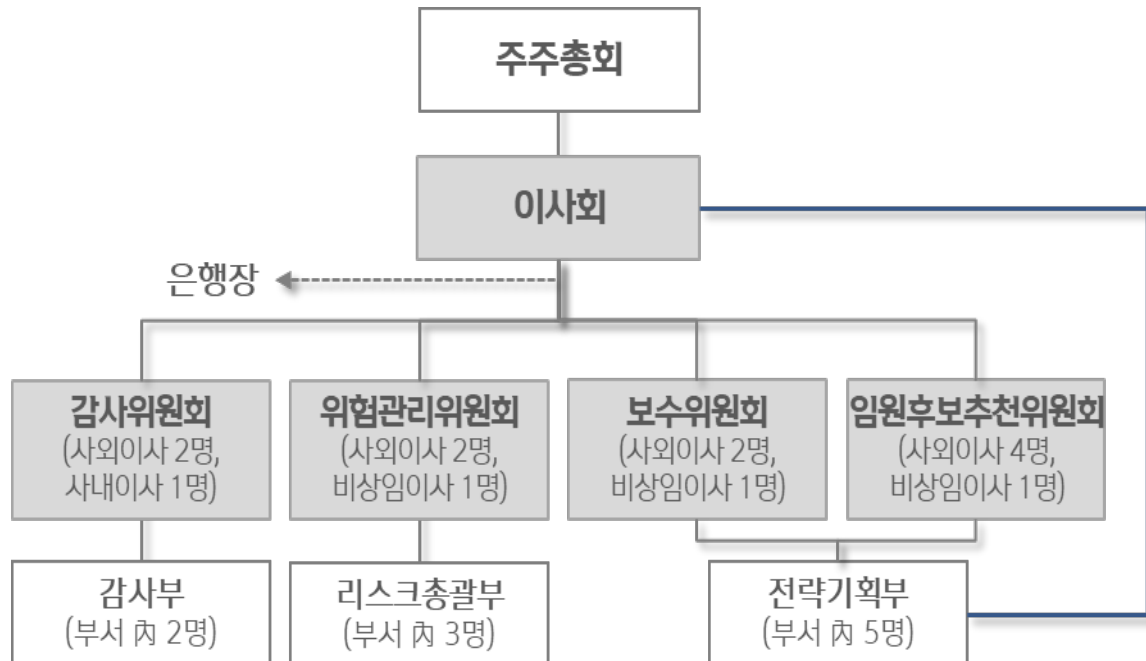
[참고] 사외이사 후보군 중 여성 후보 현황

| 구 분        | 여성후보 수 | 전체 후보군 수 | 여성후보 비율 |
|------------|--------|----------|---------|
| 2017년 12월말 | 16명    | 109명     | 14.6%   |
| 2018년 12월말 | 23명    | 132명     | 17.4%   |
| 2019년 12월말 | 30명    | 182명     | 16.5%   |
| 2020년 12월말 | 64명    | 226명     | 28.3%   |
| 2021년 12월말 | 63명    | 244명     | 25.8%   |

넷째, 이사회 구성이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자기 권력화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폭넓은 연령대의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시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제적인 글로벌 환경 변화 인식을 통해 당행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해안을 얻고자 후보자의 국적을 고려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나. 지배구조 현황

### 1) 조직도



### 2) 지배구조의 특징

당행 이사회는 은행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2021년말 기준 총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금융 및 경제 전문가, 경영 전문가,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디지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사회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행은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4개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는 상임감사위원 1명, 금융 및 회계 전문가 사외이사 1명, 디지털 전문가 사외이사 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을 포함하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 CEO를 역임한 사외이사 1명,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법률전문가 사외이사 1명과 은행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비상임이사(지주회사 부사장)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법률전문가 사외이사 1명, 금융 및 경영 전문가 사외이사 1명 및 비상임이사(지주회사 부사장)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수위원회 내 '금융회사 또는 회사에서 금융, 회계 또는 재무 경험이 있는 자 1인 이상' 조건은 은행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비상임이사가 당해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합니다. 2021년도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일정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제4차 및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4명 위원으로 사외이사 3명 및 비상임이사(지주회사 부사장) 1명으로 운영되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 5명 위원 중 사외이사 4명 및 비상임이사(지주회사 부사장) 1명으로 사외이사 구성비중을 높게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3) 지배구조 현황(요약)

#### <2021. 3. 24. 제189기 정기주주총회 이전>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sup>4</sup> | 의장(위원장)       | 관련 규정               |
|------|--------------------------------------------|-----------------|---------------|---------------------|
| 이사회  | 은행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 6/9             | 박원식<br>(사외이사) | 신한은행 정관,<br>이사회 규정, |

<sup>4</sup> 사외이사수/총인원수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sup>4</sup> | 의장(위원장)       | 관련 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정관 등 중요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li> <li>-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 조직의 주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li> <li>- 은행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li> <li>- 대주주·임원등과 은행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li> <li>- 은행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은행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li> </ul>                                     |                 |               | 지배구조 내부규범                          |
| 감사위원회 | <p>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li> <li>-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등</li> <li>-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의 제시</li> <li>- 내부감사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li> <li>-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li> <li>-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li> <li>-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li> <li>- 관계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li> <li>-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li> </ul> | 2/3             | 윤승한<br>(사외이사) | 신한은행 정관,<br>감사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sup>4</sup> | 의장(위원장)       | 관련 규정                    |
|-------------|--------------------------------------------------------------------------------------------------------------------------------------------------------------------------------------------------------------------------------------------------------------------------------------------------------------------------------------------------------------|-----------------|---------------|--------------------------|
|             | 사항에 대한 감사                                                                                                                                                                                                                                                                                                                                                    |                 |               |                          |
| 위험관리<br>위원회 | <p>은행이 직면하는 모든 리스크의 인식 등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li> <li>- 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li> <li>-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li> <li>-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li> <li>- 그 밖에 은행의 위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ul>                                                                                      | 2/3             | 이성우<br>(사외이사) | 위험관리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보수위원회       | <p>경영진 등의 평가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고 운영되도록 다음의 사항을 수행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에 대한 평가체계 및 보수체계의 확정</li> <li>- 경영진에 대한 평가안 및 보수안의 확정</li> <li>-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li> <li>-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안의 결정</li> <li>- 경영진, 본부장,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li> <li>- 은행의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li> </ul> | 2/3             | 서기석<br>(사외이사) | 보수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임원후보        | -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 4/5             | 인호            | 임원후보                     |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sup>4</sup> | 의장(위원장) | 관련 규정                  |
|-------|---------------------------------------------------------------------------------------------------------------------------------------------------------------------------|-----------------|---------|------------------------|
| 추천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li> <li>-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li> <li>- 감사위원회위원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li> <li>- 은행장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li> </ul> |                 | (사외이사)  | 추천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2021. 3. 24. 제189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sup>5</sup> | 의장(위원장)       | 관련 규정                              |
|-------|-----------------------------------------------------------------------------------------------------------------------------------------------------------------------------------------------------------------------------------------------------------------------------------------------------------------------------------------------------------------------------------------------------------------------------|-----------------|---------------|------------------------------------|
| 이사회   | <p>은행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정관 등 중요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li> <li>-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 조직의 주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li> <li>- 은행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li> <li>- 대주주·임원등과 은행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li> <li>- 은행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은행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li> </ul> | 5/8             | 박원식<br>(사외이사) | 신한은행 정관,<br>이사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감사위원회 | <p>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li> </ul>                                                                                                                                                                                                                                                                                                | 2/3             | 윤승한<br>(사외이사) | 신한은행 정관,<br>감사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sup>5</sup> 사외이사수/총인원수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sup>5</sup> | 의장(위원장)       | 관련 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등</li> <li>-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의 제시</li> <li>- 내부감사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li> <li>-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li> <li>-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li> <li>-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li> <li>- 관계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li> <li>-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감사</li> </ul> |                 |               |                          |
| 위험관리<br>위원회 | <p>은행이 직면하는 모든 리스크의 인식 등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li> <li>- 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li> <li>-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li> <li>-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li> <li>- 그 밖에 은행의 위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ul>                                                             | 2/3             | 김명희<br>(사외이사) | 위험관리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보수위원회       | <p>경영진 등의 평가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고 운영되도록 다음의 사항을 수행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에 대한 평가체계 및 보수체계의 확정</li> </ul>                                                                                                                                                                                                    | 2/3             | 서기석<br>(사외이사) | 보수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sup>5</sup> | 의장(위원장)                 | 관련 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에 대한 평가안 및 보수안의 확정</li> <li>-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li> <li>-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안의 결정</li> <li>- 경영진, 본부장,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li> <li>- 은행의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li> </ul> |                 |                         |                                |
| 임원후보<br>추천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li> <li>-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li> <li>-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li> <li>- 감사위원회위원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li> <li>- 은행장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li> </ul>                                                             | 3/4             | 박원식<br>(위원장대행,<br>사외이사) | 임원후보<br>추천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2021. 4. 1. 제190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이후>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sup>6</sup> | 의장(위원장)       | 관련 규정                            |
|------|------------------------------------------------------------------------------------------------------------------------------------------------------------------------------------------------|-----------------|---------------|----------------------------------|
| 이사회  | <p>은행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정관 등 중요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li> <li>-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ul> | 6/9             | 박원식<br>(사외이사) | 신한은행 정관,<br>이사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sup>6</sup> 사외이사수/총인원수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sup>6</sup> | 의장(위원장)       | 관련 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의 주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li> <li>- 은행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li> <li>- 대주주·임원등과 은행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li> <li>- 은행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은행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li> </ul>                                                                                                                                                   |                 |               |                                    |
| 감사위원회       | <p>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li> <li>-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등</li> <li>-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의 제시</li> <li>- 내부감사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li> <li>-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li> <li>-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li> <li>-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li> <li>- 관계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li> <li>-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감사</li> </ul> | 2/3             | 윤승한<br>(사외이사) | 신한은행 정관,<br>감사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위험관리<br>위원회 | 은행이 직면하는 모든 리스크의 인식 등<br>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 2/3             | 임상현<br>(사외이사) | 위험관리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sup>6</sup> | 의장(위원장)       | 관련 규정                          |
|---------------|--------------------------------------------------------------------------------------------------------------------------------------------------------------------------------------------------------------------------------------------------------------------------------------------------------------------------------------------------------------|-----------------|---------------|--------------------------------|
|               | <p>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li> <li>- 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li> <li>-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li> <li>-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li> <li>- 그 밖에 은행의 위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ul>                                                                                                                                |                 |               |                                |
| 보수위원회         | <p>경영진 등의 평가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고 운영되도록 다음의 사항을 수행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에 대한 평가체계 및 보수체계의 확정</li> <li>- 경영진에 대한 평가안 및 보수안의 확정</li> <li>-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li> <li>-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안의 결정</li> <li>- 경영진, 본부장,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li> <li>- 은행의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li> </ul> | 2/3             | 서기석<br>(사외이사) | 보수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임원후보<br>추천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li> <li>-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li> <li>-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li> <li>- 감사위원회위원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li> </ul>                                                                                                                                                                                  | 4/5             | 김명희<br>(사외이사) | 임원후보<br>추천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sup>6</sup> | 의장(위원장) | 관련 규정 |
|------|---------------------|-----------------|---------|-------|
|      | - 은행장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                 |         |       |

<2021. 12. 28. 제190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 이후>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sup>7</sup> | 의장(위원장)       | 관련 규정                              |
|-------|-----------------------------------------------------------------------------------------------------------------------------------------------------------------------------------------------------------------------------------------------------------------------------------------------------------------------|-----------------|---------------|------------------------------------|
| 이사회   | 은행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br>-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br>- 정관 등 중요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br>-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br>- 조직의 주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br>- 은행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br>- 대주주·임원등과 은행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br>- 은행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br>- 은행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br>- 기타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 | 6/9             | 박원식<br>(사외이사) | 신한은행 정관,<br>이사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감사위원회 |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합니다.<br>-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br>-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등<br>-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의 제시                                                                                                                                                                                           | 2/3             | 윤승한<br>(사외이사) | 신한은행 정관,<br>감사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sup>7</sup> 사외이사수/총인원수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sup>7</sup> | 의장(위원장)       | 관련 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감사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li> <li>-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li> <li>-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li> <li>-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li> <li>- 관계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li> <li>-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감사</li> </ul>      |                 |               |                          |
| 위험관리<br>위원회 | <p>은행이 직면하는 모든 리스크의 인식 등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li> <li>- 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li> <li>-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li> <li>-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li> <li>- 그 밖에 은행의 위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ul> | 2/3             | 임상현<br>(사외이사) | 위험관리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보수위원회       | <p>경영진 등의 평가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고 운영되도록 다음의 사항을 수행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에 대한 평가체계 및 보수체계의 확정</li> <li>- 경영진에 대한 평가안 및 보수안의 확정</li> <li>-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li> </ul>                                                                       | 2/3             | 서기석<br>(사외이사) | 보수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sup>7</sup> | 의장(위원장)                              | 관련 규정                          |
|---------------|---------------------------------------------------------------------------------------------------------------------------------------------------|-----------------|--------------------------------------|--------------------------------|
|               |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br>-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br>평가 및 보수안의 결정<br>- 경영진, 본부장,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br>보수체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br>- 은행의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br>관련된 사항 |                 |                                      |                                |
| 임원후보<br>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br>-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br>-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br>- 감사위원회위원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br>- 은행장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 3/4             | 박원식 <sup>8</sup><br>(위원장대행,<br>사외이사) | 임원후보<br>추천위원회 규정,<br>지배구조 내부규범 |

#### 다. 관련 규정

- 첨부 1. 신한은행 정관
- 첨부 2. 이사회 규정
- 첨부 3. 감사위원회 규정
- 첨부 4.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 첨부 5. 보수위원회 규정
- 첨부 6.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 7.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 8.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sup>8</sup>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명희 이사의 사임(2021.12.28)으로, 2022년도 제1차 이사회(2022.1.14)에서 이인재 이사를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 동일자 개최된 2022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인재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기간내 위원회 활동은 없었습니다.

## 2. 이사회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1) 총괄

당행 이사회는 은행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주요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 재무기획, 리스크관리) 및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등을 비롯한 경영진 선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경영진이 수립한 경영전략을 승인하는 등의 은행 내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또한 건전한 견제기능을 통해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당행은 다양한 전문역량과 식견을 보유한 사외이사, 은행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한 사내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은행 내외의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구체적 역할<sup>9</sup>

당행은 이사회에의 구체적인 역할을 당행 내부 규정인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관 제42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가)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 내부규범<sup>10</sup>, 이사회 규정<sup>11</sup> 및 정관<sup>12</sup>에 의거,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행 이사회는 사업계획, 재무계획, 예산계획, 위험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경영계획을 수립·평가·최종승인하며, 내·외부 경영환경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경영계획을 수정할

---

<sup>9</sup> 이사회 부의시 주요 근거규정 기준으로 분류하여 기재하였습니다.

<sup>10</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이사회에의 권한과 책임) 제2항 제1호

<sup>11</sup> 신한은행 이사회규정 제10조(결의사항 등) 제2항 제3호 가목

<sup>12</sup> 신한은행 정관 제42조(이사회에의 결의 등) 제4항 제1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경영계획의 경우 2021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및 하반기 사외이사만의 회의(2021.11.8~2021.11.10)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 및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제13차 임시이사회(2021.12.28)에서 '2022년 경영계획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2022년 경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중심 RE:Boot! 한계를 뛰어넘는 Banking'을 전략목표로, 디지털 시대에 버려야 할 것을 Delete하고 지켜야 할 것을 Reload하기 위해 'Enhance Inside, Break Outside'를 전략슬로건으로 설정하고, 2022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방향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핵심영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미래 시장 선도(머니무브, MZ, HNWI), 기초체력 확대 통한 성장 가속화, 비이자 이익 기반 수익구조 다변화가 있습니다.

둘째, 차별화된 사회적 금융 선도 지속가능 경영 혁신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지속가능 경영 내재화(리스크/ESG), 글로벌 성장 선순환 체계 구축, 고객중심 경영 & 고객신뢰 강화가 있습니다.

셋째, 더 새로운 은행을 향한 2030 Master Plan 가속화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완성형 플랫폼 구축 및 외연 확장, 업의 경계를 넘는 New Biz 발굴, 디지털 핵심기술 내재화 혁신 선도가 있습니다.

넷째, 전략과 조직문화의 콜라보, RE:Boot 내재화입니다. RE:Boot 신한! 일하는 방식 전환(조직/HR/의사결정), 디지털컴퍼니 向 업무환경 구축이 있습니다.

(나)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당행 이사회는 '정관 및 중요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의<sup>13</sup>합니다.

2021년의 경우 2021년 3월 24일 제18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및 중요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상법 제388조에 의거 이사의 보수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와 이사회에의 위임 등을 통해 정하여 왔으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대한 조항은 없었던 바, 정관에 이사의 보수 내용을 추가하여 이사의 보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당행은 정관 이외에도 은행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영향도가 높은 사항에 대하여 중요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정관을 제외한 중요규정에는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위험관리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경영진운영규정, 경영진평가 및 보수규정, PU운영규정, 경영진 퇴직위로금 규정, 내부통제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고문운영규정 등 총 14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정관을 제외한 중요 규정의 개정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3월 24일 개최한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중요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으며, 이는 건전한 퇴직금 제도 운영 및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퇴직위로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자, 경영진 평가 및 보수규정, 경영진 퇴직위로금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21년 3월 24일 개최한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중요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으며, 이는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내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보전달을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규정상 이사회 보고시기를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8월 25일 개최한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 일부 개정

---

<sup>13</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제2항 제2호

승인'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는바,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1.3.25 시행)'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면서, 내부통제기준 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 내부규범<sup>14</sup>에서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sup>15</sup>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예산계획은 2021년 10월에 초안을 마련한 후, 2021년 11월 24일 개최한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2022년 예산계획 수립방향'이 포함된 '2022년 경영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하여 이사회 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 12월 28일 개최한 제13 임시이사회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디지털 신사업 등 차별적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및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한 핵심영역 경쟁력 강화 지원 관점의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편성의 3대 핵심방향으로 '차별적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 지원 강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전환 지원 강화', '효율적 자원 배분 지속 추진'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차별적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 지원 강화'의 주요 내용은 New Biz 발굴 및 추진 지원, 전략적 추진 사업의 업권 내 차별적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지원,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입니다.

둘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전환 지원 강화'의 주요 내용은 변화하는 환경에

---

<sup>14</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제2항 제3호

<sup>15</sup> 신한은행 이사회 규정 제10조(결의사항 등) 제2항 제3호 나목

대응하기 위한 New Platform 구축 지원, 디지털 핵심기술 내재화를 통한 혁신 선도 지원, 디지털컴퍼니 向 업무환경 구축 지원입니다.

셋째, '효율적 자원 배분 지속 추진'의 주요 내용은 저마진, 금융환경대응 지원 배분 효율화 추진입니다.

위의 편성방향을 근거로 2022년 예산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경비예산은 인건비 17,550억원, 물건비 8,950억원 등 28,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0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업무용부동산 2,740억원, 업무용동산 1,140억원 등 11,790억원으로 전년대비 65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행은 예산계획과 더불어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21년 1월 초안을 마련하였고, 2021년 2월 4일 개최한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2021년 2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21년 2월 24일 개최한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제189기 결산 회계감사 결과를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였고, 2021년 3월 24일 개최한 제18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재무상태

당행, 해외현지법인 및 연결대상 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총자산은 약 428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3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준예치금 3.2조,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3.1조, 원화대출 24조, 외화대출 2.6조 증가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연결기준으로 당행의 총 부채는 약 400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33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원화예수금 27.2조, 외화예수금 4.98조, 차입부채 3.2조 증가 등이 주요인입니다.

## ② 영업실적

연결기준으로 당행의 2020년 당기순이익은 2조 782억원으로 전년대비 2,510억원(△10.8%) 감소하였습니다.

순이자이익은 대출증가 등에 의해 전년대비 557억원(+0.9%)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손익은 신탁보수수료 수익과 투자금융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전년대비 1,298(△11.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판매관리비는 종업원 관련 비용은 증가하였으나, 꾸준한 전략적 비용절감노력 등으로 전년대비 605억원(△1.9%) 감소하였습니다.

## ③ 배당

2020년 사업연도 결산배당은 7,700억원으로 전액 현금배당이며, 전년대비 1,200억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연결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은 37.06%로 전년대비 1.15%p 감소하였습니다.

###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지배구조 내부규범<sup>16</sup>은 '조직의 주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사결정권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sup>17</sup> 및 '중요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sup>18</sup>을 이사회 의사결정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중요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2021년 5월 4일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The NEXT 프로젝트 사업 시스템 통합 개발 계약체결 승인'을 결의하였으며, 2021년 11월 24일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고객상담센터 상담업무

<sup>16</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이사회 의사결정권과 책임) 제2항 제4호

<sup>17</sup> 신한은행 이사회규정 제10조(결의사항 등) 제2항 제3호 라목

<sup>18</sup> 신한은행 이사회규정 제10조(결의사항 등) 제2항 제8호

도급계약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sup>19</sup>은 '은행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사결정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은 '내부통제제도 기본 체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sup>20</sup>을 이사회 의사결정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구조 내부규범<sup>21</sup>은 '은행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사결정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sup>22</sup>을 이사회 의사결정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의 수립 및 조정
- 자본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은행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총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위원회 부의대상 안건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에 따라 2021년 12월 28일 개최한 제13차 임시이사회에서 '2022년 자본관리 계획 승인' 및 '2022년 은행 리스크 총한도 설정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BIS 자기자본비율<sup>23</sup>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발행을 2021년 중 2차례 결의하였습니다.

####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

<sup>19</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이사회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 제2항 제7호

<sup>20</sup> 신한은행 이사회규정 제10조(결의사항 등) 제2항 제7호

<sup>21</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이사회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 제2항 제8호

<sup>22</sup> 신한은행 이사회규정 제10조(결의사항 등) 제2항 제9호

<sup>23</sup>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에서 정한 은행의 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 기준을 의미합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sup>24</sup>은 '은행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은 '이사 등에 관한 사항'<sup>25</sup> 및 '은행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sup>26</sup>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이사 등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제외)
- 은행장 외의 경영진, 경영진급 국외현지법인장,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고문의 위촉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단, 계약 해지의 경우, 기간 만료 또는  
타인의 상근임원이 되거나 타인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자동 해지 되는 경우  
제외)
-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 이사 보수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사외이사 및 이사회등 평가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 은행장 직무대행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이에 따라 2021년 3월 24일 개최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 선임',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기준 결정',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사외이사 및  
이사회등 평가에 관한 사항',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보수 결정', '은행장 직무대행  
기준 결정'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선임(재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하여서는 동일자 개최된 제189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28일 개최된 제190기 제2차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인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

<sup>24</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이사회 권한과 책임) 제2항 제5호

<sup>25</sup> 신한은행 이사회규정 제10조(결의사항 등) 제2항 제4호

<sup>26</sup> 신한은행 이사회규정 제10조(결의사항 등) 제2항 제6호

또한, 경영진(업무집행책임자)과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고문위촉을 2021년 12월 28일 개최한 제13차 임시이사회를 통하여 결의하였습니다. 부행장, 상무 등의 임기 만기에 따른 인사조치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사) 이해상충 행위 관리·감독

지배구조 내부규범<sup>27</sup>은 '대주주·임원등과 은행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에 관한 사항'<sup>28</sup>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에 의거하여,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와의 모든 거래를 이사회 결의 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계열사간 거래 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와의 거래는 2020년도 제11차 임시이사회(2020.12.24)에서 결의하였으며, 본 승인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 및 중요한 거래는 별도의 안건으로 이사회에 부의하여 결의 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관련 결의(신한캐피탈(주)가 운용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구분된 안건으로 부의하는 등 당행 이사회는 이해상충행위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아) 기타

지배구조 내부규범<sup>29</sup>은 '기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다 명확한 지배구조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배구조법의 주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에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

<sup>27</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이사회 권한과 책임) 제2항 제6호

<sup>28</sup> 신한은행 이사회규정 제10조(결의사항 등) 제2항 제5호

<sup>29</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이사회 권한과 책임) 제2항 제9호

상기 '(가) 내지 (아)' 항목 이외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주주총회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여신에 관한 중요사항
- 관계법령 및 감독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 소유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 이사회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 기타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당행 이사회는 사외이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이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 및 이사회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매년 정기 주주총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당행은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내용을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24일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2021년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결의하여, 동일자 개최된 제189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나. 구성(이사)

### 1) 총괄

당행 이사회는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됩니다.<sup>30</sup>

최소 인원을 5명으로 규정한 것은 제1금융권 금융회사로서 사업의 다양성 및 복잡성 등을 감안 시 이사수가 4명 이하인 경우 은행의 경영전략 및 목표 수립, 그

---

<sup>30</sup> 신한은행 정관 제32조(이사의 수) 제1항

이행여부를 감독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사회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장과 상임감사위원이 이사회 구성원인 점을 감안 시,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외이사 과반 조항 준수를 위해서는 사외이사가 최소 3명이 필요하게 되며, 이 경우 최소 이사 수가 5명이 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배구조법<sup>31</sup>상 사외이사 최소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최대 인원을 11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이사가 12명 이상인 경우,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반영하여 당행은 2006년 4월 통합 신한은행 출범 이후부터 이사회를 최소 8명, 최대 11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로 정하고 있습니다.<sup>32</sup>

이는 지배구조법 제12조에서 정한 사외이사 최소 인원수 및 사외이사 과반 조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당행은 실제 운영에 있어 2007년 5월 이후 최소 5명의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과반수 요건을 충족함은 물론,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원칙을 구현하였습니다.

2021년말 당행 이사회는 총 9명의 이사(사외이사 6명, 사내이사 2명, 비상임이사 1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속하여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sup>33</sup> 이는 사외이사의 자기 권력화(Clubby Boards)를 견제하고자 임기를 제한한 것입니다.

---

<sup>31</sup> 지배구조법 제12조 제1항, 제2항

<sup>32</sup> 신한은행 정관 제32조(이사의 수) 제1항

<sup>33</sup> 신한은행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 제1항 제1호

2021년말 재임 이사에 관한 임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 은행장인 진옥동 이사는 2019년 3월 26일 개최한 제18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20년 12월 31일을 임기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24일 개최한 제189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2022년 12월 31일을 임기로 연임되었습니다. (선임일: 2021년 1월 1일)

사내이사이자 상임감사위원인 허창언 이사는 2017년 12월 29일 개최한 제186기 제3차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2018년 1월 1일부로 2년 임기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27일 개최한 제188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2020년 12월 31일을 임기로 연임된 바 있으며 (선임일: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24일 개최한 제189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2021년 12월 31일을 임기로 재연임되었습니다. (선임일: 2021년 1월 1일)

비상임이사인 노용훈 이사는 2019년 12월 27일 개최한 제188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2020년 12월 31일을 임기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24일 개최한 제189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2021년 12월 31일을 임기로 연임되었습니다. (선임일: 2021년 1월 1일)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24일 개최한 제18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만료된 3명(박원식, 이성우, 인호) 이사 중 1명(박원식) 이사가 1년 임기로 연임되었으며, 김명희 이사는 2년 임기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임기: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시까지) 또한 2021년 4월 1일 개최한 제190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상현 이사가 2년 임기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임기: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시까지) 김명희 이사가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2021년 12월 28일 사임하고, 동일자에 개최한 제190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인재 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임기: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사외이사의 경우)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임기간 중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행의 이사(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당행은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당행 정관<sup>34</sup>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sup>35</sup>에 명시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및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은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는 모두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당행 사외이사의 전문분야를 해당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디지털전문가 1명, 경영전문가 1명, 회계전문가 1명, 법률전문가 1명, 금융전문가 2명이며, 상임이사 2인은 금융전문가, 비상임이사 1명은 디지털 전문가로 이사회 구성원이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는 2018년 3월 21일부터 당행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며 이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 출신의 금융 전문가, 박원식 사외이사를 2020년 3월 25일 개최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였으며, 2021년 3월 24일 개최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연임하였습니다.

---

<sup>34</sup> 신한은행 정관 제35조(사외이사의 자격기준) 제1항 제1호

<sup>35</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이사의 자격요건) 제6항

## 2) 구성원<sup>36</sup>

### (가) 이사회회장 박원식(사외이사)

박원식 이사는 제186기 정기주주총회(2018.3.21)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2년 3월 개최 예정인 제190기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 주요 경력        |
|----------|----------|--------------|
| From     | To       |              |
| 2014.06월 | 2016.05월 | 보험연구원 초빙자문위원 |
| 2012.04월 | 2014.05월 | 한국은행 부총재     |
| 2010.08월 | 2012.03월 | 한국은행 부총재보    |
| 2010.05월 | 2010.07월 | 한국은행 총무국 국장  |
| 2008.04월 | 2010.04월 | 한국은행 비서실 실장  |
| 1982.01월 |          | 한국은행 입행      |

9 이사는 제188기 정기주주총회일(2020.3.25)부터 현재까지 당행 이사회와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감사위원회(2018.3.21~2020.3.25), 보수위원회(2018.3.21~2020.3.25),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20.3.25~현재), 위험관리위원회(2021.3.24~2021.4.1)<sup>37</sup>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보수위원회 위원장(2018.3.21~2020.3.25)을 역임 하였습니다.

<sup>36</sup> 이사회 구성원은 2021년말 기준 현임 이사회 의장 및 이사 중 사외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순으로 기재하되 의장을 제외하고 최초 선임일 순으로 기재하였으며, 최초 선임일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퇴임 이사에 대한 기술은 최근 퇴임일 순으로 기재하였으며, 현임 이사에 관한 내용에 연속하여 상기 순서에 따라 기재하였습니다.

<sup>37</sup> 해당 기간내 위원회 활동은 없었습니다.

(나) 이사 서기석 (사외이사)

서기석 이사는 제188기 정기주주총회일(2020.3.25)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2022년 3월 개최 예정인 제190기 정기 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 주요 경력         |
|----------|----------|---------------|
| From     | To       |               |
| 2013.04월 | 2019.04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     |
| 2013.02월 | 2013.03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
| 2012.02월 | 2013.02월 |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
| 2010.08월 | 2012.02월 |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
| 2010.02월 | 2010.07월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으로는 보수위원회(2020.3.25~현재), 감사위원회(2020.3.25~2021.4.1), 위험관리위원회(2021.4.1~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보수위원회 위원장(2020.3.25~현재)을 역임 하였습니다.

(다) 이사 윤승한 (사외이사)

윤승한 이사는 제188기 정기주주총회일(2020.3.25)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2022년 3월 개최 예정인 제190기 정기 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 주요 경력            |
|----------|----------|------------------|
| From     | To       |                  |
| 2014.07월 | 2020.07월 |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행정부회장 |
| 2010.03월 | 2010.05월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연구위원 |
| 2008.06월 | 2010.03월 | 금융감독원 도쿄사무소 소장   |

| 기 간      |          | 주요 경력          |
|----------|----------|----------------|
| From     | To       |                |
| 2007.08월 | 2008.06월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국장 |
| 2006.04월 | 2007.08월 | 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 국장 |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으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20.3.25~현재), 감사위원회(2020.3.25~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감사위원회 위원장(2020.3.25~현재)을 역임 하였습니다.

(라) 이사 임상현 (사외이사)

임상현 이사는 제190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일(2021.4.1)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2023년 3월 개최 예정인 제191기 정기 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 주요 경력           |
|----------|----------|-----------------|
| From     | To       |                 |
| 2017.01월 | 2020.12월 | IBK기업은행 전무이사    |
| 2016.07월 | 2016.12월 | IBK저축은행 대표이사    |
| 2014.01월 | 2015.12월 | IBK기업은행 경영지원그룹장 |
| 2013.07월 | 2013.12월 | IBK기업은행 경영전략그룹장 |
| 2013.01월 | 2013.06월 | IBK기업은행 충청지역본부장 |
| 2011.01월 | 2012.12월 | IBK기업은행 퇴직연금부장  |
| 2010.01월 | 2010.12월 | IBK기업은행 외환사업부장  |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으로는 위험관리위원회(2021.4.1~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21.4.1~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2021.4.1~현재)을 역임하였습니다.

(마) 이사 이인재 (사외이사)

이인재 이사는 제190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일(2021.12.28)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2023년 3월 개최 예정인 제191기 정기 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 주요 경력           |
|----------|----------|-----------------|
| From     | To       |                 |
| 2018.03월 | 2020.12월 | 삼성카드 디지털본부장 부사장 |
| 2015.12월 | 2018.02월 | 삼성카드 디지털본부장 전무  |
| 2013.12월 | 2015.11월 | 삼성카드 경영혁신실장 전무  |
| 2007.01월 | 2013.11월 | 삼성카드 상무         |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으로는 감사위원회 (2021.12.28~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하였습니다.

(바) 이사 이흔야 (사외이사)

이흔야 이사는 제188기 정기주주총회일(2020.3.25)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2022년 3월 개최 예정인 제190기 정기 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 주요 경력               |
|----------|----------|---------------------|
| From     | To       |                     |
| 2016.03월 | 2018.02월 |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
| 2015.06월 | 2019.01월 | 주식회사 제일스포츠센터 감사     |
| 2014.06월 | 2015.06월 | 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상임이사 |
| 2011.07월 | 2014.05월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 2005.01월 | 2014.12월 | 유한회사 유휘물산 이사        |
| 1983.01월 | 2005.12월 | 주식회사 환신 대표이사        |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으로는 보수위원회 (2020.3.25~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하였습니다.

(사) 이사 허창언(상임감사위원/사내이사)

허창언 이사는 제186기 제3차 임시주주총회(2017.12.29)에서 최초 선임(임기시작일: 2018.1.1)되었으며,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제188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2019.12.27), 제189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2020.12.24)에서 연임되었습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 주요 경력           |
|-----------|----------|-----------------|
| From      | To       |                 |
| 2018.01월  | 2021.12월 | 신한은행 상임감사위원     |
| 2015. 12월 | 2017.12월 | 금융보안원 제2대 원장    |
| 2013.05월  | 2015.12월 |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
| 2011.04월  | 2013.05월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  |
| 2010.03월  | 2011.04월 |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 소장  |
| 2009.03월  | 2010.03월 | 금융감독원 공보실 국장    |
| 2008.06월  | 2009.03월 | 금융감독원 법무실장      |
| 2007      | 2008     | 금융감독원 감사실 팀장    |
| 1997      | 1999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조사역  |
| 1987      |          | 한국은행 입행         |

허창언 이사는 당행의 감사 전반을 담당하는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감사위원회 위원(2018.1.1~2021.12.31)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사 진옥동(대표이사 은행장/사내이사)

진옥동 이사는 제187기 정기주주총회(2019.3.26)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2년 12월31일에 만료됩니다. 제 189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2020.12.24)에서 연임되었습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 주요 경력              |
|-----------|----------|--------------------|
| From      | To       |                    |
| 2019.03월  | 현재       | 신한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
| 2017.03월  | 2019.03월 |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운영 담당) |
| 2017.01월  | 2017.03월 | 신한은행 부행장 (경영지원그룹장) |
| 2015.06월  | 2017.01월 | SBJ은행 법인장          |
| 2014.01월  | 2015.06월 | SBJ은행 부사장          |
| 2011. 12월 | 2014.01월 | (日) SH캐피탈 사장       |
| 2009. 12월 | 2011.12월 | SBJ은행 오사카지점장       |
| 2008.03월  | 2009.12월 | 오사카지점장             |
| 2004.07월  | 2008.03월 | 자금부 팀장             |
| 2002.09월  | 2004.07월 | 여신심사부 부부장 겸 심사역    |
| 1997.07월  | 2002.09월 | 오사카지점 차장           |
| 1996.01월  | 1997.07월 | 명동지점 대리            |
| 1992.07월  | 1996.01월 | 인재개발실 대리           |
| 1986.11월  |          | 신한은행 입행            |

(자) 이사 노용훈 (비상임이사)

노용훈 이사는 제188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2019.12.27)에서 최초 선임(임기시작일: 2020.1.1)되었으며,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제189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2020.12.24)에서 연임되었습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 주요 경력              |
|----------|----------|--------------------|
| From     | To       |                    |
| 2020.01월 | 2021.12월 |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
| 2017.07월 | 2019.12월 | 신한은행 글로벌사업본부장      |
| 2013.01월 | 2017.01월 | 신한금융지주회사 글로벌사업팀 부장 |
| 2012.01월 | 2013.01월 | 대치동지점장             |
| 2008.03월 | 2012.01월 | 신한카자흐스탄은행 조사역      |
| 2007.01월 | 2008.03월 | 가치혁신본부 팀장          |

| 기 간      |          | 주요 경력   |
|----------|----------|---------|
| From     | To       |         |
| 2003.08월 | 2007.01월 | 자금부 부부장 |
| 2001.07월 | 2003.08월 | 자금부 대리  |
| 1997.02월 | 2001.07월 | 뉴욕지점 대리 |
| 1993.04월 | 1997.02월 | 국제부 행원  |
| 1990.09월 | -        | 신한은행 입행 |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으로는 위험관리위원회(2020.1.1~2021.12.31), 보수위원회(2020.1.1~2021.12.31),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20.1.1~2021.12.31)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차) 이사 김명희 (사외이사, 퇴임)

김명희 이사는 제189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24)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에 신규 선임됨에 따라, 제190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2021.12.28)시 사임하였습니다.

| 기 간      |          | 주요 경력                                       |
|----------|----------|---------------------------------------------|
| From     | To       |                                             |
| 2020.05월 | 2020.06월 | 한컴MDS 대표이사                                  |
| 2017.02월 | 2020.02월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                          |
| 2013.02월 | 2016.12월 | SK텔레콤 솔루션컨설팅본부 본부장                          |
| 2013.01월 | 2013.02월 | 한국IBM ITS(Infra Technology Service), GTS 상무 |
| 2012.04월 | 2012.12월 | 한국IBM SSO(Server System Operation), GTS 상무  |
| 2010.04월 | 2012.04월 | 한국IBM SM(Service Managemnet), GTS 상무        |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으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21.3.24~2021.12.28), 감사위원회(2021.4.1~2021.12.28), 위험관리위원회(2021.3.24~2021.4.1)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활동기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2021.3.24~2021.12.28),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2021.3.24~2021.4.1)<sup>38</sup>을 역임하였습니다.

(카) 이사 인호 (사외이사, 퇴임)

인호 이사는 제184기 정기주주총회일(2016.3.23)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189기 정기 주주총회일(2021.3.24)에 만료되었습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 주요 경력                          |
|-------|-------|--------------------------------|
| From  | To    |                                |
| 2016년 | 현재    | 금융위원회 핀테크 정책자문단 위원             |
| 2016년 | 현재    | 고려대학교 연구기획위원회 SW 연구단장          |
| 2015년 | 현재    | 글로벌핀테크연구원 디지털커런시 센터장           |
| 2012년 | 현재    | 고려대 무인자율 및 적응형 SW 센터장          |
| 2004년 | 2007년 | San Francisco State Univ. 겸임교수 |
| 2003년 | 현재    |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 교수                 |
| 1999년 | 2003년 | Texas A&M University 조교수       |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으로는 위험관리위원회(2016.3.23~2021.3.24),  
보수위원회(2017.3.22~2018.3.2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8.3.21~2021.3.24)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보수위원회 위원장(2017.3.22~2018.3.2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2018.3.21~2021.3.24)을 역임하였습니다.

(타) 이사 이성우 (사외이사, 퇴임)

이성우 이사는 제185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일(2016.5.25)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189기 정기 주주총회일(2021.03.24)에 만료되었습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sup>38</sup> 해당 기간내 위원회 활동은 없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 주요 경력                    |
|----------|----------|--------------------------|
| From     | To       |                          |
| 2015.09월 | 현재       |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          |
| 2007.09월 | 현재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2006.03월 | 2007.08월 |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임연구위원          |
| 1998.04월 | 2006.02월 | 예금보험공사 기획관리부/법무실/특별조사기획부 |
| 1989.11월 | 1998.03월 | 조흥은행 국제부/종합기획부/국제금융부     |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으로는 위험관리위원회(2016.5.25~2021.3.24), 보수위원회(2016. 5.25~2017.3.22),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16.11.30~2021.3.24)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2016.5.25~2021.3.24)을 역임하였습니다.

### 3) 요약

| 성명  | 구분   | 직위     | 경력                                                                | 최초<br>선임일 | 임기<br>만료일      | 재임<br>기간 <sup>39</sup> | 담당<br>위원회    |
|-----|------|--------|-------------------------------------------------------------------|-----------|----------------|------------------------|--------------|
| 박원식 | 사외이사 | 이사회 의장 | 한국은행 비서실장<br>한국은행 총무국 국장<br>한국은행 부총재보<br>한국은행 부총재<br>보험연구원 초빙자문위원 | 18.3.21   | 22.3월<br>정기주총일 | 46개월                   | 임추위<br>위험관리위 |
| 서기석 | 사외이사 | 보수위원장  | 청주지방법원 법원장<br>수원지방법원 법원장<br>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br>헌법재판소 재판관             | 20. 3.25  | 22.3월<br>정기주총일 | 22개월                   | 보수위<br>위험관리위 |
| 윤승한 | 사외이사 | 감사위원장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국장                                                    | 20. 3.25  | 22.3월          | 22개월                   | 감사위          |

<sup>39</sup> 재임기간은 2021년 12월말 기준(1개월 미만시 1개월로 계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단위 : 개월)

| 성명  | 구분           | 직위      | 경력                                                             | 최초<br>선임일 | 임기<br>만료일      | 재임<br>기간 <sup>39</sup> | 담당<br>위원회           |
|-----|--------------|---------|----------------------------------------------------------------|-----------|----------------|------------------------|---------------------|
|     |              |         | 금융감독원 도교사무소 소장<br>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연구위원<br>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행정부회장         |           | 정기주총일          |                        | 임추위                 |
| 임상현 | 사외이사         | 위험관리위원장 | IBK기업은행 전무이사<br>IBK저축은행 대표이사<br>IBK기업은행 경영지원/경영전략 그룹장          | 21.4.1    | 23.3월<br>정기주총일 | 10개월                   | 위험관리위<br>임추위        |
| 이인재 | 사외이사         | -       | 삼성카드 디지털본부장(부사장)<br>삼성카드 디지털본부장(전무)<br>삼성카드 경영혁신실장(전무)         | 21.12.28  | 23.3월<br>정기주총일 | 1개월                    | 감사위                 |
| 이혼야 | 사외이사         | -       |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br>재일스포츠허터 감사<br>재일한국상공회의소 상임이사                  | 20.3.25   | 22.3월<br>정기주총일 | 22개월                   | 보수위                 |
| 진옥동 | 상임이사         | 은행장     | 신한금융지주 부사장<br>신한은행 부행장<br>SBJ은행 법인장<br>(E)SH캐피탈 사장             | 19.3.26   | 22.12.31       | 34개월                   | -                   |
| 허창언 | 상임이사         | 상임감사위원  | 금융보안원 원장<br>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br>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                  | 18.1.1    | 21.12.31       | 48개월                   | 감사위                 |
| 노용훈 | 비상임이사        | 비상임이사   |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br>신한은행 글로벌사업본부장<br>신한금융지주회사 글로벌사업팀 부장            | 20.1.1    | 21.12.31       | 24개월                   | 위험관리위<br>보수위<br>임추위 |
| 김명희 | 사외이사<br>(퇴임) | -       | 경기대 겸임교수<br>투비웨이(주) 빅데이터기술원장<br>한컴MDS 대표이사<br>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 | 21.3.24   | 21.12.28       | 10개월                   | 감사위<br>위험관리위<br>임추위 |
| 인호  | 사외이사<br>(퇴임) | -       | 고려대 대학원 컴퓨터공학 교수<br>금융위원회 핀테크 정책자문단 위원<br>글로벌핀테크연구원 센터장        | 16.3.23   | 21.3.24        | 61개월                   | 위험관리위<br>임추위        |
| 이성우 | 사외이사<br>(퇴임) | -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임연구위원<br>예금보험공사<br>기획관리부/법무실       | 16.5.25   | 21.3.24        | 59개월                   | 위험관리위<br>임추위        |

※ 감사위(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보수위원회), 임추위(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다. 활동내역

### 1) 활동내역 개요

2021년도에는 총 17회의 이사회(정기이사회 분기별 1회, 임시이사회 총 13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100.0%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이사 모두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140건으로, 결의안건 67건, 보고안건 70건입니다. 결의안건 67건 중 6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3건은 수정결의되어 총 67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결의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 전 대면 사전설명을 통하여 안건의 내용이 숙지된 상태에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① 2021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2021년 2월 4일(목) 10시 00분 ~ 11시 3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1월 20일(수), 소집 통지일: 2021년 1월 27일(수)]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이성우 | 인호 | 이훈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가. 2020년 경영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나. 2020년 연간<br>감사활동 결과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다. 2020년 4분기<br>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라. 2020년 4분기<br>위험관리위원회 정책수행<br>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항 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가결여부 |    |
|-----------------------------------------------------|--------------------------------------------|----------|----|----|----|----|----|----|----|------|----|
|                                                     | 마. 2020년 하반기<br>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바. 2020년 하반기<br>임원후보추천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사. 2020년 4분기<br>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아. 본부장 등 선임 및<br>임기만료 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자. 2019년도<br>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br>결과 (2020년 수검)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차. 2020년<br>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br>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카. 2020년<br>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br>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 가. 제189기 결산안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제189기 배당금 결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2020년 12월말 기준<br>대손준비금 적립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br>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설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장외파생상품의 은행<br>비예금상품 내부통제<br>모범규준 적용 제외에 관한<br>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바. 계열사간 거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는 9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6건 및 보고안건 총 11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본 이사회는 상법에 의거

정기 주주총회일 6주 전에 감사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기 위한 결산이사회로서 제189기 결산안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 결의-가. 제189기 결산안 승인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 제189기 결산을 종료하고 제18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결의하였습니다.

#### 결의-나. 제189기 배당금 결정

제189기 결산 종료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결정하였습니다.

#### 보고-가. 2020년도 경영현황

2020년도 재무성과, 사업그룹별 주요 재무현황, 연간 은행 전략과제 이행실적, 불건전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사후 영향평가 결과, 점포 변동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보고-나. 2020년 연간 감사활동 결과

본부감사 등, 해외감사, 영업점 현장감사, 특별감사, 상각 매각 감사, 정보보고·상시점검, 일상감사 등 유형별로 2020년 연간 감사활동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② 2021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2021년 3월 4일(목) 09시 50분 ~ 11시 3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2월 17일(수), 소집 통지일: 2021년 2월 24일(수)]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이성우 | 인호 | 이훈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가. 2020년<br>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항 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가결여부 |    |
|-------------------------------------------|--|----------|----|----|----|----|----|----|----|------|----|
| 보고                                        |  |          |    |    |    |    |    |    |    |      |    |
| 나. 2020년도 외부감사인<br>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br>결과 보고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다. 2020년<br>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br>적정성 평가결과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라. 2021년도<br>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br>평가계획 보고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마. 2020년 준법감시<br>프로그램 구축 상황 및<br>운영 결과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바. 2020년<br>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br>점검결과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사. 2020년 4분기 재산상<br>의 이익제공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아. 뉴욕지점 사이버보안<br>프로그램 준수에 관한 사항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자. 감사위원회 결의사항<br>보고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차. 보수위원회 결의사항<br>보고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카.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 가. 「재산상 이익제공 및<br>부정청탁 금지 등에 관한<br>지침」 개정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재산상 이익제공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2030 중장기 경영전략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는 9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3건 및 보고안건 총 11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 결의-나. 재산상 이익제공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서울대학교병원 협약기간 연장 및 추가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 결의-다. 2030 중장기 경영전략

미래 디지털 시대 지속가능 경영과 금융업 선도를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③ 2021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2021년 3월 15일(월) 8시 30분 ~ 9시 3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3월 9일(화), 소집 통지일: 2021년 3월 9일(화)<sup>40</sup>]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이성우 | 인호 | 이훈야 | 허창언 | 노용훈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 가. 재산상 이익 제공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는 9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1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 결의-가. 재산상 이익 제공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sup>40</sup> 상법 제390조(이사회 소집) 제3항, 신한은행 정관 제40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제4항에 의거, 이사 전원으로부터 소집기간 단축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을 전담 관리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 참여에 따른 출연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④2021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2021년 3월 24일(수) 9시 20분 ~ 11시 0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3월 9일(화), 소집 통지일: 2021년 3월 16일(화)]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이성우 | 인호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가. 대주주의<br>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br>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br>관한 사항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나. 2020년<br>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br>실태 점검결과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다. 뉴욕지점 2021년<br>「BSA/AML/OFAC<br>Compliance Program」<br>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라. 2019년 금융감독원<br>종합검사 제재내용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마. 위험관리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바. 보수위원회 결의사항<br>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신한캐피탈(주)가 운영하는<br>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금융소비자보호기준』<br>제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 가결여부 |
|-----------------------------|----------|----|----|----|----|----|----|----|----|----|------|
| 다. 정관 및 중요규정의 개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2021년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제189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바. 채권 발행한도 설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사. 채권발행 일괄신고서 제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아. 계열사간 거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자.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출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는 9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9건, 보고안건 총 7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결의-가. 신한캐피탈(주)가 운용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의 확보 및 신속한 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를 위해 당행 계열사인 신한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설립 추진 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총 900억원 출자하는 것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1.3.25. 시행)’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임직원 기본 수칙을 마련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라. 2021년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이사회 규정에<sup>41</sup> 따라,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인 '2021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부의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총 31억원 한도를 결의하였습니다.

보고-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자산의 무산양도 등에 관한 사항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5 제1항 제4호에 의거, 매년 자산의 무산양도 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는 바, 당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2020년도 자산의 무산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결과 보고 하였습니다.

⑤ 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2021년 3월 24일(수) 13시 30분 ~ 14시 0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3월 9일(화), 소집 통지일: 2021년 3월 16일(화)]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가. 감사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나. 사외이사 등이<br>속한 비영리법인 등에<br>대한 은행의 기부금 제공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가. 이사회 의장 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이사회 의장<br>직무대행 기준 결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br>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사외이사 및 이사회등<br>평가에 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사외이사 및<br>비상임이사 보수 결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sup>41</sup> 신한은행 이사회규정 제10조(결의사항 등) 제2항 제1호 나목

| 항 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가결여부 |
|-------------------|--|----------|----|----|----|----|----|----|----|------|
| 바. 은행장 직무대행 기준 결정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는 8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6건, 보고안건 총 2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 결의-가. 이사회 의장 선임

이사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중 1인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본건 부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들에 대해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며, 지난 1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안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이사회 운영을 원활히 조율하였던 박원식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 결의-다.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위원회의 전문성 유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의 변화 및 법령 및 내규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 요건, 연속 재임일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습니다.<sup>42</sup>

- ① 위험관리위원회: 김명희, 박원식, 노용훈
- ② 보수위원회: 서기석, 이혼야, 노용훈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박원식, 윤승한, 김명희, 노용훈

#### 결의-바. 은행장 직무대행 기준 결정

은행장 유고 시를 대비한 은행장 직무대행 순위를 결의하였습니다. 부행장 중 선임일

<sup>42</sup>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 감사위원회(21.3.24 기준): 윤승한, 서기석, 허창언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되, 선임일이 동일한 경우 은행장이 정한 임원 서열순으로 결정하는 등, 임원 선임일과 은행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⑥ 2021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2021년 4월 1일(목) 8시 40분 ~ 9시 0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3월 17일(수), 소집 통지일: 2021년 3월 24일(수)]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가. 원화 상각형<br>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br>발행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제190기 제1차<br>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br>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는 8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2건, 보고안건 총 1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결의-가.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발행

BIS자기자본비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4,000억원 이내에서, 2021년 상반기 중 발행(단,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⑦ 2021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2021년 4월 1일(목) 9시 20분 ~ 9시 3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3월 17일(수), 소집 통지일: 2021년 3월 24일(수)]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가. 감사위원회 결의사항<br>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나. 협업 신사업<br>추진을 위한 지분 매입<br>보고 |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br>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는 9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1건, 보고안건 총 2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결의-가.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상현 이사의 신규 선임 등 이사회 구성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습니다.<sup>43</sup>

- ① 위험관리위원회: 임상현, 서기석, 노용훈
- ② 보수위원회: 서기석, 이혼야, 노용훈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김명희, 박원식, 윤승한, 임상현, 노용훈

⑧ 2021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2021년 4월 21일(수) 14시 00분 ~ 15시 3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4월 6일(화), 소집 통지일: 2021년 4월 13일(화)]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sup>43</sup>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 감사위원회(21.4.1 기준): 윤승한, 김명희, 허창언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br>라임CI펀드 관련 조정결정<br>수락여부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br>라임CI펀드 관련 조정결정<br>건 外 고객에 대한 배상<br>기준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수정)가결 |
| 다. 아름드리 신탁 7호,<br>9호 배상 기준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수정)가결 |

2021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는 9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3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결의-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CI펀드 관련 조정결정 수락여부 결정의 건

라임CI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의-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CI펀드 조정결정건 外 고객에 대한 배상 기준 결정의 건

라임CI펀드 조정결정건 外 고객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CI펀드 관련 조정결정과 동일한 배상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의-다. 아름드리 신탁 7호, 9호 배상 기준 결정의 건

아름드리 신탁 7호, 9호 소비자 피해발생에 따른 사적화해 방식의 배상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⑨ 2021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 2021년 5월 4일(화) 8시 30분 ~ 10시 0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4월 19일(월), 소집 통지일: 2021년 4월 26일(월)]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계열사간 거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The NEXT 프로젝트<br>사업 시스템 통합 개발<br>계약체결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br>운영 규정」 제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br>판매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는 9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4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결의-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운영 규정」 제정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5.10. 시행)'에서 규정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의 방법과 절차를 정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금융투자협회 제정)을 내규에 반영하고자, 이사회 승인을 통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결의-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승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15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고난도금융투자상품(ELT, ELF, 레버리지/리버스 펀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판매승인을 하였습니다.

⑩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2021년 5월 20일(목) 15시 00분 ~ 17시 0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5월 4일(화), 소집 통지일: 2021년 5월 12일(수)]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가. 2021년 1분기<br>경영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나. 2021년 1분기<br>대손준비금 적립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다. 2021년<br>내부회계관리제도<br>평가대상 범위 선정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라. 2020년<br>자금세탁방지체계의<br>이행수준과 효과에 대한<br>평가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마. 2020년 전사적<br>자금세탁 위험결과(RBA)<br>결과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바. 2021년 1분기<br>고객정보 제공 및<br>이용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사. 2021년 1분기<br>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아. 2020년 연간 재산상<br>이익제공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자. 2021년 1분기<br>비예금상품위원회<br>운영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차. 위험관리위원회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항 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 결의사항 보고                                      |          |    |    |    |    |    |    |    |    |      |
|         | 카.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타. Modern Slavery<br>Statement 제정<br>(시드니지점)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         | 가. 대주주의<br>특수관계인 등에 대한<br>신용공여한도 설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계열사간 거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는 9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2건, 보고안건 총 12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결의-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설정 승인

은행법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항에 의거, 은행은 신한생명보험에 대한 당좌대출 한도를 증액하고, 신한카드 인도네시아법인에 대한 외화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보고-라. 2020년 자금세탁방지체계의 이행수준과 효과에 대한 평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sup>44</sup>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이행수준과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2021년 5월 20일 제8차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 자금세탁방지체계의 이행수준과 효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⑪ 2021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 2021년 7월 23일(금) 15시 00분 ~ 17시 0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7월 8일(목), 소집 통지일: 2021년 7월 15일(목)]

<sup>44</sup>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조(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 제2항 제1호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가. 조직개편 주요 내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나. 본부장 등 재선임 및 임기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운영 규정」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싱가포르지점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자 선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재산상 이익제공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45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는 9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3건, 보고안건 총 2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 결의-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운영 규정」 개정 승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승인 관련 이사회 위임 문구를 정비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금융투자협회 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규정 내 일부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하고자,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 결의-나. 싱가포르지점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자 선임 승인

싱가포르법규에 따라, 싱가포르지점에서 발생하는 싱가포르 법규에 따른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자를 선임하는 승인을 검토하여, 싱가포르지점장 등이 해당 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

<sup>45</sup> 본인과 관련된 안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⑫ 2021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2021년 8월 25일(수) 14시 30분 ~ 16시 3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8월 10일(화), 소집 통지일: 2021년 8월 17일(화)]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가. 2021년 상반기<br>경영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나. 2021년 2분기<br>대손준비금 적립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다. 2021년 2분기<br>재산상 이익 제공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라. 2021년 2분기<br>고객정보 제공 및<br>이용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마. 2021년 2분기<br>비예금상품위원회<br>운영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바. 위험관리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사. 보수위원회 결의사항<br>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아. 은행장 경영승계계획<br>관련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br>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br>설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계열사간 거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금융소비자보호<br>내부통제규정」 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지배구조 내부규범」<br>일부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마. 「금융소비자보호규정」<br>전부 개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바. 재산상 이익제공<br>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는 9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6건 및 보고안건 총 8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결의-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제정 승인 / 결의-마.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전부 개정 승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1.3.25 시행)’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고,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기준’ (은행연합회 제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제정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전부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보고-아. 은행장 경영승계계획 관련 보고

당행은 지배구조내부규범<sup>46</sup>에 의거 은행장 경영승계계획 개요, 2020년 은행 소속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및 개발활동 결과, 2021년 은행 소속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⑬ 2021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 2021년 9월 13일(월) 13시 30분 ~ 14시 0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8월 27일(금), 소집 통지일: 2021년 9월 3일(금)]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sup>46</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1조(은행장 경영승계 원칙) 제3항 및 제4항

| 항 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가결여부 |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재산상 이익제공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는 9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1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결의-가. 재산상 이익 제공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강원도금고 및 충북도금고 은행 선정 경쟁입찰 제안을 위한 출연을 위해, 이사회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승인하였습니다.

⑭ 2021년도 제11차 임시이사회: 2021년 10월 8일(금) 10시 30분 ~ 11시 4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9월 23일(목), 소집 통지일: 2021년 9월 30일(목)]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설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발행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신한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11차 임시이사회는 9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3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결의-다. 신한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당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통보함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까지(3개월이내)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 제출이 필요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바, 이사회는 신한은행 자체정상화계획(案)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⑮ 2021년도 제12차 임시이사회: 2021년 11월 5일(금) 16시 00분 ~ 18시 0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11월 3일(수), 소집 통지일: 2021년 11월 4일(목)<sup>47)</sup>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훈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사모펀드 4종 (교보글로벌M, 유경 15호, 피델리스 13개, 디스커버리 13개) 배상기준(안)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수정)가결 |

2021년도 제12차 임시이사회는 9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1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결의-가. 사모펀드 4종 (교보글로벌M, 유경 15호, 피델리스 13개, 디스커버리 13개)

<sup>47)</sup> 상법 제390조(이사회 소집) 제3항, 신한은행 정관 제40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제4항에 의거, 이사 전원으로부터 소집기간 단축동의를 득하였습니다.

## 배상기준(안) 승인

사모펀드 4종 (교보 글로벌M, 유경15호, 피델리스 13개, 디스커버리 13개)에 투자한 소비자 피해발생에 대해 사적화해 방식의 배상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배상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⑯ 2021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2021년 11월 24일(수) 16시 00분 ~ 18시 00분  
[자료 발송일 : 2021년 11월 5일(금), 소집 통지일: 2021년 11월 16일(화)]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가. 조직개편 주요 내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나. 2022년 경영계획 수립방향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다. 2021년도 3분기 경영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라. 2021년도 3분기 대순준비금 적립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마. 2021년도 3분기 재산상 이익제공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바. 2021년도 3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사. 2021년도 3분기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아.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평가 결과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자.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br>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br>설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재산상 이익제공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계열사간 거래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고객상담센터<br>상담업무 도급계약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는 9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4건 및 보고안건 총 10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 결의-다. 계열사간 거래 승인

당행은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인정 절차 통한 인정사업자 지위 취득하여 이에 따른 통합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신한카드와의 전자서명 인증서비스 제공계약 승인에 대해 이사회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보고-나. 2022년 경영계획 수립방향

2022년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2022년 경영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최종 경영계획 수립 전에 전략방향과 재무계획의 정합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2022년 사업계획 세부 추진안, 2022년 재무계획 수립 방향, 2022년 예산계획 수립방향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⑰ 2021년도 제13차 임시이사회: 2021년 12월 28일(수) 15시 30분 ~ 17시 30분  
[자료 발송일: 2021년 12월 13일(월), 소집 통지일: 2021년 12월 20일(월)]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훈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 가결여부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나. 조직개편 주요 내용                           |          |    |    |    |    |    |    |    |    |    |      |
| 다. 감사위원회 결의사항<br>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라. 위험관리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 가. 2022년 경영계획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2년 자본관리 계획<br>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채권 발행한도 설정<br>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채권 발행 일괄신고서<br>제출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2022년 은행 리스크<br>총한도 설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2022년 계열사간 거래<br>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사. 2021년 신한은행<br>안전보건관리계획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아.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br>출연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자. 경영진(업무집행책임자)<br>선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차. 위험관리책임자 선임<br>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카. 고문 위촉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타. 제190기 제2차<br>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br>확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2021년도 제13차 임시이사회는 9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12건 및 보고안건 총 4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습니다.

#### 결의-가. 2022년 경영계획 승인

2021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및 2021년 하반기 사외이사만의 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2022년 경영계획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2022년 경영계획 승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중심 RE:Boot! 한계를 뛰어넘는 Banking!』을 전략목표로, 조직의 유연성과 함께 강력한 실행력을 강조하는 『Enhance Inside, Break Outside』를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2022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방향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핵심영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미래 시장 선도(머니무브, MZ, HNWI), 기초체력 확대 통한 성장 가속화, 비이자 이익 기반 수익구조 다변화가 있습니다.

둘째, 차별화된 사회적 금융 선도 지속가능 경영 혁신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지속가능 경영 내재화 (리스크/ESG), 글로벌 성장 선순환 체계 구축, 고객중심 경영 & 고객신뢰 강화가 있습니다.

셋째, 더 새로운 은행을 향한 2030 Master Plan 가속화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완성형 플랫폼 구축 및 외연 확장, 업의 경계를 넘는 New Biz 발굴, 디지털 핵심기술 내재화 혁신 선도가 있습니다.

더불어, 2022년 재무계획, 예산계획 등도 결의하였습니다.

#### 결의-마. 2022년 은행 리스크 총한도 설정

당행의 리스크를 가용자본 대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2년 은행 리스크 총한도를 전년대비 1조 9,100억원 증가한 22조 4,700억원으로

결의하였습니다.

#### 결의-바. 2022년 계열사간 거래 승인

상법<sup>48</sup>에 따라 당행과 계열사간 거래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2022년도 신규 또는 갱신 예정인 거래에 대하여 각 회사별/거래 유형별 발생 예상액 한도를 승인하였으며, 본 건 부의 시 포함되지 않은 계열사간 거래 이슈가 발생하거나, 기존 승인받은 유형별 한도를 초과하는 건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건별로 이사회 승인 후 거래할 예정입니다.

#### 결의-자. 경영진(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

부문장(겸직 경영진)으로, 장동기(임기 1년, 연임), 안효열(임기 1년, 연임), 이영종, 서승현, 부행장으로 배시형(임기 1년, 연임), 오한섭, 박현주, 정용기, 박성현, 상무로 신희정(임기 1년, 연임), 홍석영, 배종화를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 결의-차.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승인

위험관리책임자로 배종화 상무를 선임(임기 2년)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 1) 이사회 평가

당행은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충실한 수행을 위한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 및 반영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및 건전한 경영진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매년초 전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개최 빈도의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범위와 깊이의

---

<sup>48</sup>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적정성, 은행으로부터의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기 점검은 객관성과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본 평가 외에도 사외이사만의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당행은 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와 관련하여, 정기 주주총회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당해 년도에 실시할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제189기 정기 주주총회(2021. 3.24) 직후에 개최된 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2021.3.24)에서 '사외이사 및 이사회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 1월 중 2021년도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평가는 자기평가(본인평가), 이사회 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에 의한 평가) 및 직원평가(이사회 지원부서 부서장)로 구성됩니다.

당행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시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 보유 정도,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률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은행 성과를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행장은 그룹 KPI, 은행 KPI, 전략과제로 구성된 업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상임감사위원은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룹 및 은행의 경영실적과는 연동이 되지 않게 감사위원회에서 전략과제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해당사항 없음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행은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25일 제5차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별도로 운영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과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도부터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만 운영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은행장,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sup>49</sup>로,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후보로 추천할 책임<sup>50</sup>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한은 은행장 후보 추천,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감사위원 후보 추천 등입니다.<sup>51</sup>

지배구조 내부규범<sup>52</sup>에서 명시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되고,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하지 않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를

<sup>49</sup>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은행장 후보 추천) 제1항, 제7조(사외이사 후보 추천) 제1항, 제8조(감사위원 후보 추천)

<sup>50</sup>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은행장 후보 추천) 제1항, 제7조(사외이사 후보 추천) 제2항, 제8조(감사위원 후보 추천)

<sup>51</sup>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5조(결의사항 등) 제1항

<sup>52</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조(이사회 구성) 제3항

추천하고 있음은 물론 이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군을 탐색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법<sup>53</sup>이 제시한 전문분야별(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정보기술)로 후보군을 관리<sup>54</sup>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후보군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부,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추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 전략기획부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후보군 관리내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sup>55</sup>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당행은 은행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도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이사 4명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 구성

당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합니다. 2021년도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일정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제4차 및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4명 위원으로 사외이사 3명 및 비상임이사(지주회사 부사장) 1명으로 운영되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 5명 위원 중

---

<sup>53</sup>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4항

<sup>54</sup> 당행은 전문분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글로벌 분야 및 2021년부터 ESG 전문가 후보군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sup>55</sup>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5조(결의사항 등) 제3항

사외이사 4명 및 비상임이사(지주회사 부사장) 1명으로 사외이사 구성비중을 높게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당행 지배구조 내부규범<sup>56</sup>에서 규정하는 과반 조건을 초과하는 사외이사 비율(75~80%)을 유지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Clubby Boards)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추천을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89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24) 이전>

| 성명  | 구분  | 직위  | 위원회 선임일/임기만료일        | 약력                                                   |
|-----|-----|-----|----------------------|------------------------------------------------------|
| 인호  | 사외  | 위원장 | 2018.3.21~2021.정기주총일 | 現)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br>금융위원회 핀테크 정책자문단<br>위원             |
| 박원식 | 사외  | 위원  | 2018.3.21~2022.정기주총일 | 現)동국대학교 객원교수<br>한국은행 부총재<br>보험연구원 초빙자문위원             |
| 윤승한 | 사외  | 위원  | 2020.3.25~2022.정기주총일 |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행정부회장<br>금융감독원 도쿄사무소 소장<br>월드뱅크(IBRD) 근무  |
| 이성우 | 사외  | 위원  | 2017.3.22~2021.정기주총일 | 現)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br>금융위 평가위원회 위원장 |
| 노용훈 | 비상임 | 위원  | 2020.1.1~2021.12.31  |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br>신한은행 글로벌사업본부장<br>신한금융지주 글로벌사업팀 부장    |

#### <제189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24) 이후>

| 성명 | 구분 | 직위 | 위원회 선임일/임기만료일 | 약력 |
|----|----|----|---------------|----|
|----|----|----|---------------|----|

<sup>56</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4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항

|     |     |             |                      |                                                     |
|-----|-----|-------------|----------------------|-----------------------------------------------------|
| 박원식 | 사외  | 위원장<br>직무대행 | 2018.3.21~2022.정기주총일 | 現)동국대학교 객원교수<br>한국은행 부총재<br>보험연구원 초빙자문위원            |
| 윤승한 | 사외  | 위원          | 2020.3.25~2022.정기주총일 |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행정부회장<br>금융감독원 도쿄사무소 소장<br>월드뱅크(IBRD) 근무 |
| 김명희 | 사외  | 위원          | 2021.3.24~2023.정기주총일 | 경기대 겸임교수<br>투비웨이(주) 빅데이터기술원장<br>한컴MDS 대표이사          |
| 노용훈 | 비상임 | 위원          | 2020.1.1~2021.12.31  |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br>신한은행 글로벌사업본부장<br>신한금융지주 글로벌사업팀 부장   |

<제190기 1차 임시주주총회일(2021.4.1) 이후>

| 성명  | 구분  | 직위  | 위원회 선임일/임기만료일        | 약력                                                    |
|-----|-----|-----|----------------------|-------------------------------------------------------|
| 김명희 | 사외  | 위원장 | 2021.3.24~2023.정기주총일 | 경기대 겸임교수<br>투비웨이(주) 빅데이터기술원장<br>한컴MDS 대표이사            |
| 박원식 | 사외  | 위원  | 2018.3.21~2022.정기주총일 | 現)동국대학교 객원교수<br>한국은행 부총재<br>보험연구원 초빙자문위원              |
| 윤승한 | 사외  | 위원  | 2020.3.25~2022.정기주총일 |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행정부회장<br>금융감독원 도쿄사무소 소장<br>월드뱅크(IBRD) 근무   |
| 임상현 | 사외  | 위원  | 2021.4.1~2023.정기주총일  | IBK기업은행 전무이사<br>IBK저축은행 대표이사<br>IBK기업은행 경영지원/경영전략 그룹장 |
| 노용훈 | 비상임 | 위원  | 2020.1.1~2021.12.31  |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br>신한은행 글로벌사업본부장<br>신한금융지주 글로벌사업팀 부장     |

<제190기 2차 임시주주총회일(2021.12.28) 이후><sup>57</sup>

| 성명  | 구분  | 직위          | 위원회 선임일/임기만료일        | 약력                                                    |
|-----|-----|-------------|----------------------|-------------------------------------------------------|
| 박원식 | 사외  | 위원장<br>직무대행 | 2018.3.21~2022.정기주총일 | 現)동국대학교 객원교수<br>한국은행 부총재<br>보험연구원 초빙자문위원              |
| 윤승한 | 사외  | 위원          | 2020.3.25~2022.정기주총일 |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행정부회장<br>금융감독원 도쿄사무소 소장<br>월드뱅크(IBRD) 근무   |
| 임상현 | 사외  | 위원          | 2021.4.1~2023.정기주총일  | IBK기업은행 전무이사<br>IBK저축은행 대표이사<br>IBK기업은행 경영지원/경영전략 그룹장 |
| 노용훈 | 비상임 | 위원          | 2020.1.1~2021.12.31  |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br>신한은행 글로벌사업본부장<br>신한금융지주 글로벌사업팀 부장     |

## 다. 선임기준

### 1) 후보 자격요건

신한은행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등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은행장, 감사위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은행장 후보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하는 임원의 자격요건(결격사유)<sup>58</sup>
-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은행의 비전을

<sup>57</sup> 위원장이었던 김명희 이사의 사임(2021.12.28)으로, 2022년도 제1차 이사회(2022.1.14)에서 이인재 이사를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 동일자 개최된 2022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인재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기간내 위원회 활동은 없었습니다.

<sup>58</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6조(경영진의 자격요건) 제1항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사람<sup>59</sup>

감사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명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

<sup>59</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6조(경영진의 자격요건) 제3항, 제5항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행은 사외이사로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은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2) 후보 추천 절차

2021년도 당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신한은행 정관 및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사외이사 및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후보추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2021년 3월, 4월, 12월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12월에는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후보추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은행장 후보 추천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은행장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은행장 후보로 추천<sup>60</sup>
- 은행장 후보를 추천한 경우 은행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에 하기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함<sup>61</sup>

### 1. 은행장 후보 추천절차 개요

### 2.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명단과 약력

<sup>60</sup>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은행장 후보 추천) 제1항

<sup>61</sup>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6조(은행장 후보 추천) 제2항

3. 은행장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은행장 후보 추천 이유
6. 은행장 후보의 경력
7. 기타 은행장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감사위원 후보 추천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sup>62</sup>
-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sup>63</sup>
-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은행장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경우 은행장의 의결권 수는 재적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sup>64</sup>

또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sup>65</sup>
-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sup>66</sup>
-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sup>67</sup>
-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금융회사

---

<sup>62</sup>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감사위원 후보 추천)

<sup>63</sup>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결의방법) 제1항

<sup>64</sup>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결의방법) 제3항

<sup>65</sup>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사외이사 후보 추천) 제1항

<sup>66</sup>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사외이사 후보 추천) 제2항

<sup>67</sup>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사외이사 후보 추천) 제4항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sup>68</sup>

-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sup>69</sup>

-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은행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에 하기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함<sup>70</sup>

1. 사외이사후보추천절차 개요
2.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4. 사외이사 후보와 은행 등(지주회사, 그 계열회사 포함),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내규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상시적인 검증을 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다양한 시각을 담을 수 있도록 자격검증된 후보군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주주총회에 부의되어 최종 선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당행은 다양한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주주인 신한금융지주회사, 외부 자문기관, 지원부서로부터 추천받은 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은행장, 감사위원,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후보군 관리

<sup>68</sup>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사외이사 후보 추천) 제5항

<sup>69</sup>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사외이사 후보 추천) 제3항

<sup>70</sup>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사외이사 후보 추천) 제6항

등을 위하여 2021년 총 9차례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2월 4일 개최한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상시적인 후보군 관리를 위한 연속성 있는 선임 기준 마련을 위해 사외이사 선임원칙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외이사 인선기준, 임기, 선임일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사외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사외이사의 평가결과, 이사회의 전문성, 다양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사외이사 평가결과에 대하여도 보고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평가 대상자 6명 전원이 사외이사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사외이사 재선임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1년 3월 4일 개최한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박원식, 이성우, 인호 사외이사 중 이성우, 인호 사외이사가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디지털과 금융 분야의 신입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및 우선순위를 결의하였습니다. 전문분야별 균형있는 후보군 확보 및 향후 중요성 증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산업에 이해도가 높은 16명의 후보군을 새롭게 확보하였으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 여성전문가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후보 중 28.3%의 여성 후보군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4일 개최한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먼저 사외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요건 검토를 보고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들에 대하여 상법, 지배구조법<sup>71</sup>, 동법 시행령<sup>72</sup> 등에서 자격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후보자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원식 후보자를 임기 1년 재선임, 김명희 후보자를 임기 2년 신규 선임으로 제189기 정기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서기석 후보자를 임기 2022년

---

<sup>71</sup>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sup>72</sup>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정기주주총회일로 하여 제189기 정기주주총회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 추천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4일 개최한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새로이 구성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들간 논의를 통하여 4월 초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 및 전체 이사회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전까지는 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정해진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를 준용하여, 박원식 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일 개최한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우선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토를 보고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상법, 지배구조법, 동법 시행령 등에서 자격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후보자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상현 후보자를 임기 2023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신규 선임으로 제190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김명희 후보자를 임기 2022년 정기주주총회일로 하여 제190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 추천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일 개최한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앞서 개최된 제6차 임시 이사회에서 새로이 구성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민간과 정부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김명희 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개최한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을 확정하였습니다. 전문분야별 균형있는 후보군 확보 및 향후 중요성 증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글로벌 분야 전문가 후보의 비중을 확대하고, 핵심 필요분야인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전문가를 지속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높이는 'ESG 경영'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 따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 후보군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 여성전문가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전체 후보 중 25.8%의 여성 후보군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개최한 제8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김명희 이사가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된 후보군 중 정보기술 분야에서 신임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및 우선순위를 결의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개최한 제9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우선 사외이사 예비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토를 보고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상법, 지배구조법, 동법 시행령 등에서 자격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후보자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인재 후보자를 임기 2023년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신규 선임으로 제190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이인재 후보자를 임기 2023년 정기주주총회일로 하여 제190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 추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창언 상임감사위원의 임기가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금융감독기관 근무 경험과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등 금융기관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찬우 후보자를 제190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 상임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 추천하였습니다.

2021년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9차례 모두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사외이사 후보와 감사위원회 위원후보, 상임감사위원 후보 등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① 2021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2월 4일(목) 09시 40분 ~ 10시 00분  
[소집통지일: 2021년 1월 27일(수)]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인호       | 박원식 | 이성우 | 윤승한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가결여부 |
|------------------------|----------|------|
| 3. 보고안건                |          |      |
| 가. 2020년도 사외이사<br>평가결과 | 특이 의견 없음 |      |
| 4. 결의안건                |          |      |
| 가.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가결   |

② 2021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3월 4일(목) 09시 30분 ~ 09시 50분  
[소집통지일: 2021년 2월 24일(수)]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인호 박원식 이성우 윤승한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보고안건 없음                  |                    |      |
| 4. 결의안건                  |                    |      |
|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br>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가결   |
| 나. 사외이사 예비후보군<br>확정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가결   |

③ 2021년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3월 24일(수) 09시 00분 ~ 09시 20분  
[소집통지일: 2021년 3월 16일(화)]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인호 박원식 이성우 윤승한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가.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br>요건 검토 | 특이의견 없음            |      |
| 4. 결의안건                 |                    |      |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찬성       | 의결권<br>제한 <sup>73</sup>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br>추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④ 2021년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3월 24일(수) 14시 15분 ~ 14시 25분  
[소집통지일: 2021년 3월 16일(화)]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윤승한 | 김명희 | 노용훈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                | 보고안건 없음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위원장 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가결   |

- ⑤ 2021년도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4월 1일(목) 08시 30분 ~ 08시 40분  
[소집통지일: 2021년 3월 24일(수)]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윤승한 | 김명희 | 노용훈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br>요건 검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가결   |

<sup>73</sup> 본인과 관련된 안건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었습니다.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가결여부 |
|-------------------|----------|----|----------------------|----|------|
| 나.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 찬성       | 찬성 | 의결권 제한 <sup>74</sup> | 찬성 | 가결   |

- ⑥ 2021년도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4월 1일(목) 09시 30분 ~ 09시 40분  
[소집통지일: 2021년 3월 24일(수)]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김명희                     | 박원식 | 윤승한 | 임상현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보고안건 없음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위원장 선임 | 의결권<br>제한 <sup>75</sup>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⑦ 2021년도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수) 15시 40분 ~ 16시 00분  
[소집통지일: 2021년 11월 16일(화)]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김명희      | 박원식 | 윤승한 | 임상현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보고안건 없음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br>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⑧ 2021년도 제8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12월 23일(목) 17시 40분 ~ 18시00분

<sup>74</sup> 본인과 관련된 안건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었습니다.

<sup>75</sup> 본인과 관련된 안건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었습니다.

[소집통지일: 2021년 12월 23일(목)<sup>76)</sup>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김명희      | 박원식 | 윤승한 | 임상현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보고안건 없음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br>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⑨ 2021년도 제9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12월 28일(목) 15시 00분 ~ 15시 20분  
[소집통지일: 2021년 12월 20일(월)]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김명희      | 박원식 | 윤승한 | 임상현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br>요건 검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br>추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상임감사위원 후보 추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3) 평가

<sup>76)</sup> 상법 제390조(이사회 소집) 제3항, 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제5항, 신한은행 정관 제40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제4항 및 제44조(위원회) 제3항에 의거, 위원 전원으로부터 소집기간 단축동의를 득하였습니다.

당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개선할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독립성 요건 및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행은 매년초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개최 빈도의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범위와 깊이의 적정성, 은행으로부터의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상기 점검은 객관성과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본 평가 외에도 사외이사만의 회의 등 다양한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 사항

##### 1) 대표이사 후보 추천

- 해당사항 없음(2021년 추천 사실 없음)

##### 2) 대표집행임원 후보

- 해당사항 없음

##### 3) 감사위원 후보

##### 3-1) 감사위원 후보(2021.3.24 추천)

##### (가) 후보자 인적 사항

(1) 성명: 서기석

(2) 출생연도: 1953년

(3) 출신학교: 경남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4) 경력: 제31페이지 참조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박원식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와의 특수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 제안자 추천 이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통하여, 법률적 전문성 및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감사위원회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감사위원으로서 훌륭히 활동한 점을 고려하여 서기석 후보자의 재선임을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 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서기석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sup>77</sup>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 윤승한 이사가 회계 전문가로서 본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한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 총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 시

---

<sup>77</sup> 지배구조법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준수하여 선임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1명 이상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사항 역시 운승한 이사를 추천절차 및 주주총회에서의 선임 시 분리하여 진행함으로써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sup>78</sup>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회계 및 재무 또는 관련업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1.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sup>78</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이사의 자격요건) 제8항

- 평가: 서기석 후보자는 1981년 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후 201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임까지 법관으로서 풍부한 법률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법률적 전문성 및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감사위원회 정합성을 제고하는 도움을 주는 등 감사위원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명은 이미 선임되어 있어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또한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 본인 소명: 본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본인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시 당행의 감사위원직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서기석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1년 3월 24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후 위원회는 서기석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제189기 정기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 되었습니다.

### 3-2) 감사위원 후보(2021.4.1 추천)

#### (가) 후보자 인적 사항

(1) 성명: 김명희

(2) 출생연도: 1968년

(3) 출신학교: 사레지오여자고등학교 - KAIST 전산학부 학사  
- 서강대 경영학 석사 - 단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4) 경력: 제36페이지 참조

####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윤승한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와의 특수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 제안자 추천 이유 : 한국IBM, SK텔레콤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같은 ICT 분야를 경험하였고, 정부 헤드헌팅 1호 여성 공무원으로 초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을 역임하는 등 민간과 정부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신사업 관련 높은 이해도를 지닌 점을 고려하여 김명희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 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김명희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sup>79</sup>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 윤승한 이사가 회계 전문가로서 본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한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 총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 시 준수하여 선임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1명 이상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사항 역시 윤승한 이사를 추천절차 및 주주총회에서의 선임 시 분리하여 진행함으로써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sup>79</sup> 지배구조법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sup>80</sup>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회계 및 재무 또는 관련업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1.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평가: 김명희 후보자는 한국 IBM, SK텔레콤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같은 ICT분야를 경험하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을 역임한 정보기술 전문가입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sup>80</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이사의 자격요건) 제8항

전문가 1명은 이미 선임되어 있어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또한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3) 본인 소명: 본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시 당행의 감사위원직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명희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1년 4월 1일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후 위원회는 김명희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제190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본인 추천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3명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 되었습니다.

3-3) 감사위원 후보(2021.12.28 추천)

(가) 후보자 인적 사항

- (1) 성명: 이인재
- (2) 출생연도: 1963년
- (3) 출신학교: 서울대 산업공학 학사·석사 -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MBA
- (4) 경력: 제33페이지 참조

(나) 후보 제안자

-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윤승한
-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와 특수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 제안자 추천 이유 : 우수 금융회사에서 부사장직을 역임하고, 디지털 및 신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며 금융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통해 감사위원회 운영에 큰 도움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인재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 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이인재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sup>81</sup>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 윤승한 이사가 회계 전문가로서 본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한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 총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 시 준수하여 선임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1명 이상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사항 역시 윤승한 이사를 추천절차 및 주주총회에서의 선임 시 분리하여 진행함으로써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sup>82</sup>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회계 및 재무 또는 관련업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1.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그 자격과

<sup>81</sup> 지배구조법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sup>82</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이사의 자격요건) 제8항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평가: 이인재 후보자는 삼성카드 디지털부사장을 역임한 정보기술 전문가로, 디지털 및 신사업 관련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명이 이미 선임되어 있어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3) 본인 소명: 본인은 삼성카드 디지털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시 당행의 감사위원직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이인재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1년 12월 28일 제9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후 위원회는 이인재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제190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습니다.

#### 4) 사외이사 후보

##### 4-1) 사외이사 후보(2021.3.24 추천)

(가) 후보자 인적 사항

(1) 성명: 박원식

(2) 출생연도: 1956년

(3) 출신학교: 대전고등학교 - 고려대 행정학과 학사 - 고려대 법학대학원 수료 - 동국대 무역학 박사

(4) 경력: 제30페이지 참조

(5) 사외이사 경력

박원식 후보자는 제186기 정기주주총회일(2018.3.21)부터 당행의 사외이사로 재임하였습니다. 박원식 후보자는 보수위원회 위원장(18.3월~20.3월)을 역임하고, 감사위원회 위원(18.3월~20.3월), 보수위원회 위원(18.3월~20.3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20.3월~현재)으로 활동 하였습니다.

2020년 중 이사회 총 16회, 감사위원회 총 11회, 보수위원회 총 5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4회 참석하며 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100%)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이성우

2016.5 ~ 2021.3월 신한은행 사외이사

2007.9 ~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후보자와의 관계

신한은행에서 2018년 3월부터 추천일 현재까지 약 3년간 사외이사로 같이 근무하였고, 그외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박원식 후보자는 한국은행 부총재를 역임하고, 현재는 동국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업 전반에 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통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에 탁월한 통찰력을 더하는 등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원활하게 이끌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재선임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인 전략기획부의 후보군 탐색 절차에 의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최초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황선태 이사와는 친족, 출신학교, 회사, 기타 친분관계 등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으며, 2020년 3월 재임을 추천한 황국재 이사와의 특별한 이해 관계는 없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법인과 거래관계 없음)

##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당행의 최대주주인 (주)신한금융지주회사와 특수관계 없음)

##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당행 및 계열회사 임원과 특수관계 없음)

##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1)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후보자는 당행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행은 정관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다양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금융회사 이사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행 이사로서 높은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을 보유하여 은행과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후보군 선정 후 철저한 모니터링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3) 적극적 자격 충족 여부

- 전문성

박원식 후보자는 한국은행 부총재와 보험연구원 초빙자문위원을 역임한 금융전문가로, 한국은행에서 자금부, 국제금융부, 은행국, 비서실, 인사부, 총무국 등을 거치며 풍부한 경험과 거시적 분석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당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래로 신한은행의 경영전략과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 직무공정성

박원식 후보자는 현재 동국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며, 신한은행과 전현직 소속기관 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신한은행의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윤리성, 책임성

박원식 후보자는 금융전문가로서 원칙에 입각한 판단과 공정하고 냉철한 업무처리로 높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평판조회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8년 3월 당행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개최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021년 3월 개최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연임되었습니다.

#### - 충실성

박원식 후보자는 2018년 3월 21일 이후 신한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은행산업의 경영환경과 신한은행의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석률,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 이해도 등 충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향후에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4) 본인 소명

본인은 한국은행 부총재를 역임하였으며, 본인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 시 당행의 사외이사직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박원식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2021년 3월 24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3차 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박원식 후보자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은 재적위원 5명 중 본인을 제외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21년 3월 개최된 제189기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3명이며, 이성우, 인호 이사가 사임의사를 표하였고, 박원식 이사는 연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박원식 후보자는 2021년도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 결과 사외이사 직무에 대한 기대 이상의 강점을 보이는 4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어 사외이사 재선임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사외이사명 | 재임기간 | 연임여부  |
|-------|------|-------|
| 박원식   | 3년   | 연임    |
| 이성우   | 5년   | 임기 만료 |
| 인호    | 5년   | 임기 만료 |

####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21년 3월 24일 개최한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에 앞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박원식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에서 수집한 자료 및 위원회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가 당행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항목별로 세밀하게 확인하고 질문 및 답변을 활발하게 교환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박원식 후보자는 지난 3년간의 재임기간 중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다양한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며, 당행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업 전반에 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통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에 탁월한 통찰력을 더하는 등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원활하게 이끌어주었습니다. 후보자는 당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평가 결과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 4-2) 사외이사 후보(2021.3.24 추천)

##### (가) 후보자 인적 사항

- (1) 성명: 김명희
- (2) 출생연도: 1968년
- (3) 출신학교: KAIST 전산학부 - 서강대 경영학 석사 - 단국대 경영학 박사
- (4) 경력: 제36페이지 참조
- (5) 사외이사 경력

신규 선임 사외이사 후보자로 당행 사외이사 경력은 없습니다.

##### (나) 후보 제안자

-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윤승한

2020.3 ~ 현재 신한은행 사외이사

2014.7 ~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행정부회장

2008.6 ~ 2010.3 금융감독원 도쿄사무소 소장

##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 (다) 후보자 추천 사유

###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한국IBM, SK텔레콤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같은 ICT 분야를 경험하였고, 정부 헤드헌팅 1호 여성 공무원으로 초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을 역임하는 등 민간과 정부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신사업 관련 높은 이해도를 지닌 점을 고려하여, 김명희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 (2) 후보자 추천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인 전략기획부의 후보군 탐색 절차에 의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법인과 거래관계 없음)

###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당행의 최대주주인 (주)신한금융지주회사와 특수관계 없음)

###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당행 및 계열회사 임원과 특수관계 없음)

####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1) 소극적 요건

###### - 관련 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 평가

후보자는 당행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행은 정관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다양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금융회사 이사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행 이사로서 높은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을 보유하여 은행과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후보군 선정 후 철저한 모니터링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3) 적극적 자격 충족 여부

###### - 전문성

김명희 후보자는 한국 IBM 및 SK텔레콤을 거쳐, 2017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을 2020년까지 역임하는 등 정보기술 전문가입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김명희 후보자는 현재 경기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인 신한은행과 학교법인 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후보자는 신한은행의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윤리성, 책임성

김명희 후보자는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으로 활동하며 온건한 성품과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경청하는 자세로 높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평판조회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충실성

김명희 후보자는 당행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본인은 현재 경기대학교 겸임 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본인의 경력이나 전무성 등을 감안시 신한은행의 사외이사직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명희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2021년 3월 24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김명희 후보자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은 재적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신규선임 사외이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21년 3월 24일 개최한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에 앞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김명희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에서 수집한 자료 및 위원회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가 당행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항목별로 세밀하게 확인하고 질문 및 답변을 활발하게 교환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민간과 정부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신사업 관련 높은 이해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당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 4-3) 사외이사 후보(2021.4.1 추천)

(가) 후보자 인적 사항

(1) 성명: 임상현

(2) 출생연도: 1960년

(3) 출신학교: 서대전고등학교 - 충남대 경영학과

(4) 경력: 제32페이지 참조

(5) 사외이사 경력

신규 선임 사외이사 후보자로 당행 사외이사 경력은 없습니다.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박원식

2018.3 ~ 현재 신한은행 사외이사

2014.6 ~ 2016.5 보험연구원 초빙자문위원

2012.4 ~ 2014.5 한국은행 부총재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약 40년간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영지원 및 경영기획 그룹장, 수석 부행장 등을 역임하고, IBK 저축은행 대표이사 경험도 있는 등, 금융 및 경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닌 점을 고려하여, 임상현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인 전략기획부의 후보군 탐색 절차에 의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법인과 거래관계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당행의 최대주주인 (주)신한금융지주회사와 특수관계 없음)

###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당행 및 계열회사 임원과 특수관계 없음)

###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1) 소극적 요건

##### - 관련 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 평가

후보자는 당행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행은 정관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다양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금융회사 이사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행 이사로서 높은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을 보유하여 은행과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후보군 선정 후 철저한 모니터링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3) 적극적 자격 충족 여부

##### - 전문성

임상현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IBK기업은행 전무이사를 역임하는 등,

약 40년간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 금융 전문가입니다. 금융 및 경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직무공정성

임상현 후보자가 재직한 IBK기업은행(2020.1 임기 만료)과 당행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리성, 책임성

임상현 후보자는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서 IBK기업은행 전무이사로 활동하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경청하는 자세로 높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평판조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충실성

임상현 후보자는 당행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본인은 IBK기업은행에서 약 40년간 재직한 금융전문가로서 은행 경영전략, 경영지원 관련 임원 및 대표이사 경험 등으로 금융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한은행의 사외이사직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상현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2021년 4월 1일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5차 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임상현 후보자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은 재적위원 4명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 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신규선임 사외이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21년 4월 1일 개최한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에 앞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임상현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에서 수집한 자료 및 위원회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가 당행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항목별로 세밀하게 확인하고 질문 및 답변을 활발하게 교환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상현 후보자는 금융기관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 및 경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니고 있고, 당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 4-4) 사외이사 후보(2021.12.28 추천)

(가) 후보자 인적 사항

(1) 성명: 이인재

(2) 출생연도: 1963년

(3) 출신학교: 서울대 산업공학 학사 - 서울대 산업공학 석사 - 컬럼비아대 대학원 MBA

(4) 경력: 제33페이지 참조

(5) 사외이사 경력

신규 선임 사외이사 후보자로 당행 사외이사 경력은 없습니다.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임상현

2017.1 ~ 2020.1      IBK기업은행 전무이사

2016.7 ~ 2016.12    IBK저축은행 대표이사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삼성 SDS, 삼성전자, Lucent Technologies(루센트 테크놀로지)를 거쳐 삼성카드 정보전략담당 상무, 경영혁신실장 전무, 디지털본부 부사장 직을 역임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IT전문가로, 디지털 및 신사업 관련 높은 이해도를 지닌 이인재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인 전략기획부의 후보군 탐색 절차에 의하여 2021년도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법인과 거래관계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당행의 최대주주인 (주)신한금융지주회사와 특수관계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당행 및 계열회사 임원과 특수관계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후보자는 당행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행은 정관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다양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금융회사 이사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행 이사로서 높은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을 보유하여 은행과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후보군 선정 후 철저한 모니터링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3) 적극적 자격 충족 여부

#### - 전문성

이인재 후보자는 금융사 CIO이자 CDO를 역임한 국내 대표 IT 전문가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 받아 삼성 금융계열사 최초의 여성 부사장이자 여성 사내이사로 금융사업 전반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금융 및 IT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조직을 신설하고 디지털 신사업을 주도하면서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 - 직무공정성

이인재 후보자가 재직한 삼성카드(2020.12 임기 만료)와 당행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윤리성, 책임성

이인재 후보자는 IT 전문가로서 삼성카드 임원으로 활동하며 솔선수범하는 리더로 위기 시 정면으로 돌파하여 조직을 안정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조직에서 성장하여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의 역할 배분을 추구하기에 주어진 시간 안에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내부평판조회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충실성

이인재 후보자는 IT전문가이지만 금융사의 경영진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맺어진 주요 인맥이 훌륭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과 IT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보 획득 및 공유에 적극적이어서 당행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4) 본인 소명

본인은 삼성카드, 삼성전자, Lucent Technologies 등 기업에서 정보기술 전문가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한은행의 사외이사직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이인재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신규 선임 추천을 위해 2021년 12월 28일 제9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이인재 후보자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은 재적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신규선임 사외이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21년 12월 28일 개최한 제9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에 앞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인재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에서 수집한 자료 및 위원회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가 당행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항목별로 세밀하게 확인하고 질문 및 답변을 활발하게 교환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인재 후보자는 정보기술 전문가이자 금융기관을 포함한 대기업 등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 및 경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니고 있고, 당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 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행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일관되고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하고자, 2021년 2월 4일 개최한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당행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기준'을 결의하였습니다.

당행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선정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전문가를 후보군에 포함, 추천경로의 다양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둘째, 전문성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및 소극적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범위내에서 취득 가능한 정보를 통해 후보군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정성입니다. 이사회에 전문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재선임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도 당행은 본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의 후보군 관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인 전략기획부는 당행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기준'에 따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전문성 및 안정성을 감안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등과 2016년 8월 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로이 포함된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이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군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후보군의 적극적 자격요건 및 소극적 자격요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연 2회 위원회에 관리내역을 상정하여 결의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중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3월 4일 개최한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다양성, 전문성, 안정성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기준에 따라 상반기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개최한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한 상반기 후보군을 바탕으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의 후보를 추가하여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정하였습니다.

### (3) 후보군 현황

1차 결의일자: 2021년 3월 4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전문분야   | 인원수      | 비중           |
|--------|----------|--------------|
| 금 융    | 49 (3)   | 22.4 (1.4)   |
| 경 제    | 23 (1)   | 10.5 (0.5)   |
| 경 영    | 24 (3)   | 11.0 (1.4)   |
| 회 계    | 22 (6)   | 10.0 (2.7)   |
| 법 률    | 39(20)   | 17.8 (9.1)   |
| 소비자 보호 | 28(19)   | 12.8 (8.7)   |
| 정보 기술  | 21 (3)   | 9.6 (1.4)    |
| 글로벌금융  | 13 (1)   | 5.9 (0.5)    |
| 합 계    | 219 (56) | 100.0 (25.6) |

\* 괄호안은 여성전문가 인원수 및 비중

2차 결의일자: 2021년 11월 24일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전문분야  | 인원수      | 비중           |
|-------|----------|--------------|
| 금 융   | 50 (4)   | 20.5 (1.6)   |
| 경 제   | 25 (2)   | 10.2 (0.8)   |
| 경 영   | 26 (4)   | 10.7 (1.6)   |
| 회 계   | 24 (6)   | 9.8 (2.5)    |
| 법 률   | 40 (19)  | 16.4 (7.8)   |
| 소비자보호 | 30 (20)  | 12.3 (8.2)   |
| 정보기술  | 24 (4)   | 9.8 (1.6)    |
| 글로벌금융 | 15 (1)   | 6.1 (0.4)    |
| ESG   | 10 (3)   | 4.1 (1.2)    |
| 합 계   | 244 (63) | 100.0 (25.8) |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2021년 3월 4일 제2차 임시이사회

| 전문분야   | 인원수      | 비중           |
|--------|----------|--------------|
| 금 융    | 49 (3)   | 22.4 (1.4)   |
| 경 제    | 23 (1)   | 10.5 (0.5)   |
| 경 영    | 24 (3)   | 11.0 (1.4)   |
| 회 계    | 22 (6)   | 10.0 (2.7)   |
| 법 률    | 39(20)   | 17.8 (9.1)   |
| 소비자 보호 | 28(19)   | 12.8 (8.7)   |
| 정보 기술  | 21 (3)   | 9.6 (1.4)    |
| 글로벌금융  | 13 (1)   | 5.9 (0.5)    |
| 합 계    | 219 (56) | 100.0 (25.6) |

보고일자: 2021년 11월 24일 제4차 정기이사회

| 전문분야  | 인원수      | 비중           |
|-------|----------|--------------|
| 금 융   | 50 (4)   | 20.5 (1.6)   |
| 경 제   | 25 (2)   | 10.2 (0.8)   |
| 경 영   | 26 (4)   | 10.7 (1.6)   |
| 회 계   | 24 (6)   | 9.8 (2.5)    |
| 법 률   | 40 (19)  | 16.4 (7.8)   |
| 소비자보호 | 30 (20)  | 12.3 (8.2)   |
| 정보기술  | 24 (4)   | 9.8 (1.6)    |
| 글로벌금융 | 15 (1)   | 6.1 (0.4)    |
| ESG   | 10 (3)   | 4.1 (1.2)    |
| 합 계   | 244 (63) | 100.0 (25.8) |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1) 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현황

- 부서명: 전략기획부
- 인원구성: 전략기획부장, 팀원 4명
- 담당업무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위원회 회의 내용 기록 유지
  - 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 지원
  - 사외이사 및 위원회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사외이사에 대한 은행 관련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 이사의 각종 법규준수를 위한 지원
  - 기타 위원회의 지시사항 처리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업무 보고 및 지원내용

| 일 시                   | 보고 및 지원내용                              |
|-----------------------|----------------------------------------|
| 2021.1.1~3.4          | · 사외이사 인선기준에 따른 사외이사 후보군 탐색            |
| 2021.1.11~1.21        | · 2020년도 사외이사 평가 진행(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포함)    |
| 2021.2.4              | ·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20년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
| 2021.3.4              | · 2021년 상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보고,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보고 |
| 2021.3.4~2021.4.1     | · 예비후보군의 자격 검증, 후보자 수락여부 확인, 서류 징구     |
| 2021.3.24             | · 사외이사 후보자 검증결과(자격요건 검토) 보고            |
| 2021.4.1              | · 사외이사 후보자 검증결과(자격요건 검토) 보고            |
| 2021.4.1~11.24        | · 사외이사 후보군 상시 모니터링 및 추가 후보군 탐색         |
| 2021.11.24            | · 2021년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보고                |
| 2021.11.24~2021.12.23 | · 예비후보군의 자격 검증, 후보자 수락여부 확인, 서류 징구     |
| 2021.12.28            | · 사외이사 후보자 검증결과(자격요건 검토) 보고            |

####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 (가) 이사회

2021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2021년 2월 4일(목) 10시 00분 ~ 11시 3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이성우 | 인호 | 이흔야 | 허창언 | 노용훈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 가. 2020년 경영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나. 2020년 연간<br>감사활동 결과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다. 2020년 4분기<br>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라. 2020년 4분기<br>위험관리위원회 정책수행<br>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마. 2020년 하반기<br>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바. 2020년 하반기<br>임원후보추천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사. 2020년 4분기<br>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아. 본부장 등 선임 및<br>임기만료 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자. 2019년도<br>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br>결과 (2020년 수검)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항 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 차. 2020년<br>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br>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카. 2020년<br>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br>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         | 가. 제189기 결산안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제189기 배당금 결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2020년 12월말 기준<br>대손준비금 적립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br>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설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장외파생상품의 은행<br>비예금상품 내부통제<br>모범규준 적용 제외에 관한<br>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계열사간 거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2021년 3월 4일(목) 09시 50분 ~ 11시 30분

| 항 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이성우 | 인호 | 이훈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                  | 가. 2020년<br>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br>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나. 2020년도 외부감사인<br>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br>결과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다. 2020년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항 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br>적정성 평가결과                 |  |          |    |    |    |    |    |    |    |    |      |
| 라. 2021년도<br>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br>평가계획 보고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마. 2020년 준법감시<br>프로그램 구축 상황 및<br>운영 결과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바. 2020년<br>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br>점검결과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사. 2020년 4분기 재산상<br>의 이익제공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아. 뉴욕지점 사이버보안<br>프로그램 준수에 관한 사항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자. 감사위원회 결의사항<br>보고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차. 보수위원회 결의사항<br>보고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카.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 가. 「재산상 이익제공 및<br>부정청탁 금지 등에 관한<br>지침」 개정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재산상 이익제공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2030 중장기 경영전략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2021년 3월 15일(월) 8시 30분 ~ 9시 3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이성우 | 인호 | 이훈야 | 허창언 | 노용훈 |  |      |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 가결여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 가. 재산상 이익 제공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2021년 3월 24일(수) 9시 20분 ~ 11시 0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이성우 | 인호 | 이훈야 | 허창언 | 노용훈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 가. 대주주의<br>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br>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br>관한 사항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나. 2020년<br>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br>실태 점검결과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다. 뉴욕지점 2021년<br>「BSA/AML/OFAC<br>Compliance Program」<br>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라. 2019년 금융감독원<br>종합검사 제재내용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마. 위험관리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바. 보수위원회 결의사항<br>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가. 신한캐피탈(주)가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정관 및 중요규정의 개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2021년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제189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바. 채권 발행한도 설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사. 채권발행 일괄신고서 제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아. 계열사간 거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자.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출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2021년 3월 24일(수) 13시 30분 ~ 14시 0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가. 감사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나. 사외이사 등이<br>속한 비영리법인 등에<br>대한 은행의 기부금 제공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가. 이사회 의장 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이사회 의장<br>직무대행 기준 결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가결여부 |
|-----------------------------|----------|----|----|----|----|----|----|----|------|
| 다.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br>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사외이사 및 이사회등<br>평가에 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사외이사 및<br>비상임이사 보수 결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바. 은행장 직무대행 기준<br>결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2021년 4월 1일(목) 8시 40분 ~ 9시 0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나. 원화 상각형<br>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br>발행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제190기 제1차<br>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br>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2021년 4월 1일(목) 9시 20분 ~ 9시 3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가결여부 |
|---------------------------------|-------------------------------|------|
| 가. 감사위원회 결의사항<br>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나. 협업 신사업<br>추진을 위한 지분 매입<br>보고 |                               |      |
| 4. 결의안건                         |                               |      |
| 가.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br>선임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2021년 4월 21일(수) 14시 00분 ~ 15시 3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진옥동 서기석 윤승한 김명희 임상현 이혼야 허창언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보고안건 없음                                                     |                                     |        |
| 4. 결의안건                                                     |                                     |        |
| 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br>라임CI펀드 관련 조정결정<br>수락여부 결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
| 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br>라임CI펀드 관련 조정결정<br>건 외 고객에 대한 배상<br>기준 결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수정)가결 |
| 다. 아름드리 신탁 7호,<br>9호 배상 기준 결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수정)가결 |

2021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 2021년 5월 4일(화) 8시 30분 ~ 10시 0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진옥동 서기석 윤승한 김명희 임상현 이혼야 허창언 노용훈 |      |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계열사간 거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The NEXT 프로젝트<br>사업 시스템 통합 개발<br>계약체결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br>운영 규정」 제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br>판매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2021년 5월 20일(목) 15시 00분 ~ 17시 0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훈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가. 2021년 1분기<br>경영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나. 2021년 1분기<br>대손준비금 적립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다. 2021년<br>내부회계관리제도<br>평가대상 범위 선정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라. 2020년<br>자금세탁방지체계의<br>이행수준과 효과에 대한<br>평가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마. 2020년 전사적<br>자금세탁 위험결과(RBA)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항 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가결여부 |
|----------------------------------------|----------------------------------------------|----------|----|----|----|----|----|----|----|------|
| 결과 보고                                  | 바. 2021년 1분기<br>고객정보 제공 및<br>이용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사. 2021년 1분기<br>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아. 2020년 연간 재산상<br>이익제공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자. 2021년 1분기<br>비예금상품위원회<br>운영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차. 위험관리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카.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타. Modern Slavery<br>Statement 제정<br>(시드니지점)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가. 대주주의<br>특수관계인 등에 대한<br>신용공여한도 설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계열사간 거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 2021년 7월 23일(금) 15시 00분 ~ 17시 0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 가. 조직개편 주요 내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나. 본부장 등 재선임 및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 항 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가결여부 |
|------------------------------------|------|----------|----|----|----|-----|----|----|----|------|
|                                    | 임기현황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br>운영 규정」 개정 승인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싱가포르지점 「특수관계<br>인 거래」 관리자 선임 승인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재산상 이익제공 승인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8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2021년 8월 25일(수) 14시 30분 ~ 16시 3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가. 2021년 상반기 경영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나. 2021년 2분기 대손준비금 적립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다. 2021년 2분기 재산상 이익 제공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라. 2021년 2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마. 2021년 2분기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바.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사. 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sup>83</sup> 본인과 관련된 안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 항 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아. 은행장 경영승계계획<br>관련 보고              |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 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br>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br>설정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계열사간 거래 승인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금융소비자보호<br>내부통제규정」 제정 승인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지배구조 내부규범」<br>일부 개정 승인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금융소비자보호규정」<br>전부 개정 승인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재산상 이익제공<br>승인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2021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 2021년 9월 13일(월) 13시 30분 ~ 14시 0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재산상 이익제공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11차 임시이사회: 2021년 10월 8일(금) 10시 30분 ~ 11시 4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혼야 | 허창언 | 노용훈 |      |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설정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발행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신한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12차 임시이사회: 2021년 11월 5일(금) 16시 00분 ~ 18시 0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훈야 | 허창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사모펀드 4종 (교보 글로벌M, 유경 15호, 피델리스 13개, 디스커버리 13개) 배상기준(안)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수정)가결 |

2021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2021년 11월 24일(수) 16시 00분 ~ 18시 0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진옥동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훈야 | 허창언 | 노용훈 |      |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    | 가결여부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가. 조직개편 주요 내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나. 2022년 경영계획 수립방향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다. 2021년도 3분기 경영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라. 2021년도 3분기 대순준비금 적립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마. 2021년도 3분기 재산상 이익제공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바. 2021년도 3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사. 2021년도 3분기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아.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평가 결과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자.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    |      |
| 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설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재산상 이익제공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계열사간 거래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고객상담센터 상담업무 도급계약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2월 4일(목) 09시 40분 ~ 10시 0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인호       | 박원식 | 이성우 | 윤승한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가. 2020년도 사외이사<br>평가결과 | 특이 의견 없음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3월 4일(목) 09시 30분 ~ 09시 5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인호       | 박원식 | 이성우 | 윤승한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br>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사외이사 예비후보군<br>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3월 24일(수) 09시 00분 ~ 09시 2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인호       | 박원식 | 이성우 | 윤승한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3. 보고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br>요건 검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찬성       | 의결권<br>제한 <sup>84</sup>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br>추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3월 24일(수) 14시 15분 ~ 14시 25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윤승한 | 김명희 | 노용훈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                |          |     |     |     |  |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br>위원장 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가결   |

2021년도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4월 1일(목) 08시 30분 ~ 08시 4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박원식      | 윤승한 | 김명희 | 노용훈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br>요건 검토 | 특이의견 없음  |     |     |     |  |      |

<sup>84</sup> 본인과 관련된 안건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었습니다.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가결여부 |
|----------------------|----------|----|-------------------------|----|------|
| 4. 결의안건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br>추천 | 찬성       | 찬성 | 의결권<br>제한 <sup>85</sup>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4월 1일(목) 09시 30분 ~ 09시 4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김명희                  | 박원식 | 윤승한 | 임상현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의결권 제한 <sup>86</sup>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수) 15시 40분 ~ 16시 0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김명희      | 박원식 | 윤승한 | 임상현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sup>85</sup> 본인과 관련된 안건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었습니다.

<sup>86</sup> 본인과 관련된 안건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8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12월 23일(목) 17시 40분 ~ 18시0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김명희      | 박원식 | 윤승한 | 임상현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보고안건 없음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br>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9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12월 28일(목) 15시 00분 ~ 15시 2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김명희      | 박원식 | 윤승한 | 임상현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br>요건 검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br>추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상임감사위원 후보 추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다) 감사위원회

2021년도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2월 4일(목) 9시 00분 ~ 9시 40분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서기석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가. 2020년 4분기 감사활동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나. 2020년 4분기 감독기관 등 수검 현황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다. 2020년 연간 감사활동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라. 2020년 4분기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마. 2020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현황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결의사항                       |          |     |     |      |
| 가. 2021년도 외부감사보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2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2월 24일(수) 9시 30분 ~ 11시 30분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서기석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가.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나.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평가계획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다.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라. 외부감사인의 2020년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심의안건                              |          |     |     |      |
| 가.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 특이사항 없음  |     |     | -    |
| 5. 결의안건                              |          |     |     |      |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 가. 제189기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0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 2021년 3월 24일(수) 8시 00분 ~ 8시 30분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승한      | 서기석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가. 2019년 종합검사 제재조치 결과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심의안건          |                         |          |     |     |      |
|                  | 가. 2020년 내부통제체계 평가      | 특이사항 없음  |     |     | -    |

2021년도 제4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3월 24일(수) 11시 00분 ~ 11시 10분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승한      | 서기석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결의안건          |                                  |          |     |     |      |
|                  | 가. 제189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조사결과*1)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5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3월 24일(수) 14시 00분 ~ 14시 15분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승한      | 서기석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결의안건          |  |          |     |     |      |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1년도 상임감사위원 평가목표 설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6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4월 1일(목) 9시 00분 ~ 9시 10분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승한      | 서기석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결의안건          |                                      |          |     |     |      |
|                  | 가. 제190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조사결과*1)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7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5월 4일(화) 10시 00분 ~ 10시 30분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승한      | 김명희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가. 2021년 1분기 감사활동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나. 2021년 1분기 감독기관 등 수검 현황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심의안건          |                                |          |     |     |      |
|                  | 가. 2020년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평가 | 특이사항 없음  |     |     | -    |
|                  | 나. 2020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특이사항 없음  |     |     | -    |

2021년도 제8차 정기 감사위원회: 2021년 5월 20일(목) 14시 20분 ~ 15시 00분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김명희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가.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대상범위 선정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나. 외부감사인의 2021년 감사계획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다. 외부감사인의 2021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심의안건                            |          |     |     |      |
| 가. 2020년 자금세탁방지체계의 이행수준과 효과에 대한 평가 | 특이사항 없음  |     |     | -    |

2021년도 제9차 정기 감사위원회: 2021년 8월 25일(수) 13시 30분 ~ 14시 30분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김명희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가. 2021년 2분기 감사활동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나. 2021년 2분기 감독기관 등 수검 현황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다. 2021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현황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라. 2019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마. 외부감사인의 2021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심의안건                         |          |     |     |      |
| 가. 2021년 상반기 준법감시인 활동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제정            | 특이사항 없음  |     |     | -    |

2021년도 제10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10월 8일(금) 10시 00분 ~ 10시 30분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김명희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가. 자체정상화계획 적정성 내부감사 결과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2021년도 제11차 정기 감사위원회: 2021년 11월 24일(수) 15시 10분 ~ 15시 40분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김명희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가.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중간평가 결과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나. 2021년 3분기 감사활동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다. 2021년 3분기 감독기관 등 수검 현황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라. 외부감사인인 2021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2021년도 제12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12월 28일(화) 14시 30분 ~ 15시 00분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김명희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4. 보고안건                              |          |     |     |      |
| 가.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에 대한 부문감사 결과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3. 결의안건                              |          |     |     |      |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 가. 2021년 상임감사위원 성과 평가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2년 감사부 사업계획 및 감사계획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13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12월 28일(화) 17시 30분 ~ 17시 40분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승한      | 김명희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결의안건          |                                   |          |     |     |      |
|                  | 가. 제190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조사결과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임시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3월 5일(금) 10시 30분 ~ 11시 20분

| 항 목              |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이성우      | 인 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가. 비예금상품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 | 특이의견 없음  |     |     | -    |

2021년 정기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3월 24일(수) 08시 00분 ~ 08시 30분

| 항 목              |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이성우      | 인 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가. 2020년 금융감독원 부문검사<br>(리스크실태평가)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정기보고사항                              | 특이의견 없음 |    |    | -  |
| 4. 심의·결의안건                             |         |    |    |    |
| 가.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나. 원화채권 발행한도 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다.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라. 2021년 사업그룹별 위험자본 배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2021년 국가 신용익스포저 최대한도<br>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 임시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4월 22일(목)<sup>87</sup>

| 항 목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가.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2020<br>년 12월말 기준) | 특이의견 없음  |     |     | -    |

2021년 정기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5월 4일(화) 10시 00분 ~ 10시 40분

| 항 목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가. 2020년 그룹 신용리스크 부문감사 결과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sup>87</sup> 2021년 임시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항 목                                            |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 나. 정기보고사항 | 특이의견 없음  |    |    | -    |
| 4. 심의·결의안건                                     |           |          |    |    |      |
| 가. 리스크정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나. 통합위기상황분석('20.12월 기준) 결과(안)                  |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위기상황시 자본관리계획(안)                             |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위기상황시 자금조달계획(안)                             |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리스크관리그룹의 투자상품 관련 한도설정<br>기준 마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임시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5월 31일(월) 15시 00분 ~ 15시 40분

| 항 목                                        |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가. Libor 산출중단 대응계획 이행현황 보고                 |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신용리스크 위기상황 상세분석 결과 보고<br>(‘20년 12월말 기준) |  | 특이의견 없음  |     |     | -    |
| 4. 심의·결의안건                                 |  |          |     |     |      |
| 가. 소매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변경 적용(안)                  |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비소매 SOHO 신용평가모형 등급계량화<br>변경(안)          |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비소매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변경 적용(안)                 |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모형검증조직 독립성 강화(안)                        |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 임시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7월 23일(금) 14시 20분 ~ 15시 00분

| 항 목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가. 국외점포 출자금(갑기금 포함) FX포지션 관리현황<br>점검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4. 심의·결의안건                              |          |     |     |      |
| 가. 리스크정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나.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리스크관리그룹 업무분장 변경(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2021년 유형별 리스크한도 변경(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 정기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8월 25일(수) 13시 30분 ~ 14시 10분

| 항 목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가. 금융감독원 주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2020년 12월말 기준)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2021년 6월말 기준)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결과 및 이행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2021년 부도관리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마. 정기보고사항                                 | 특이의견 없음  |     |     | -    |

2021년 임시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10월 8일(금) 09시 30분 ~ 10시 30분

| 항 목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가. Libor 산출중단 대응 외화 대체지표금리 선정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중도상환(안)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2021년 리스크한도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2021년 기업신용평가 결과분석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마. 2021년 신용RWA 산출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바. 2021년 운영리스크 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4. 심의·결의안건                            |          |     |     |      |
| 가. 신한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나.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다. 2022년 최소유지 자기자본비율 및 최대성장 가능률 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통합위기상황분석('21.6월 기준) 결과(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위기상황시 자본관리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바. 위기상황시 자금조달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사. 소매 신용대출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운영(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아. 소매SOHO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운영(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자. 「쓸편한 생각대로 라이더 대출」 LGD 적용(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항 목 |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 차. 리스크관리그룹 업무분장 변경(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 정기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11월 24일(수) 15시 10분 ~ 15시 40분

| 항 목                                   |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가. 가계대출 현황 및 관리 방안                    |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 및 관리 방안                |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2021년 비일반기업 신용평가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 특이의견 없음  |     |     | -    |
| 마. 2021년 통합위기상황분석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정기보고사항                             |  | 특이의견 없음  |     |     | -    |

2021년 임시 제6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12월 28일(화) 13시 30분 ~ 14시 00분

| 항 목                                      |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가. 2021년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2021년 11월 유동성리스크 한도 미준수 보고            |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2021년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2021년 ALM시스템(금리·유동성리스크)               |  | 특이의견 없음  |     |     | -    |

| 항 목        |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    |    |      |
|            | 마. 2021년 시장리스크 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 바. 2021년 외환결제관련리스크 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4. 심의·결의안건 |                                       |          |    |    |      |
|            | 가. 2022년 자본관리 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 나. 채권 발행한도 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 다. 2022년 은행 리스크 총한도 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 라. 2022년 유형별 리스크한도 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마. 2022년 신용원가 및 대손분담금 반영비율 변경(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바. 2022년 장외파생금융상품 리스크한도 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사. AIRS+ (기업전략모형) 개발 및 운영(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아. 2022년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적용(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마) 보수위원회

2021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2021년 3월 4일(목) 09시 00분 ~ 09시 30분

| 항 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 서기석      | 이혼야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보고안건 없음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2021년도 경영진 평가기준 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나. 2020년도 겸직경영진 은행 평가결과 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다. 2020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    |    |    |
|------------------------------|----|----|----|----|
| 공시                           |    |    |    |    |
| 라. 2020년도 보수체계 설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2021년 3월 24일(수) 08시 30분 ~ 09시 0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서기석      | 이훈야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가. 2021년도 경영진 전략과제 및 사업그룹 KPI 평가기준  | 특이 의견 없음 |     |     |      |
| 4. 결의안건                             |          |     |     |      |
| 가. 2021년도 경영진 보수 운영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1년도 본부장 보수 운영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2021년도 은행 전략과제 세부기준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2021년도 본부장 업적평가 기준 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2020년도 경영진 및 본부장 평가결과 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바. 2020년도 경영진 및 본부장 단기성과급 지급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사. 장기성과급 성과지표 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아. 정관 및 중요규정의 개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지정 및 운영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차. 상무 호칭을 사용하는 전문계약인력 평가 및 보수 기준 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3차 보수위원회: 2021년 8월 25일(수) 14시 10분 ~ 14시 30분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서기석      | 이훈야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
|------------------------------------------|---------|----------------|
| 가. 2021년도 경영진 전략과제 및 사업그룹<br>KPI 평가기준 변경 | 특이의견 없음 |                |
| 4. 결의안건                                  |         |                |
| 가.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장 평가기준 신설 및<br>변경          |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 (가) 사외이사 박원식

사외이사 박원식은 2021년 중 개최된 이사회 17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9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박원식은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중 총 222.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나) 사외이사 서기석

사외이사 서기석은 2021년 중 개최된 이사회 17회, 감사위원회 6회(총 13회 중 감사위원 재임 시 6회), 위험관리위원회 8회(총 10회 중 위험관리위원 재임 시 8회), 보수위원회 3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서기석은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중 총 243.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다) 사외이사 윤승한

사외이사 윤승한은 2021년 중 개최된 이사회 17회, 감사위원회 1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9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윤승한은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중 총 279.9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임상현

사외이사 임상현은 2021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회(총 17회 중 사외이사 재임 시 11회), 위험관리위원회 8회(총 10회 중 위험관리위원 재임 시 8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회(총 9회 중 임추위원 재임 시 4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임상현은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중 총 191.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 사외이사 이인재

사외이사 이인재는 제190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2021.12.28)에서 신규 선임되어 선임일 이후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바) 사외이사 이혼야

사외이사 이혼야는 2021년 중 개최된 이사회 17회, 보수위원회 3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이혼야는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중 총 201.8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 사외이사 김명희

사외이사 김명희는 2021년 중 개최된 이사회 13회(총 17회 중 사외이사 재임 시 13회), 감사위원회 7회(총 13회 중 감사위원 재임 시 7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6회(총 9회 중 임추위원 재임 시 6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명희는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중 총 212.8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 사외이사 이성우

사외이사 이성우는 2021년 중 개최된 이사회 4회(총 17회 중 사외이사 재임 시 4회), 위험관리위원회 2회(총 10회 중 위험관리위원 재임 시 2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총 9회 중 임추위원 재임 시 3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이성우는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중 총 49.6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사외이사 인호

사외이사 인호는 2021년 중 개최된 이사회 4회(총 17회 중 사외이사 재임 시 4회), 위험관리위원회 2회(총 10회 중 위험관리위원 재임 시 2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총 9회 중 임추위원 재임 시 3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인호는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중 총 48.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차) 요약

| 구분<br><br>사외<br>이사명 | 이사회 |    | 이사회내위원회   |    |             |    |           |    |               |    | 활동<br>시간 <sup>88</sup> |
|---------------------|-----|----|-----------|----|-------------|----|-----------|----|---------------|----|------------------------|
|                     |     |    | 감사<br>위원회 |    | 위험관리<br>위원회 |    | 보수<br>위원회 |    | 임원후보<br>추천위원회 |    |                        |
|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실적                     |
| 박원식                 | 17  | 17 | -         | -  | -           | -  | -         | -  | 9             | 9  | 222.5                  |
| 서기석                 | 17  | 17 | 6         | 6  | 8           | 8  | 3         | 3  | -             | -  | 243.5                  |
| 윤승한                 | 17  | 17 | 13        | 13 | -           | -  | -         | -  | 9             | 9  | 279.9                  |
| 김명희                 | 13  | 13 | 7         | 7  | -           | -  | -         | -  | 6             | 6  | 212.8                  |
| 임상현                 | 11  | 11 | -         | -  | 8           | 8  | -         | -  | 4             | 4  | 191.1                  |
| 이흔야                 | 17  | 17 | -         | -  | -           | -  | 3         | 3  | -             | -  | 201.8                  |
| 이성우<br>(임기만료)       | 4   | 4  | -         | -  | 2           | 2  | -         | -  | 3             | 3  | 49.6                   |

<sup>88</sup> 활동시간에는 사외이사 간담회 실적 및 사외이사만의 회의, 신임 사외이사 연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구분<br>사외<br>이사명           | 이사회 |    | 이사회내위원회   |    |             |    |           |    |               |    | 활동<br>시간 <sup>88</sup> |
|---------------------------|-----|----|-----------|----|-------------|----|-----------|----|---------------|----|------------------------|
|                           |     |    | 감사<br>위원회 |    | 위험관리<br>위원회 |    | 보수<br>위원회 |    | 임원후보<br>추천위원회 |    |                        |
|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실적                     |
| 2021.3.24)                |     |    |           |    |             |    |           |    |               |    |                        |
| 인호<br>(임기만료<br>2021.3.24) | 4   | 4  | -         | -  | 2           | 2  | -         | -  | 3             | 3  | 48.1                   |

##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당행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 (가) 임원의 배상책임(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임원의 부당행위(Wrongful Act)<sup>89</sup>로 주주나 제3자(종업원, 소비자, 경쟁업체 등)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 (나)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Company Reimbursement)

상기 배상청구에 대하여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sup>89</sup> 임원으로서의 의무위반, 태만, 과실, 누락, 허위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을 행하였거나 또는 행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임원으로서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담보범위는 약관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나) 대주주 및 지배주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라) 부정직행위로서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마)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바) 불법으로 사적인 이익 또는 혜택을 획득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자) 전문직업 수행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3) 보험기간: 2021년 4월 ~ 2022년 3월

(4) 보상한도: 신한금융그룹 총 보상한도 500억 (청구당/자회사별)

(5) 담보지역: 북미지역 포함 전세계

다만, 당행은 舊모범기준에서 규율하는 사외이사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사외이사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 이상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임원책임배상보험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삽입하여 임원책임배상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특약 신설: 피보험회사의 사외이사일 경우 자기부담액을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로 한다.

##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2021년도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이사 성명               | 박원식                                                                                                                                                                         | 서기석     | 윤승한     | 김명희     | 임상현     | 이훈야              |
|-----------------------|-----------------------------------------------------------------------------------------------------------------------------------------------------------------------------|---------|---------|---------|---------|------------------|
|                       | 18.3.21                                                                                                                                                                     | 20.3.25 | 20.3.25 | 21.3.24 | 21.4.1  | 20.3.25          |
| <b>1. 교육·연수 실시 내역</b> |                                                                                                                                                                             |         |         |         |         |                  |
|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 실시기간: 2021.2.18(목) (총 90분)<br>주요내용: 금감원 감사결과 및 은행 신사업 영향도 관련 논의                                                                                                           |         |         |         |         |                  |
|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대상 외    | 대상 외    | 불참 <sup>90</sup> |
|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 실시기간: 2021.4.1(목) (총 180분)<br>주요내용: 신임 사외이사 대상 은행 현황 및 2021년 경영계획, 이사회 제반 운영사항 등 설명                                                                                       |         |         |         |         |                  |
|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 대상 외                                                                                                                                                                        | 대상 외    | 대상 외    | 참석(4.1) | 참석(4.1) | 대상 외             |
| 다.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 실시기간: 2021.4.9(금) (총 120분)<br>주요내용: 사모펀드 관련 이슈 논의                                                                                                                         |         |         |         |         |                  |
|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sup>91</sup> |
| 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 실시기간: 2021.6.9(수) (총 360분)<br>주요 내용: ①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외부 교육(쉐퍼드멀린리더&햄튼 법률사무소)<br>② 2021년 상반기 경영현황 및 하반기 경영 방향 등 토의                                                           |         |         |         |         |                  |
|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sup>92</sup> |
| 마.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 실시기간: 2021.11.8(월) ~ 11.10(수) (총 480분)<br>주요 내용: 1일차 - ① ESG 관련 강연(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우 소장)<br>② 주요 현안 논의<br>- 2022년 경영계획 방향성<br>- 디지털 전략사업 추진현황(O2O사업 등)<br>2,3일차 - ESG 우수사례 탐방 |         |         |         |         |                  |
|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sup>93</sup> |

<sup>90</sup>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 거주 이훈야 이사는 자료 송부로 대체 또는 불참

<sup>91</sup>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 거주 이훈야 이사는 자료 송부로 대체 또는 불참

<sup>92</sup>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 거주 이훈야 이사는 자료 송부로 대체 또는 불참

<sup>93</sup>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 거주 이훈야 이사는 자료 송부로 대체 또는 불참

|               |      |      |      |    |    |   |
|---------------|------|------|------|----|----|---|
| 2. 누적교육시간(시간) | 17.5 | 17.5 | 17.5 | 19 | 19 | - |
|---------------|------|------|------|----|----|---|

##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1) 사외이사 박원식

#### (가) 소극적 요건

##### - 관련 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 평가

박원식 이사는 당행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나) 적극적 자격 충족 여부

##### - 전문성

박원식 이사는 한국은행 부총재와 보험연구원 초빙자문위원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로, 한국은행에서 자금부, 국제금융부, 은행국, 비서실, 인사부, 총무국 등을 거치며 풍부한 경험과 거시적 분석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당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래로 신한은행의 경영전략과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 직무공정성

박원식 이사는 현재 동국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며, 신한은행과 전현직 소속기관 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신한은행의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윤리성, 책임성

박원식 이사는 금융전문가로서 원칙에 입각한 판단과 공정하고 냉철한 업무처리로 높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평판조회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8년 3월 당행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개최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021년 3월 개최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연임된 바 있습니다.

- 충실성

박원식 이사는 2018년 3월 21일 이후 신한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은행산업의 경영환경과 신한은행의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원식 이사의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석률,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 이해도 등 충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향후에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요약

| 심사항목                                             | 충족 여부 | 충족 이유   |
|--------------------------------------------------|-------|---------|
| 1. 소극적 요건                                        |       |         |
|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령 제7조 해당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br>령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br>해당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다)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 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2. 적극적 요건                              |    |                                        |
|----------------------------------------|----|----------------------------------------|
| 가) 지배구조법 제6조 제3항, 령 제8조 제4항<br>(전문성)   | 충족 | 금융 분야에 전문지식 및<br>충분한 실무경험 보유           |
| 나)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2호<br>(직무공정성) | 충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br>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
| 다)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3호<br>(윤리책임성) | 충족 |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
| 라)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4호<br>(충실성)   | 충족 |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br>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

## 2) 사외이사 서기석

### (가) 소극적 자격요건

#### - 관련 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 평가

서기석 이사는 당행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 - 전문성

서기석 이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전공한 법률전문가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수원 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률 실무경험이

풍부합니다. 2020년 3월 당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래로 은행의 주요 경영현안과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높은 해결방안 제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서기석 이사는 현재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당행 및 계열사와 해당 기관간에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당행의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이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윤리성, 책임성

서기석 이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로서 안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문제제기 및 해결 능력을 보여주며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성 및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 충실성

서기석 이사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에 불참하지 않고 이사회, 위원회 사외이사만의 회의 등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재임기간 중 보여준 회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사전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향후에도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 요약

| 심사항목                     | 충족 여부 | 충족 이유   |
|--------------------------|-------|---------|
| 1. 소극적 요건                |       |         |
|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령 제7조 해당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    |                                        |
|----------------------------------------|----|----------------------------------------|
| 령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br>해당여부           |    |                                        |
| 다)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 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2. 적극적 요건                              |    |                                        |
| 가) 지배구조법 제6조 제3항, 령 제8조 제4항<br>(전문성)   | 충족 | 법률 분야에 전문지식 및<br>실무경험 풍부               |
| 나)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2호<br>(직무공정성) | 충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br>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
| 다)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3호<br>(윤리책임성) | 충족 |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
| 라)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4호<br>(충실성)   | 충족 |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br>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

### 3) 사외이사 윤승한

#### (가) 소극적 자격요건

##### - 관련 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 평가

윤승한 이사는 당행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 - 전문성

윤승한 이사는 증권감독원, 월드뱅크(IBRD), 금융감독원 등에서 근무하며 회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실무와 전문지식을 쌓은 회계 전문가 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 상근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등 회계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 경영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수준 높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윤승한 이사가 재직한 한국공인회계사회(2020.7 임기 만료)와 당행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외이사 선임 후 고객, 주주 및 은행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윤승한 이사는 회계사로서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 관련 안건 토의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부평판조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충실성

윤승한 이사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만의 회의 등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재임기간 중 보여준 회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사전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향후에도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 요약

| 심사항목 | 충족 여부 | 충족 이유 |
|------|-------|-------|
|------|-------|-------|

|                                                  |    |                                        |
|--------------------------------------------------|----|----------------------------------------|
| 1. 소극적 요건                                        |    |                                        |
|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령 제7조 해당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br>령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br>해당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다)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 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2. 적극적 요건                                        |    |                                        |
| 가) 지배구조법 제6조 제3항, 령 제8조 제4항<br>(전문성)             | 충족 |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 풍부                         |
| 나)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2호<br>(직무공정성)           | 충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br>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
| 다)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3호<br>(윤리책임성)           | 충족 |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
| 라)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4호<br>(충실성)             | 충족 |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br>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

#### 4) 사외이사 임상현

##### (가) 소극적 자격요건

###### - 관련 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 평가

임상현 이사는 당행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 - 전문성

임상현 이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IBK기업은행 전무이사를 역임하고, 약 40년간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 금융 전문가 입니다. 금융 및 경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사회 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직무공정성

임상현 이사가 재직한 IBK기업은행(2020.1 임기 만료)와 당행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윤리성, 책임성

임상현 이사는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서 IBK기업은행 전무이사로 활동하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경청하는 자세로 높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평판조회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충실성

임상현 이사는 당행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 요약

| 심사항목                     | 충족 여부 | 충족 이유   |
|--------------------------|-------|---------|
| 1. 소극적 요건                |       |         |
|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령 제7조 해당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    |                                        |
|----------------------------------------|----|----------------------------------------|
| 령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br>해당여부           |    |                                        |
| 다)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 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2. 적극적 요건                              |    |                                        |
| 가) 지배구조법 제6조 제3항, 령 제8조 제4항<br>(전문성)   | 충족 | 금융 분야에 전문지식 및<br>충분한 실무경험 보유           |
| 나)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2호<br>(직무공정성) | 충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br>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
| 다)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3호<br>(윤리책임성) | 충족 |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
| 라)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4호<br>(충실성)   | 충족 |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br>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

## 5) 사외이사 이인재

### (가) 소극적 자격요건

#### - 관련 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 평가

이인재 이사는 당행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 - 전문성

이인재 이사는 금융사 CIO이자 CDO를 역임한 국내 대표 IT 전문가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 받아 삼성 금융계열사 최초의 여성 부사장이자 여성 사내이사로 금융사업 전반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금융 및 IT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조직을 신설하고 디지털 신사업을 주도하면서 역량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이인재 이사가 재직한 삼성카드(2020.12 임기 만료)와 당행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리성, 책임성

이인재 이사는 IT 전문가로서 삼성카드 임원으로 활동하며 솔선수범하는 리더로 위기 시 정면으로 돌파하여 조직을 안정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조직에서 성장하여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의 역할 배분을 추구하기에 주어진 시간 안에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내부평판조회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충실성

이인재 이사는 IT전문가이지만 금융사의 경영진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맺어진 주요 인맥이 훌륭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과 IT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보 획득 및 공유에 적극적이어서 당행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요약

| 심사항목 | 충족 여부 | 충족 이유 |
|------|-------|-------|
|------|-------|-------|

|                                                  |    |                                        |
|--------------------------------------------------|----|----------------------------------------|
| 1. 소극적 요건                                        |    |                                        |
|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령 제7조 해당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br>령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br>해당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다)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 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2. 적극적 요건                                        |    |                                        |
| 가) 지배구조법 제6조 제3항, 령 제8조 제4항<br>(전문성)             | 충족 | 디지털 분야에 전문지식 및<br>충분한 실무경험 보유          |
| 나)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2호<br>(직무공정성)           | 충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br>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
| 다)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3호<br>(윤리책임성)           | 충족 |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
| 라)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4호<br>(충실성)             | 충족 |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br>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

## 6) 사외이사 이혼야

### (가) 소극적 자격요건

#### - 관련 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 평가

이혼야 이사는 당행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 - 전문성

이혼야 이사는 재일(在日) 사회에서 성공한 교포 기업가로서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신한은행 이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창업정신 및 가치, 신한은행의 경영전략 및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이해도도 높습니다. 상기 사유에 따라 이혼야 이사는 경영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 직무공정성

이혼야 이사는 현재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당행 및 계열회사와 거래관계가 없어 독립성에 문제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사유에 따라 신한은행의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윤리성, 책임성

이혼야 이사는 경영전문가이자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경험 보유자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19상황 등으로 인해 제약조건이 많음에도, 모든 이사회 및 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등 높은 책임감을 보여주어 다른 이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 - 충실성

이혼야 이사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에 불참하지 않고 이사회, 위원회 사외이사만의 회의 등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재임기간 중 보여준 회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사전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향후에도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 요약

| 심사항목                                             | 충족 여부 | 충족 이유                                  |
|--------------------------------------------------|-------|----------------------------------------|
| 1. 소극적 요건                                        |       |                                        |
|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령 제7조 해당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br>령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br>해당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다)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 여부                              | 충족    | 해당사항 없음                                |
| 2. 적극적 요건                                        |       |                                        |
| 가) 지배구조법 제6조 제3항, 령 제8조 제4항<br>(전문성)             | 충족    | 경영 분야에 전문지식 및<br>충분한 실무경험 보유           |
| 나)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2호<br>(직무공정성)           | 충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br>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
| 다)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3호<br>(윤리책임성)           | 충족    |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
| 라)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6항 제4호<br>(충실성)             | 충족    |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br>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사외이사(일부 친족 포함)가 임직원(수탁자 포함)으로 있는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해당 사외이사가 재임 중인 금융회사(계열 금융회사 등 포함)가 기부하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될 때 최근 2년내에 임직원으로 있었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과거 2년간의 기부내역을, 사외이사로 재임 중 비영리 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과거 2년간 해당

비영리법인 등에 제공된 기부내역을 각각 사후보고 해야 합니다.

이에 2021년 중 이사회에 총 1건<sup>94</sup>의 기부금 제공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될 때 최근 2년내에 임직원으로 있었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과거 2년간의 기부내역입니다.

## 바. 사외이사 평가

### 1) 평가 개요

당행은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2년, 이후 연임시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외이사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에서 결의한 평가방법에 의거,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내부평가

#### (가) 내부평가 개요

##### - 평가 주체

당행 이사회는 전년도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익년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 평가 기준

당행 이사회는 매년 3월에 있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구성한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및 이사회 등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의를 통해서 당해년도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2021년도 사외이사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차 정기이사회(2021.3.24)에서

---

<sup>94</sup> 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2021.3.24)에서 '사외이사 등이 속한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은행의 기부금 제공'안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결의되었으며, 결의사항에 따라 2022년초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자기평가(본인평가), 이사회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에 대한 평가) 및 직원평가로 구성되며, 평가지표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 보유 정도,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률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보다 충실하고 효과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외이사 개개인에 대한 종합의견 또한 기술하도록 실시하였습니다.

#### - 평가 절차

사외이사 평가는 우편 발송을 통한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당행 이사회는 평가주체, 기준, 방법 등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의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위탁을 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 총론

'2021년도 사외이사 평가'는 자기평가(본인 평가), 이사회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에 대한 평가), 직원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제190기 사외이사로서 활동하신 총 6명 사외이사 전원이 사외이사 직무에 대한 기대 이상의 강점을 보이는 4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신한은행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에 규정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고려할 때 당행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별 평균값 역시 사외이사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 사외이사 | 평가결과 |     |       |     |                  | 개선방안 |
|------|------|-----|-------|-----|------------------|------|
|      | 전문성  | 공정성 | 윤리책임성 | 충실성 | 기타 <sup>95</sup> |      |
| 박원식  | 5    | 4   | 5     | 5   | 4                |      |
| 서기석  | 4    | 5   | 5     | 5   | 4                |      |
| 윤승한  | 5    | 5   | 5     | 5   | 4                |      |
| 김명희  | 4    | 5   | 5     | 5   | 5                |      |
| 임상현  | 5    | 4   | 5     | 4   | 5                |      |
| 이혼야  | 4    | 4   | 4     | 4   | 4                |      |

### 3) 외부평가

#### (가) 외부평가 개요

당행은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당행은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행은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장(현 박원식 의장)이 사외이사를 대표하고 있어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는 선임하지 않고

<sup>95</sup> 기타항목에는 신한은행(신한금융그룹)의 비전, 전략 및 신한문화 이해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 진행 기여 정도 등이 평가되었습니다.

있습니다.

##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행은 전략기획부 및 비서실을 통하여 이사회와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략기획부장 및 비서실장의 관할하에 해당 부서의 직원 6명이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등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이사회등의 회의내용 기록 유지
- 이사회등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지원
- 사외이사에 대한 은행 관련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 이사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소개 및 실무지원
- 신규 선임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수 실시
- 이사회 및 이사의 각종 법규준수를 위한 지원
- 사외이사 및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포함)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기타 이사회등의 지시사항 처리

당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를 전략기획부로 지정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군 보고, 사외이사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 1) 사외이사 박원식

##### (가) 재직기간

2020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최초 선임일 2018.3.21)되었으며, 2021년 말 현재까지 재임 중입니다.

#####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항 목            | 금 액     | 산출 내역                    |
|----------------|---------|--------------------------|
| 가. 보수총액        | 77.1백만원 |                          |
| 기본급            | 48백만원   | 월 4백만원                   |
| 상여금            |         |                          |
| 기타 수당          | 17.1백만원 | 회의수당 (이사회, 임추위)          |
|                | 12백만원   | 직책수당 (이사회 의장, 1백만원x12개월)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
| 건강검진 지원        | 2백만원    | 건강검진 1회                  |

## 2) 사외이사 서기석

### (가) 재직기간

2020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2021년 말 현재까지 재임 중입니다.

###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항 목            | 금 액     | 산출 내역                       |
|----------------|---------|-----------------------------|
| 가. 보수총액        | 75.5백만원 |                             |
| 기본급            | 48백만원   | 월 4백만원                      |
| 상여금            |         |                             |
| 기타 수당          | 21.5백만원 | 회의수당 (이사회, 감사위, 보수위, 위험관리위) |
|                | 6백만원    | 직책수당 (보수위원장, 0.5백만원x12개월)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
| 건강검진 지원        | 2백만원    | 건강검진 1회                     |

## 3) 사외이사 윤승한

### (가) 재직기간

2020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2021년 말 현재까지 재임 중입니다.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항 목            | 금 액     | 산출 내역                     |
|----------------|---------|---------------------------|
| 가. 보수총액        | 75.7백만원 |                           |
| 기본급            | 48백만원   | 월 4백만원                    |
| 상여금            |         |                           |
| 기타 수당          | 21.7백만원 | 회의수당 (이사회, 감사위, 임추위)      |
|                | 6백만원    | 직책수당 (감사위원장, 0.5백만원x12개월)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
| 건강검진 지원        | 2백만원    | 건강검진 1회                   |

#### 4) 사외이사 임상현

(가) 재직기간

2021년 4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2021년 말 현재까지 재임 중입니다.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항 목            | 금 액     | 산출 내역                     |
|----------------|---------|---------------------------|
| 가. 보수총액        | 56.4백만원 |                           |
| 기본급            | 36백만원   | 월 4백만원 (취임일 이후 일할 계산)     |
| 상여금            |         |                           |
| 기타 수당          | 15.9백만원 | 회의수당 (이사회, 위험관리위, 임추위)    |
|                | 4.5백만원  | 직책수당 (위험관리위원장, 0.5백만x9개월)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
| 건강검진 지원        | 2백만원    | 건강검진 1회                   |

## 5) 사외이사 이인재

### (가) 재직기간

2021년 12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2021년 말 현재까지 재임 중입니다.

## 6) 사외이사 이혼야

### (가) 재직기간

2020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2021년 말 현재까지 재임 중입니다.

###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항 목     | 금 액     | 산출 내역           |
|---------|---------|-----------------|
| 가. 보수총액 | 58.8백만원 |                 |
| 기본급     | 48백만원   | 월 4백만원          |
| 상여금     |         |                 |
| 기타 수당   | 10.8백만원 | 회의수당 (이사회, 보수위) |

## 7) 사외이사 김명희

### (가) 재직기간

2021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2021년 12월 28일 퇴임하였습니다.

###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항 목            | 금 액     | 산출 내역                   |
|----------------|---------|-------------------------|
| 가. 보수총액        | 57.8백만원 |                         |
| 기본급            | 36백만원   | 월 4백만원 (취임일 이후 일할 계산)   |
| 상여금            |         |                         |
| 기타 수당          | 17.3백만원 | 회의수당 (이사회, 감사위, 임추위)    |
|                | 4.5백만원  | 직책수당 (임추위원장, 0.5백만x9개월)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
| 건강검진 지원        | 2백만원    | 건강검진 1회                 |

## 8) 사외이사 이성우

### (가) 재직기간

2020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최초 선임일 2016.5.25)되었으며, 2021년 3월 24일 퇴임하였습니다.

###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항 목     | 금 액     | 산출 내역                     |
|---------|---------|---------------------------|
| 가. 보수총액 | 15.6백만원 |                           |
| 기본급     | 10.5백만원 | 월 3.5백만원 (퇴임일 이전 일할 계산)   |
| 상여금     |         |                           |
| 기타 수당   | 3.6백만원  | 회의수당 (이사회, 위험관리위, 임추위)    |
|         | 1.5백만원  | 직책수당 (위험관리위원장, 0.5백만x3개월) |

## 9) 사외이사 인호

### (가) 재직기간

2020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최초 선임일 2016.3.23)되었으며, 2021년 3월 24일 퇴임하였습니다.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항 목     | 금 액     | 산출 내역                   |
|---------|---------|-------------------------|
| 가. 보수총액 | 14.4백만원 |                         |
| 기본급     | 10.5백만원 | 월 3.5백만원 (퇴임일 이전 일할 계산) |
| 상여금     |         |                         |
| 기타 수당   | 2.4백만원  | 회의수당 (이사회, 위험관리위, 임추위)  |
|         | 1.5백만원  | 직책수당 (임추위원장, 0.5백만x3개월) |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거래를 제외한 별도 계약 체결 내역은 모든 사외이사에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성명  | 최초<br>선임일 | 임기<br>만료일          | 재임<br>기간 <sup>96</sup> | 담당 위원회                                                                     | 직위                                                   | 경력                                                                 |
|-----|-----------|--------------------|------------------------|----------------------------------------------------------------------------|------------------------------------------------------|--------------------------------------------------------------------|
| 인 호 | 16.3.23   | 21년<br>정기<br>주주총회일 | 61                     | 위험관리위(16.3월~21.3월)<br>임추위(16.7월~17.3월<br>,18.3월~21.3월)<br>보수위(17.3월~18.3월) | 보수위원장<br>(17.3월~18.3월)<br>임원후보추천위원장<br>(18.3월~21.3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br>컴퓨터공학 교수<br>글로벌핀테크연구원<br>센터장<br>금융위원회 핀테크<br>정책자문단 위원 |
| 이성우 | 16.5.25   | 21년<br>정기<br>주주총회일 | 59                     | 위험관리위(16.5월~21.3월)<br>보수위(16.5월~17.3월)<br>임추위(16.5월~21.3월)                 | 위험관리위원장<br>(16.5월~21.3월)                             | 동아대학교<br>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금융위원회<br>평가위원회 위원장<br>한국공인회계사회<br>윤리기준위원    |
| 박원식 | 18.3.21   | 22년                | 46                     | 보수위(18.3월~20.3월)                                                           | 이사회 의장                                               | 한국은행 부총재                                                           |

<sup>96</sup> 재임기간은 2021년 12월말 기준(1개월 미만시 1개월로 계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단위 : 개월)

| 성명  | 최초<br>선임일 | 임기<br>만료일          | 재임<br>기간 <sup>96</sup> | 담당 위원회                                                       | 직위                                                  | 경력                                               |
|-----|-----------|--------------------|------------------------|--------------------------------------------------------------|-----------------------------------------------------|--------------------------------------------------|
|     |           | 정기<br>주주총회일        |                        | 감사위(18.3월~20.3월)<br>임추위(20.3월~현재)<br>위험관리위(21.3월~21.4월)      | (20.3월~현재)<br>보수위원장<br>(18.3월~20.3월)                | 보험연구원<br>초빙연구위원<br>동국대학교 객원교수                    |
| 서기석 | 20.3.25   | 22년<br>정기<br>주주총회일 | 22                     | 보수위(20.3월~현재)<br>감사위(20.3월~21.3월)<br>위험관리위(21.4월~현재)         | 보수위원장<br>(20.3월~현재)                                 | 헌법재판소 재판관<br>서울중앙지방법원<br>법원장                     |
| 윤승한 | 20.3.25   | 22년<br>정기<br>주주총회일 | 22                     | 감사위(20.3월~현재)<br>임추위(20.3월~현재)                               | 감사위원장<br>(20.3월~현재)                                 | 한국공인회계사회<br>상근행정부회장<br>금융감독원<br>도쿄사무소 소장         |
| 이흔야 | 20.3.25   | 22년<br>정기<br>주주총회일 | 22                     | 보수위(20.3월~현재)                                                | -                                                   | 신한금융지주<br>사외이사<br>재일한국상공회의소<br>상임이사              |
| 김명희 | 21.3.24   | 21.12.28           | 10                     | 감사위(21.4월~21.12월)<br>위험관리위(21.3월~21.4월)<br>임추위(21.3월~21.12월) | 위험관리위원장<br>(21.3월~21.4월)<br>임추위원장<br>(21.4월~21.12월) | 한국IBS GTS 상무<br>SK텔레콤 본부장<br>행정안전부<br>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 임상현 | 21.4.1    | 23년<br>정기<br>주주총회일 | 9                      | 위험관리위(21.4월~현재)<br>임추위(21.4월~현재)                             | 위험관리위원장<br>(21.4월 ~ 현재)                             | IBK기업은행<br>전무이사<br>IBK저축은행<br>대표이사               |
| 이인재 | 21.12.28  | 23년<br>정기<br>주주총회일 | 1                      | 감사위(21.12월~현재)                                               | -                                                   | 삼성카드 디지털본부<br>부사장                                |

## 5. 대표이사 경영승계

### 가. 대표이사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행은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로서,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계획 운영 등 그룹내 자회사 지배구조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내부규범<sup>97</sup> 또한 은행장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은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0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대표이사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2월 26일 지주회사 이사회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1일에는 자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회사 CEO의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담당해 온 자회사의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인선 기준 및 심의 관련 기능을 자회사 이사회가 담당하도록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이사회내위원회에 편입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종료 사유와 시기,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관리방법, 비상승계계획 등입니다.

<붙임>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참고

### 나.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sup>97</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1조(은행장 경영승계 원칙)

## (1) 일반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위해 2011년 자회사 CEO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상시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당행은 2020년 6월 25일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경영승계계획 관련 사항을 은행 이사회가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대한 당행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합니다. 당행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당행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 ① 대표이사 자격요건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법 및 시행령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②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③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합니다. 당행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당행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 ④ 최종후보자 추천절차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승계시점 자회사 CEO로서 요구되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 ⑤ 경영승계절차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를 위원회 결의로 추천하고, 당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 ⑥ 후보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전사 관점의 의사결정, 전략실행/추진력, 리더십, 대내외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의 개발 프로그램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육성 후보군의 경영성과 및 개발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심의, 평가하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군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2020년 6월 25일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은행 소속 육성 후보군의 선정 및 개발계획, 평가 및 개발활동 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경영승계에 대한 당행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 (2) 비상계획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 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상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속승계 프로세스를 통해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1)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해당사항 없음

## (2) 대표이사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결과

해당사항 없음

## 라. 대표이사 자격충족 여부

해당사항 없음

## 마.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및 최종 후보자 추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3일 개최된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용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부사장 또는 부행장 이상 경영진 전원으로 총 44명의 육성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연중 상시적으로 후보군 육성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육성후보군별 경영성과, 개발활동에 대한 심의 및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지주회사 신한리더십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 (3) 후보군 현황

| 구분 | 후보군 수 | 추천 경로                                                |
|----|-------|------------------------------------------------------|
| 내부 | 44명   | 2021년 3월 3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br>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육성후보군 선정 |

#### 바.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행은 2020년 6월 25일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당행 이사회가 경영승계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당행은 2021년 제3차 정기이사회 (21.8.25)에서 은행장 경영승계계획 관련 보고를 하였습니다.

####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지주회사는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한리더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리더십센터는 팀장과 팀원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 운영 등 경영리더 육성 및 관리, 경영진 성과 보상 및 평가, 그룹 인사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한리더십센터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7조에 따라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대표이사 경영승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리더십센터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동 위원회가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과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는 실무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부서명 : 신한리더십센터

직원수 : 총 10명

운영 내역

| 일자         | 운영내역                                                                                                                | 비고                |
|------------|---------------------------------------------------------------------------------------------------------------------|-------------------|
| 2021.3.3   | 2020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 관련<br>실무 지원<br>2021년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체계<br>수립 관련 실무 지원<br>2021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br>선정 심의 관련 실무 지원 | 제1회<br>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 2021.5.13  |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br>평가 심의 관련 실무 지원<br>2021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br>개발계획 보고 관련 실무 지원                                  | 제2회<br>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 2021.11.18 |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관련<br>실무 지원<br>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 심의 관련<br>실무 지원                                                      | 제3회<br>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 2021.12.9  |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 선정 심의<br>관련 실무 지원<br>자회사 대표이사 압축후보군 선정 심의<br>관련 실무 지원                                                | 제4회<br>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 2021.12.16 |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 제5회<br>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 5-2.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가. 권한과 책임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와 검증을 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대표이사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참고로 당행의 대표이사 자격요건으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과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있으며,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2021년도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총 5회 개최되었으며, 기간 중 부의된 결의안건 9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3월 개최된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총 44명의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제4회, 제5회 두 차례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통해 신한금융투자, 신한자산운용 전통자산 부문, 신한자산운용 대체투자 부문, 제주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리츠운용, 신한SI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 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구성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2021년 12월말 기준)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21년 3월 25일에 대표이사 회장과 4명의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이 위원장을 담당하였습니다.

#### <2021.3 정기주주총회 이전>

| 성명  | 상임/사외/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만료일     |
|-----|-----------|-----|-----------|-----------|
| 조용병 | 사내        | 위원장 | 2020.3.26 | 2021.3.25 |
| 변양호 | 사외        | 위원  | 2020.3.26 | 2021.3.25 |
| 이윤재 | 사외        | 위원  | 2020.3.26 | 2021.3.25 |
| 허용학 | 사외        | 위원  | 2020.3.26 | 2021.3.25 |
| 박안순 | 사외        | 위원  | 2020.3.26 | 2021.3.25 |

#### <2021.3 정기주주총회 이후>

| 성명  | 상임/사외/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만료일              |
|-----|-----------|-----|-----------|--------------------|
| 조용병 | 사내        | 위원장 | 2021.3.25 | 2022.3월<br>정기주주총회일 |
| 변양호 | 사외        | 위원  | 2021.3.25 | 2022.3월<br>정기주주총회일 |
| 박안순 | 사외        | 위원  | 2021.3.25 | 2022.3월<br>정기주주총회일 |
| 성재호 | 사외        | 위원  | 2021.3.25 | 2022.3월<br>정기주주총회일 |
| 곽수근 | 사외        | 위원  | 2021.3.25 | 2022.3월<br>정기주주총회일 |

### 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21년도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총 5회 개최되었으며, 기간 중 부의된 결의안건 9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3월 개최된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총 44명의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제4회, 제5회 두 차례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통해 신한금융투자, 신한자산운용 전통자산 부문, 신한자산운용 대체투자 부문, 제주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리츠운용, 신한SI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2021년도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21.3.3 (수)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br>여부 |
|-----------------------------------------|-----------|-----|-----|-----|-----|----------|
| 1. 이사 성명                                | 조용병       | 박안순 | 변양호 | 이윤재 | 허용학 |          |
|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보고안건 없음)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1호 안건 (2020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호 안건 (2021년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체계 수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3호 안건 (2021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며, 제1호 안건으로 2020년 자회사 CEO리더십 평가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제2호 안건으로는 2021년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체계 수립의 건을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3호 안건으로는 2021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이 부의되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용 대상 자회사의 부사장 및 부행장 이상 경영진 전원 44명이 2021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21.5.13 (목)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br>여부 |
|------------------------------------------|----------|-----|-----|-----|-----|----------|
|                                          | 조용병      | 박안순 | 변양호 | 성재호 | 곽수근 |          |
| 1. 이사 성명                                 | 조용병      | 박안순 | 변양호 | 성재호 | 곽수근 |          |
|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가. 2021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활동 계획 수립의 건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1호 안건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 건)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며, 제1호 안건으로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건을 부의하여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의 개발활동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21.11.18 (목)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br>여부 |
|------------------------------------|-----------|-----|-----|-----|-----|----------|
|                                    | 조용병       | 박안순 | 변양호 | 성재호 | 곽수근 |          |
| 1. 이사 성명                           | 조용병       | 박안순 | 변양호 | 성재호 | 곽수근 |          |
|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보고안건 없음)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br>적정성 점검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br>리더십 평가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이를 반영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내외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절차가 연간 적절히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 경영승계육성후보군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이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통한 경영의 연속성 확보 및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호 안건으로는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의 건을 부의하여, 자회사의 CEO 아닌 경영진의 리더십 평가 결과를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21.12.9 (목)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br>여부 |
|------------------------------------|-----------|-----|-----|-----|-----|----------|
| 1. 이사 성명                           | 조용병       | 박안순 | 변양호 | 성재호 | 곽수근 |          |
|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보고안건 없음)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1호 안건 (자회사 대표이사<br>승계후보군 선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호 안건 (자회사 대표이사<br>압축후보군 선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 선정의 건을 부의하여,  
2021년 연말부터 2022년 3월에 걸쳐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9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CEO 후보군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제2호 안건으로는 자회사  
대표이사 압축후보군 선정의 건을 부의하였고, 제1호 안건 심의 대상이 된 9개  
자회사 별로 3~5명의 압축후보군을 심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2021.12.16 (목)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br>여부 |
|-------------------|----------|-----|-----|-----|-----|----------|
| 1. 이사 성명          | 조용병      | 박안순 | 변양호 | 성재호 | 곽수근 |          |
|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    |    |    |    |    |    |
|------------------------------|----|----|----|----|----|----|
| (보고안건 없음)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
| 가. 1호 안건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의의 건을 부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된 회사별 압축후보군을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그룹 공통 자격요건'과 회사별 '전략적 요구역량'을 기준으로 심의하였고, 회사별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추천 대상 회사는 신한금융투자,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리츠운용, 신한SI 등 9개사이며, 신한자산운용은 신한대체자산운용과의 합병으로 전통자산 부문과 대체자산 부문의 각자대표 후보를 각 1인씩 추천하였습니다.

#### 라. 대표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감사위원회

### 가. 역할

#### (1) 총괄

감사위원회는 은행의 가치를 제고하고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활동 및 컨설팅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금융 관련 제반 리스크 최소화 및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 은행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부감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은행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sup>98</sup>,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 등 법령과 「신한은행 정관」(이하 '정관') 등 내규에서 규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 (2) 구체적 역할

‘정관’은 감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sup>99</sup>

- ㉠ 은행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주주총회 진술
- ㉢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자회사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 ㉣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 요청
- ㉤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또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내부규범')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

<sup>98</sup>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독립의 원칙)

<sup>99</sup> 「신한은행 정관」 제48조(감사위원회의 직무)

열거하고 있습니다.<sup>100</sup>

- ㉞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㉟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의 제시
- 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의 제시
- ㊲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 동의
- ㊳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
- ㊴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㊵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 ㊶ 관계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 ㊷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2021년 중 개최된 총 3회(정기총회 1회, 임시총회 2회)의 주주총회 안건을 조사하고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중 총 17차례 개최된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사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이 있는 경우 경영진과 부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sup>101</sup>,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sup>100</sup>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5조(감사위원회) 제8항

<sup>101</sup>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권한)

있습니다.<sup>102</sup>

2021년 경영진의 일상업무 집행문서 797건에 대하여 사전감사, 4,236건에 대하여 사후감사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선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라 은행의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동 권한은 당행의 ‘정관’, ‘내부규범’, ‘감사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당행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해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지배회사 외부감사인 변경에 따라, 당행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지배회사’)의 주요 자회사로서 ‘외부감사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당행 외부감사인을 지배회사와 일치 운영하기 위해, 2019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인을 해임 요청 결의(2019년 제11차 감사위원회, 2019.12.27) 하였습니다.

당행은 감사위원회(2020년 제2차 감사위원회, 2020.2.26)에서 지배회사가 지정받은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이 당행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평가하여,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삼일회계법인을 당행 2020 사업연도부터 2022 사업연도까지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2020 사업연도부터 2022 사업연도까지 당행에 대한 회계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분기재무제표와 반기재무제표 검토 업무를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2021 사업연도 검토 및 감사업무를 위해 파트너 직급 회계사 2명, 매니저 직급 이상 회계사 4명 등 총 29명의 감사인력과 전산감사, 계리업무, 공정가치 검토 관련 전문가 등 36명을 투입하여 약 29천 시간(2022.2.15 기준) 가량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행은 2021 사업연도 회계감사 서비스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에 2,851백만원(부가세

---

<sup>102</sup> 「상법」 제402조(유지청구권)

제외)을 회계감사 보수로 지급하였습니다. 감사보수는 표준감사시간에 따른 감사투입 예정시간과 감사투입 인력을 감안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으며 감사위원회의 결의(2021년 제1차 감사위원회, 2021.2.4)를 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1년 외부감사 수행계획, 분기별 검토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기말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았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활동 근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외부감사법 등 외규와 감사인 선정 시 수립한 평가기준이 준수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7차 감사위원회(2021.5.4)에서 "2020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은 당행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가적 적격성을 확보하고, 회계법인 내 업무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등 당행에 대한 감사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한 비감사 서비스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인 감사부가 검토 후 지주회사 감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 외부감사인이 당행에 제공한 감사 관련 용역은 해외그룹감사를 위한 전산감사로 2021년 감사보수 승인 시(2021년 제1차 감사위원회, 2021.2.4) 당행 감사위원회 승인을 득하였고, 지주회사 감사위원회의 승인(2021년 제3차 감사위원회, 2021.3.2)을 득하였습니다.

####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내부규범’은 상임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sup>103</sup>, 「감사위원회규정」은 상임감사위원의 수임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sup>104</sup>

㉞ 은행장, 그룹장, 그룹장의 전결권을 갖는 상무 또는 본부장의 일상업무 집행에

<sup>103</sup>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6조(상임감사위원)

<sup>104</sup>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권한위임), 제17조(위원회에 대한 보고)

## 대한 사전·사후감사

- ㉮ 감사 실시 등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㊱ 감사역 보직, 전보 등 인사 시 사전 협의 및 근무 평정
- ㊲ 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 개폐
- ㊳ 감사위원회가 지시 또는 별도로 결의하여 위임한 사항
- ㊴ 은행장 또는 감독기관이 의뢰하는 업무의 감사
- ㊵ 사고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
- ㊶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① 내부감사의 실시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위임에 의거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감사에 대하여 감사실시에 관한 절차, 세부지침, 감사요령,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주요 사항의 보고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 내부감사 수행현황과 주요 감사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 감사위원회에 대한 상임감사위원의 보고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20년 제4분기 감사활동결과 (제1차, 2021.2.4.)
- ㉯ 2020년 연간 감사활동결과 (제1차, 2021.2.4.)
- ㊱ 2021년 제1분기 감사활동결과 (제7차, 2021.5.4.)
- ㊲ 2021년 제2분기 감사활동결과 (제9차, 2021.8.25.)
- ㊳ 2021년 제3분기 감사활동결과 (제11차, 2021.11.24.)
- ㊴ 2022년 감사부 사업계획 및 감사계획 (제12차, 2021.12.28.)

###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제출받고,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sup>105</sup>

감사위원회는 2021년 제1차 임시이사회(2021.2.4.)에서 승인한 재무제표 등을 은행장으로부터 제출받았으며, 내부감사부서로 하여금 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2021년 제2차 감사위원회(2021.2.24.)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재무제표 감사결과를 청취(2021년 제2차 감사위원회, 2021.2.24.)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등에 대한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결과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당행의 제18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은행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은행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부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외에도 외부감사인의 연간 감사계획, 외부감사인의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결과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 ㉞ 외부감사인의 2021년 감사계획 보고 (2021년 제8차)

#### ㉟ 외부감사인의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2021년 제8차, 제9차, 제11차)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해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행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㊱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21년 제2차)

---

<sup>105</sup>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신한은행 정관」 제51조(회계기간 및 결산) 제2항 및 제4항

㉔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보고  
(2021년 제2차)

㉕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2021년 제2차, 심의사항)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다음 사항<sup>106</sup>에 대하여 그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인 감사부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관련 감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감사위원회가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㉖ 내부통제시스템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㉗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㉘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㉙ 내부통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㉚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㉛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㉜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㉝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㉞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은행이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

㉟ 관련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㊲ 자금세탁방지체계의 이행수준과 효과에 대한 평가

㊳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

<sup>106</sup> 「감사위원회규정」 제11조(결의사항 등) 제2항

감사위원회는 연1회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심의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시정하여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 감사위원회는 "2020년 내부통제체계 평가"(제3차, 2021.3.24.)를 심의하고, 주요 부문의 내부통제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부문별 감사리스크 측정결과에 따라 감사자원이 적정히 배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②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감사위원회는 연1회 경영공시 등 공시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심의하고 개선점이 발견된 경우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 감사위원회는 "2020년도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평가" (2021년 제7차, 2021.5.4.)를 심의하여 당행의 공시정책 수립 및 공시활동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③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외부감사인의 연간 감사활동 수행내역을 평가·심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 감사위원회는 "2020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제7차, 2021.5.4.)를 심의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sup>107</sup>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위원회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결과를 청취하였습니다.

---

<sup>107</sup>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4항 및 제5항

또한 내부감사부서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심의한 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와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위원회의 감사위원회 보고,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 보고 등의 현황입니다.

- ㉞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2차, 2021.2.24.)
- ㉟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평가계획 보고 (제2차, 2021.2.24.)
- ㊱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보고 (제2차, 2021.2.24.)
- ㊲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제2차, 2021.2.24.)
- ㊳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대상 범위 선정 보고 (제8차, 2021.5.20.)
- ㊴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중간평가 결과보고 (제11차, 2021.11.24.)
- ㊵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에 대한 부문감사 결과보고 (제12차, 2021.12.28.)

#### ⑤ 자금세탁방지체계의 이행수준과 효과에 대한 평가

감사위원회는 연1회 자금세탁방지체계의 이행수준과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체계 등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감사위원회는 2021년 중 "자금세탁방지체계의 이행수준과 효과에 대한 평가" (제8차, 2021.5.20.)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내규에서 정한 바<sup>108</sup>에 따라 이사회(제2차 정기 이사회, 2021.5.20.)에 제출하였습니다.

####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

<sup>108</sup>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조(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 제2항

## (1) 총괄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등 외규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바, '정관' 및 '내부규범' 등 내규에서 정한 사항은 모두 관련 법률에 부합하며,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 기준                                | 법령 등          | 내규                         | 비고 |
|-----------------------------------|---------------|----------------------------|----|
| 감사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함              | 지배구조법 제19조제1항 | 정관 제47조제1항<br>내부규범 제25조제1항 | 충족 |
|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함  | 지배구조법 제19조제2항 | 정관 제47조제2항<br>내부규범 제25조제1항 | 충족 |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은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임함 | 지배구조법 제19조제5항 | 내부규범 제25조제4항               | 충족 |
|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함      | 지배구조법 제19조제1항 | 정관 제47조제3항<br>내부규범 제25조제1항 | 충족 |
|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음         | 지배구조법 제19조제6항 |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 충족 |
|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함             | 지배구조법 제19조제4항 | 내부규범 제25조제3항               | 충족 |
| 감사위원회는 결의로써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함     | 지배구조법 제16조제4항 | 정관 제47조제4항<br>내부규범 제25조제5항 | 충족 |

## (2) 구성원

| 성명  | 구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
| 윤승한 | 사외 | 감사위원장(現) | 2020.3.25. |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
| 이인재 | 사외 | 감사위원(現)  | 2021.12.28 |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

| 성명     | 구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
| 김명희    | 사외 | 감사위원(前)   | 2021.4.1   | 2021.12.28  |
| 서기석    | 사외 | 감사위원(前)   | 2020.3.25. | 2021.4.1    |
| 허창언*1) | 상임 | 상임감사위원(前) | 2018.1.1.  | 2021.12.31. |

\*1) 허창언 상임감사위원은 2021.12.31 임기만료 되었으며, 선임 9 상임감사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됨 (2022.01.01~2023.12.31)

#### ①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감사위원회는 상임감사위원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된 바, 관련 외규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외규 및 내규<sup>109</sup>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구한 바,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㉞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㉟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㊱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㊲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㊳ 금융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 포함)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㊴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자

<sup>109</sup>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신한은행 정관」 제50조(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제1항

위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중 윤승한 감사위원장과 허창언 상임감사위원은 ㉔에 해당됩니다.

## ② 감사위원 선임 절차

「상법」과 「지배구조법」 등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sup>110</sup>한 바, 감사위원은 이에 따라 선임되었습니다.

㉔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것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㉕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할 것

㉖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의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을 것

한편, 상임감사위원인 사내이사(허창언)는 당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2017년 제6차, 2017.12.29.)으로 주주총회(제186기 제3차 임시, 2017.12.29.)에서 최초선임(2017.1.1.~2019.12.31.)되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2019년 제6차 2019.12.27, 2020년 제7차 2020.12.24)으로 제188기 제2차 임시 주주총회(2019.12.27) 및 제189기 제2차 임시 주주총회에서 재선임(2021.12.31. 임기만료) 되었습니다.

사외이사인 분리선임 감사위원(윤승한)은 제188기 정기 주주총회(2020.3.25.)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인 이인재 감사위원은 제 190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2021.12.28)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인 김명희 감사위원은 제190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2021.4.1)에서 신규 선임되고, 지주회사 부사장으로 신규 선임됨에 따라 사임(2021.12.28)하였습니다. 사외이사인 서기석 감사위원은 제188기 정기주주총회(2020.3.25)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제189기 정기주주총회(2021.3.24)에서 재선임 후 사임(2021.4.1)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윤승한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최초 선임(제5차, 2020.3.25.)하고, 2021년 제5차 감사위원회에서 재선임(제5차, 2021.3.24.)하였습니다.

---

<sup>110</sup> 「상법」 제409조(선임)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제4항부터 제6항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21년 중 총 13회의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모든 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1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26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총 4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합계 |
|------|-----|-----|-----|-----|-------|
| 회의수  | 5회  | 3회  | 1회  | 4회  | 13회   |
| 보고안건 | 10건 | 5건  | 5건  | 6건  | 26건   |
| 심의안건 | 2건  | 3건  | 2건  | -건  | 7건    |
| 결의안건 | 6건  | 1건  | -건  | 3건  | 10건   |
| 안건 계 | 18건 | 9건  | 7건  | 9건  | 43건   |

###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1년도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2월 4일(목) 9시 00분 ~ 9시 40분  
[소집통지일: 2021년 1월 27일(수)]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서기석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가. 2020년 4분기 감사활동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나. 2020년 4분기 감독기관 등 수검 현황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다. 2020년 연간 감사활동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라. 2020년 4분기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마. 2020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현황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결의사항                       |          |     |     |      |
| 가. 2021년도 외부감사보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나) 2021년도 제2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2월 24일(수) 9시 30분 ~ 11시 30분  
[소집통지일: 2021년 2월 16일(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서기석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가.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나.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평가계획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다.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라. 외부감사인의 2020년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심의안건                              |          |     |     |      |
| 가.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 특이사항 없음  |     |     | -    |
| 5. 결의안건                              |          |     |     |      |
| 가. 제189기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0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다) 2021년도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 2021년 3월 24일(수) 8시 00분 ~ 8시 30분  
[소집통지일: 2021년 3월 16일(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서기석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가. 2019년 종합검사 제재조치 결과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심의안건                 |          |     |     |      |
| 가. 2020년 내부통제체계 평가      | 특이사항 없음  |     |     | -    |

(라) 2021년도 제4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3월 24일(수) 11시 00분 ~ 11시 10분

[소집통지일: 2021년 3월 16일(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서기석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결의안건                          |          |     |     |      |
| 가. 제189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조사결과*1)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제1호 의안: 제18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제2호 의안: 정관 개정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이사 선임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마) 2021년도 제5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3월 24일(수) 14시 00분 ~ 14시 15분

[소집통지일: 2021년 3월 16일(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서기석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결의안건                  |          |     |     |      |
|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1년도 상임감사위원 평가목표 설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바) 2021년도 제6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4월 1일(목) 9시 00분 ~ 9시 10분

[소집통지일: 2021년 3월 24일(수)]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서기석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결의안건                              |          |     |     |      |
| 가. 제190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조사결과*1)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 제1호 의안: 이사선임

제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사) 2021년도 제7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5월 4일(화) 10시 00분 ~ 10시 30분

[소집통지일: 2021년 4월 26일(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김명희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가. 2021년 1분기 감사활동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나. 2021년 1분기 감독기관 등 수검 현황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심의안건                        |          |     |     |      |
| 가. 2020년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평가 | 특이사항 없음  |     |     | -    |
| 나. 2020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특이사항 없음  |     |     | -    |

(아) 2021년도 제8차 정기 감사위원회: 2021년 5월 20일(목) 14시 20분 ~ 15시 00분

[소집통지일: 2021년 5월 12일(수)]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김명희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가.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대상범위 선정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나. 외부감사인의 2021년 감사계획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다. 외부감사인의 2021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심의안건                            |          |     |     |      |
| 가. 2020년 자금세탁방지체계의 이행수준과 효과에 대한 평가 | 특이사항 없음  |     |     | -    |

(자) 2021년도 제9차 정기 감사위원회: 2021년 8월 25일(수) 13시 30분 ~ 14시 30분

[소집통지일: 2021년 8월 17일(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김명희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가. 2021년 2분기 감사활동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나. 2021년 2분기 감독기관 등 수검 현황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다. 2021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현황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라. 2019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마. 외부감사인인 2021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심의안건                         |          |     |     |      |
| 가. 2021년 상반기 준법감시인 활동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제정            | 특이사항 없음  |     |     | -    |

(차) 2021년도 제10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10월 8일(금) 10시 00분 ~ 10시 30분  
[소집통지일: 2021년 9월 30일(목)]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김명희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가. 자체정상화계획 적정성 내부감사 결과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카) 2021년도 제11차 정기 감사위원회: 2021년 11월 24일(수) 15시 10분 ~ 15시 40분  
[소집통지일: 2021년 11월 16일(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승한      | 김명희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가.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중간평가 결과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가결여부 |
|----|----------------------------------|----------|------|
|    | 나. 2021년 3분기 감사활동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다. 2021년 3분기 감독기관 등 수검 현황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라. 외부감사인인 2021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타) 2021년도 제12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12월 28일(화) 14시 30분 ~ 15시 00분  
[소집통지일: 2021년 12월 20일(월)]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승한      | 김명희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4. 보고안건                              |  |          |     |     |      |
| 가.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에 대한 부문감사 결과보고 |  | 특이사항 없음  |     |     | -    |
| 3. 결의안건                              |  |          |     |     |      |
| 가. 2021년 상임감사위원 성과 평가                |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2년 감사부 사업계획 및 감사계획 승인          |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파) 2021년도 제13차 임시 감사위원회: 2021년 12월 28일(화) 17시 30분 ~ 17시 40분  
[소집통지일: 2021년 12월 20일(월)]

| 항목                                |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윤승한      | 김명희 | 허창언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결의안건                           |  |          |     |     |      |
| 가. 제190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조사결과 |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3) 평가

당행은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개선할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매년초 전년도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㉞ 개최 빈도의 적정성
- ㉟ 회의 시간의 적정성
- ㊱ 안건의 범위와 깊이의 적정성
- ㊲ 은행으로부터의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㊳ 독립된 위치에서 은행 내부감사 및 통제시스템 관련 정책수립, 평가, 개선방안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과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본 평가 외에도 사외이사만의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라. 감사보조조직 등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회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sup>111</sup>, 내규에서도 같은 취지로 감사부 설치의 근거를 규정하고 상임감사위원이 통할하도록 하였습니다.<sup>112</sup>

또한 내규는 감사부에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감사역(감사위원회의 상임감사위원의 지시와 위임에 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을 적정 인원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1.12.31. 현재 감사부는 감사부장 1명과 감사역 109명(현장감사전담 전문계약직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역은 내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성적이 양호한 4급 이상 책임자로서 여신심사, 외환·국제금융, 자금 및 기타 해당업무 분야에 3년

<sup>111</sup>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제2항

<sup>112</sup> 「감사위원회규정」 제19조(감사보조기구),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 제11조(감사보조기구)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전문공인자격증 소지자<sup>113</sup> 등이 임명되었습니다.

감사역은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가집니다.<sup>114</sup>

감사부는 감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감사제도 연구 및 내부감사활동을 총괄하는 감사기획팀, 본부부서 및 영업점에 대한 내부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영업감사팀과 경영감사팀, 제재와 여신의 상각 및 매각을 담당하는 특별감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운영됩니다.

한편, 책임감사제 확립을 위하여 부서별 전담감사역을 지정하고, 부서 전담감사역은 담당 부서에 대한 상시감사활동, 업무현황 파악 및 정보수집, 현장감사 및 조치요구사항 사후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내부감사활동은 감사계획, 감사실시, 감사결과보고 및 사후관리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상임감사위원의 감사명령이 있는 경우, 감사역은 당해 감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등을 사전검토하여야 하며, 감사실시통보서를 피감사부서에 통보함으로써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상임감사위원에게 제출합니다.

상임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 및 관련 부서장에게 문책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조치결과를 확인하며, 주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다음은 2021년 중 상임감사위원 및 감사보조조직(감사부)이 감사위원회의 결의 및 심의사항에 대한 지원활동 및 내부감사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사항입니다.

| 일자        | 보고대상         | 보고 및 지원내용                 |
|-----------|--------------|---------------------------|
| 2021.2.4. | 감사위원회        | 2020년 4분기 감사활동결과 보고       |
|           | 감사위원회        | 2020년 4분기 감독기관 등 수검 현황 보고 |
|           | 감사위원회<br>이사회 | 2020년 연간 감사활동결과 보고        |
|           | 감사위원회        | 2020년 4분기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sup>113</sup>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 제11조(감사보조기구) 제2항: 공인회계사(CPA),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FRM), 공인내부감사사(CIA) 등

<sup>114</sup>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 제4조(권한과 의무), 제5조(독립의 원칙)

| 일자          | 보고대상           | 보고 및 지원내용                         |
|-------------|----------------|-----------------------------------|
|             | 감사위원회<br>금융감독원 | 2020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현황 보고        |
| 2021.2.24.  | 감사위원회          | 제189기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             | 감사위원회          | 2020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
|             | 감사위원회<br>이사회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
| 2021.3.24.  | 감사위원회          | 2020년 내부통제체계 평가                   |
|             | 감사위원회<br>이사회   | 2019년 종합검사 제재조치 결과보고              |
| 2021.3.24.  | 감사위원회          | 제189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조사결과        |
| 2021.4.1    | 감사위원회          | 제190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조사결과    |
| 2021.5.4.   | 감사위원회          | 2020년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평가       |
|             | 감사위원회          | 2020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             | 감사위원회          | 2021년 1분기 감사활동결과 보고               |
|             | 감사위원회          | 2021년 1분기 감독기관 등 수검 현황 보고         |
| 2021.5.20.  | 감사위원회<br>이사회   | 2020년 자금세탁방지체계의 이행수준과 효과에 대한 평가   |
| 2021.8.25.  | 감사위원회          | 2021년 2분기 감사활동결과 보고               |
|             | 감사위원회          | 2021년 2분기 감독기관 등 수검 현황 보고         |
|             | 감사위원회<br>금융감독원 | 2021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현황 보고        |
|             | 감사위원회          | 2019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보고             |
| 2021.10.8.  | 감사위원회          | 자체정상화계획 적정성 내부감사 결과보고             |
| 2021.11.24. | 감사위원회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중간평가 결과보고    |
|             | 감사위원회          | 2021년 3분기 감사활동결과 보고               |
|             | 감사위원회          | 2021년 3분기 감독기관 등 수검 현황 보고         |
| 2021.12.28. | 감사위원회          | 2021년 상임감사위원 성과 평가                |
|             | 감사위원회          | 2022년 감사부 사업계획 및 감사계획 승인          |
|             | 감사위원회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에 대한 부문감사 결과보고 |
| 2021.12.28. | 감사위원회          | 제190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조사결과    |

## 7. 위험관리위원회

### 가. 역할

#### 1) 총괄

당행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리스크관리 관련 의사결정권한을 위임받아 은행 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의 인식, 측정, 통제 등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위험관리위원회가 행한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부 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 리스크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 하부의 경영진 차원의 위원회로는 리스크정책위원회, ALM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책 수행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리스크정책위원회는 리스크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및 유형별 리스크와 관련된 각종 한도를 설정하고, ALM<sup>115</sup>위원회는 자산, 부채의 운용, 조달 및 유동성, 금리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기관리위원회는 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기구입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에는 관련 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당행의 리스크관리는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영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여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험관리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리스크에 대한

---

<sup>115</sup> ALM: 자산부채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오너십을 갖고 제반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리스크관리 철학을 정하고 조직 구성원이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는 사업그룹별 위험을 감안한 자기자본의 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리스크관리의 기본정책,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절차, 위험자본관리의 기본정책, 리스크 공시정책 등 리스크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상기의 리스크관리철학을 바탕으로 한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중 위험관리위원회는 2021년도 사업그룹별 위험자본을 배분하고, 2022년도 자본관리 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는 은행에서 부담가능한 리스크 총한도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리스크 유형별로 한도를 설정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중 위험관리위원회는 2022년 은행 리스크 총한도를 심의하고,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유형별리스크 한도를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에 관한 사항을 리스크정책 위원회에 위임하고 정기적으로 정책수행 결과 및 한도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리스크정책위원회는 리스크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및 유형별리스크와 관련된 각종 한도를 설정하는 기구로서, 위험관리위원회가 결의한 한도 범위 내의 유형별 세부한도와 조직별, 상품별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 별도로 외규에서 한도설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별 신용익스포저 최대한도 설정은 리스크정책위원회에 위임하지 않고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중 리스크정책위원회는 2021년도 시장리스크 부서별/ 데스크별/ 상품별로 리스크/투자/손실/민감도 한도, 업종/계열/ 개별기업 신용익스포저 최대한도, 사업그룹별 신용리스크 한도, 현지법인 리스크한도 등을 설정하여 한도대비 운용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위험관리위원회는 은행경영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 추구를 목적으로 제정된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2006.4.2 제정) 및 개정(2016.8.22 최종 개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규정은 리스크관리의 기본원칙, 리스크관리조직, 종합리스크관리, 개별리스크 관리 원칙, 자본배분 및 기타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리스크유형별 관리지침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마) 기타

이 밖에도 위험관리위원회는 리스크측정 방법론 및 측정요소의 중요 변경 사항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자금조달계획,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을 승인하고, 현지법인 관련 자본금 출자 및 증자, M&A, 이사회에서 결의할 지분참여 등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련 사항을 심의합니다. 또한, 은행의 리스크 관련 중요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나. 구성

####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합니다.

2021년도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2명의 사외이사와 금융회사에서 재직 중인 1명의 비상임이사를 이사회에서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6.7%로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구성원 및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1년 중 재임하였던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구성원

| 성 명 | 상임/사외/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
| 이성우 | 사외        | 위원장 | 2016.5.25 | 2021.3.24  |
| 인 호 | 사외        | 위원  | 2016.3.23 | 2021.3.24  |
| 노용훈 | 비상임       | 위원  | 2020.1.1  | 2021.12.31 |
| 김명희 | 사외        | 위원장 | 2021.3.24 | 2021.4.1   |
| 박원식 | 사외        | 위원  | 2021.3.24 | 2021.4.1   |
| 임상현 | 사외        | 위원장 | 2021.4.1  | 2022. 정기주총 |
| 서기석 | 사외        | 위원  | 2021.4.1  | 2022. 정기주총 |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21년 중 위험관리위원회는 정기 4회, 임시 6회로 총 10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68건이었으며 심의안건은 10건, 결의안건은 26건, 보고안건은 32건입니다. 또한 10건의 심의 안건 중 10건 통과 하였으며, 26건의 결의 안건 중 26건 가결되었습니다. 심의 및 결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대면 사전설명을 통해 안건의 내용이 숙지된 상태에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의 활동내역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 위원의 참석률은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며, 위원의 전문성 및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에는 위원들의 이름 및 논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포함한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2021년 중 위험관리위원회는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안), 원화채권 발행한도 설정(안),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리스크정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리스크정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한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안), 2022년 자본관리 계획(안), 채권 발행한도 설정(안), 2022년 은행 리스크 총한도 설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사업그룹별 위험자본배분(안), 2021년 국가 신용익스포저 최대한도 설정(안), 통합위기상황분석('20.12월 기준) 결과(안), 위기상황시 자본관리계획(안), 위기상황시 자금조달계획(안), 리스크관리그룹의 투자상품 관련 한도설정 기준 마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매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변경 적용(안), 비소매 SOHO 신용평가모형 등급계량화 변경(안), 비소매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변경 적용(안), 모형검증조직 독립성 강화(안),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리스크관리그룹 업무분장 변경(안), 2021년 유형별 리스크한도 변경(안), 2022년 최소유지 자기자본비율 및 최대성장 가능률 설정(안), 통합위기상황분석('21.6월 기준) 결과(안), 위기상황시 자본관리계획(안), 위기상황시 자금조달계획(안), 소매 신용대출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운영(안), 소매 SOHO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운영(안), 「쓸편한 생각대로 라이더 대출」 LGD 적용(안), 리스크관리그룹 업무분장 변경(안), 2022년 유형별 리스크한도 설정(안), 2022년 신용원가 및 대손분담금 반영비율 변경(안), 2022년 장외파생금융상품 리스크한도 설정(안), AIRS+ (기업전략모형) 개발 및 운영(안), 2022년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적용(안), 을 결의 하였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1년 임시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3월 5일(금) 10시 30분 ~ 11시 20분  
[소집통지일: 2021년 2월 25일(목)]

| 항 목 | 위원회 활동여부 | 가결여부 |
|-----|----------|------|
|-----|----------|------|

|                         |         |     |     |   |
|-------------------------|---------|-----|-----|---|
| 1. 위원 성명                | 이성우     | 인 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가. 비예금상품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 | 특이의견 없음 |     |     | - |

2021년 임시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는 3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보고안건 총 1건이 위험관리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보고-가. 비예금상품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 결과 보고

비예금상품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배경과 구성원 등의 운영현황, 2020년 주요 논의내역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나) 2021년 정기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3월 24일(수) 08시 00분 ~ 08시 30분  
[소집통지일: 2021년 3월 16일(화)]

| 항 목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이성우      | 인 호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가. 2020년 금융감독원 부문검사<br>(리스크실태평가)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정기보고사항                              | 특이의견 없음  |     |     | -    |
| 4. 심의·결의안건                             |          |     |     |      |
| 가.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나. 원화채권 발행한도 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다.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라. 2021년 사업그룹별 위험자본 배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2021년 국가 신용익스포저 최대한도<br>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 정기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는 3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심의안건 총 3건 및 결의안건 총 2건, 보고안건 총 2건이 위험관리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보고-가. 2020년 금융감독원 부문검사(리스크실태평가) 결과 보고

2020년 금융감독원 부문검사(리스크실태평가) 결과 관련 근거, 검사 개요, 검사 결과에 대해 상세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나. 정기보고사항

2020년 12월말 기준 규제자본 및 비율 현황, 자산건전성 관리 현황, 신상품 및 신규사업 리스크평가 보고(2020년 4분기), 리스크정책위원회 및 ALM위원회 정책수행 내역(2020년 4분기)을 상세 보고하였습니다.

심의-가.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안)

BIS자기자본비율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후순위채권 형태의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심의-나. 원화채권 발행한도 설정(안)

안정적인 장기자금 확보를 위해 원화 채권 발행한도를 10조원, 발행예정기간은 채권발행 일괄신고서 신고수리 후 1년 이내 설정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심의-다.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위험관리위원회 규정상 이사회로의 보고시기를 “정기 이사회”에서 “이사회”로 개정을 심의하였습니다.

결의-가. 2021년 사업그룹별 위험자본 배분(안)

자본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그룹별 위험자본을 배분, 위험조정성과 평가

지표(RAROC, RORWA) 설정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나. 2021년 국가 신용익스포저 최대한도 설정(안)

특정부문(국가별)에 신용익스포저가 편중되어 발생하는 신용리스크에 대비하여 국가별 위험관리 절차의 일환으로 2021년 국가 신용익스포저 최대한도 설정을 결의하였습니다.

(다) 2021년 임시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4월 22일(목)<sup>116</sup>

[소집통지일: 2021년 4월 21일(수)]<sup>117</sup>

| 항 목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가.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2020년 12월말 기준) | 특이의견 없음  |     |     | -    |

2021년도 임시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는 3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보고안건 총 1건이 위험관리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보고-가.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2020년 12월말 기준)

은행이 위기 시에도 정상 영업을 기반으로 고객가치 창출 및 경영목표 달성 등 따뜻한 금융 실행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무적 조건을 제시하고자 설정한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2020년 12월말 기준)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라) 2021년 정기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5월 4일(화) 10시 00분 ~ 10시 40분

<sup>116</sup> 2021년 임시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는 보고 단일안건으로, 서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sup>117</sup>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항, 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제5항, 신한은행 정관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4항 및 제44조(위원회) 제3항에 의거, 위원 전원으로부터 소집기간 단축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소집통지일: 2021년 4월 26일(월)]

| 항 목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가. 2020년 그룹 신용리스크 부문감사 결과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정기보고사항                                      | 특이의견 없음  |     |     | -    |
| 4. 심의·결의안건                                     |          |     |     |      |
| 가. 리스크정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나. 통합위기상황분석('20.12월 기준) 결과(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위기상황시 자본관리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위기상황시 자금조달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리스크관리그룹의 투자상품 관련 한도설정<br>기준 마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 정기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는 3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심의안건 총 1건, 결의안건 총 4건, 보고안건 총 2건이 위험관리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보고-가. 2020년 그룹 신용리스크 부문감사 결과보고

지주사 감사팀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그룹 신용리스크 부문감사의 목적, 기간, 범위, 조치요구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하였습니다.

심의-가. 리스크정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영업부문과 관리부문간 균형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의결권 제한조항 추가, 비대면 방식의 결의방법 추가에대해 심의하였습니다.

결의-가. 통합위기상황분석('20.12월 기준) 결과(안)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대한 당행 영향도 분석을 통해 잠재적 취약부문 진단 및 대응방안 도출을 위해 통합위기상황분석('20.12월 기준) 결과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나. 위기상황시 자본관리 계획(안)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제12호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자금조달계획”에 의거 위기상황시 자본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다. 위기상황시 자금조달 계획(안)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제12호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자금조달계획”에 의거 위기상황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라. 리스크관리그룹의 투자상품 관련 한도설정 기준 마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에 의거 위험관리책임자의 투자상품 한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하여 결의하였습니다.

(마) 2021년도 임시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5월 31일(월) 15시 00분 ~ 15시 40분  
[소집통지일: 2021년 5월 21일(금)]

| 항 목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가. Libor 산출중단 대응계획 이행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신용리스크 위기상황 상세분석 결과 보고<br>(’20년 12월말 기준) | 특이의견 없음  |     |     | -    |
| 4. 심의·결의안건                                 |          |     |     |      |
| 가. 소매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변경 적용(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비소매 SOHO 신용평가모형 등급계량화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항 목 |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 변경(안)                      |          |    |    |      |
|     | 다. 비소매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변경 적용(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라. 모형검증조직 독립성 강화(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 임시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는 3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4건, 보고사항 총 2건이 위험관리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 보고-가. Libor 산출중단 대응계획 이행현황 보고

Libor 산출중단 대응계획 이행현황 보고의 목적, Libor 산출중단 논의 진행경과, 구체적인 대응계획 이행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 보고하였습니다.

#### 보고-나. 신용리스크 위기상황 상세분석 결과 보고 ('20년 12월말 기준)

2020년 12월에 설정한 통합위기상황분석과 동일한 시나리오를 설정하며, 분석 대상 및 방법으로는 고객군별, 업종별, 거액 편중별,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나누어 분석한 상세 분석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결의-가. 소매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변경 적용(안)

비대면 신용대출 및 오토론 취급 증가에 따른 규제 PD 상한 초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PD 재추정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 결의-나. 비소매 SOHO 신용평가모형 등급계량화 변경(안)

비소매 일반기업모형 중 SOHO모형의 등급별 실측부도율이 예상부도율을 초과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SOHO 모형 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분리하는 등급계량화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 결의-다. 비소매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변경 적용(안)

비소매 SOHO 신용평가모형 등급계량화 변경에 따른 SOHO 등급별 부도율 개선결과를 반영한 SOHO 관리회계 PD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라. 모형검증조직 독립성 강화(안)

모형검증조직을 독립적인 부서로 승격시키며, 모형검증업무 外 부수적인 업무였던 정보품질관리 업무는 타부서인 디지털혁신단으로 이관을 결의하였습니다.

(바) 2021년 임시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7월 23일(금) 14시 20분 ~ 15시 00분  
[소집통지일: 2021년 7월 15일(목)]

| 항 목                                     |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가. 국외점포 출자금(갑기금 포함) FX포지션 관리현황<br>점검 보고 |  | 특이의견 없음  |     |     | -    |
| 4. 심의·결의안건                              |  |          |     |     |      |
| 가. 리스크정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나.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리스크관리그룹 업무분장 변경(안)                   |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2021년 유형별 리스크한도 변경(안)                |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 임시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는 3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심의안건 총 1건, 결의안건 총 3건, 보고안건 총 1건이 위험관리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보고-가. 국외점포 출자금(갑기금 포함) FX포지션 관리현황 점검 보고

국외점포 출자 및 증자(갑기금 포함) 시 FX포지션과 관련하여 글로벌 FX 시장환경, 환율변동성, 헤지비용, 자본에 대한 영향도를 감안한 FX포지션 관리현황 점검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심의-가. 리스크정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리스크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영업그룹장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리스크정책위원회 규정 개정에 결의하였습니다.

결의-가.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리스크관리그룹 내 리스크모형검증실이 부서로 신설됨에 따라, 리스크관리규정 제8조에 리스크모형검증실의 역할을 추가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나. 리스크관리그룹 업무분장 변경(안)

리스크모형검증실 신설과 행내외 ESG 리스크관리 강화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한 리스크관리그룹 내 부서별 업무분장 변경에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다. 2021년 유형별 리스크한도 변경(안)

장기금리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금리리스크가 급증하여 금리리스크 한도를 2,500억원 증액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와 규제승수 하향으로 시장리스크가 감소하여 시장리스크 한도는 2,500억원 감축하는 것에 결의하였습니다.

(사) 2021년 정기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8월 25일(수) 13시 30분 ~ 14시 10분  
[소집통지일: 2021년 8월 17일(화)]

| 항 목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가. 금융감독원 주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2020년 12월말 기준)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2021년 6월말 기준)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결과 및                  | 특이의견 없음  |     |     | -    |

| 항 목 |                                 | 위원회 활동여부 | 가결여부 |
|-----|---------------------------------|----------|------|
|     | 이행 보고                           |          |      |
|     | 라. 2021년 부도관리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마. 정기보고사항                       | 특이의견 없음  | -    |

2021년 정기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는 3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보고안건 총 5건이 위험관리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보고-가. 금융감독원 주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2020년 12월말 기준)

2020년 12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주관 스트레스테스트 분석 방법, 시나리오 설정, 분석결과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나.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2021년 6월말 기준)

은행이 위기 시에도 정상 영업을 기반으로 고객가치 창출 및 경영목표 달성 등 따뜻한 금융 실행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무적 조건을 제시하고자 설정한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2021년 6월말 기준)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결과 및 이행 보고

당행 내부등급법 변경 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승인과, 관련 모형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라. 2021년 부도관리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부도관리시스템에 대한 정기 검증 결과 '부도관리시스템 원장'과 '부도사유별 이력원장'이 전반적으로 일치하여 적합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아) 2021년 임시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10월 8일(금) 09시 30분 ~ 10시 30분  
[소집통지일: 2021년 9월 30일(목)]

| 항 목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가. Libor 산출중단 대응 외화 대체지표금리 선정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중도상환(안)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2021년 리스크한도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2021년 기업신용평가 결과분석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마. 2021년 신용RWA 산출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바. 2021년 운영리스크 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4. 심의·결의안건                            |          |     |     |      |
| 가. 신한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나.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다. 2022년 최소유지 자기자본비율 및 최대성장 가능률 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통합위기상황분석('21.6월 기준) 결과(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위기상황시 자본관리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바. 위기상황시 자금조달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사. 소매 신용대출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운영(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아. 소매SOHO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운영(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자. 「쓸편한 생각대로 라이더 대출」 LGD 적용(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차. 리스크관리그룹 업무분장 변경(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 임시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는 3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심의안건 총 2건, 결의안건 총 8건, 보고안건 총 6건이 위험관리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보고-가. Libor 산출중단 대응 외화 대체지표금리 선정 보고

USD/EUR/JPY/GBP/CHF Libor의 대체지표금리, 시행 예정일, 선정 배경 및 개요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나.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중도상환(안)

콜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중도상환 금액과 영향도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다. 2021년 리스크한도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리스크한도 설정 시점 대비 리스크 수준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요인이나 익스포저 등의 변동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필요시 사전적으로 리스크한도를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리스크한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고, 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라. 2021년 기업신용평가 결과분석 보고

2021년 기업신용평가 분석의 주요 결과로 2021년 평균 신용등급, 신용등급 상하향 변화, 비재무 가이드등급 활용 현황, 외감법인 경영성과 분석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마. 2021년 신용RWA 산출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RWA 산출시스템의 적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 향상 도모하고자 실시한 신용RWA 산출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바. 2021년 운영리스크 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시스템의 적합성 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2021년 운영리스크 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심의-가. 신한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핵심기능, 핵심사업, 지배구조, 발동지표 및 발동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Comuunication으로 구성되어 작성된 자체정상화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나.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안)

BIS 자기자본비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결의-가. 2022년 최소유지 자기자본비율 및 최대성장 가능률 설정(안)

차기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해 2022년 최소유지 자기자본비율 및 최대성장 가능률 설정(안)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나. 통합위기상황분석('21.6월 기준) 결과(안)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대한 당행 영향도 분석을 통해 잠재적 취약부문 진단 및 대응방안 도출을 위해 통합위기상황분석('21.6월 기준) 결과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다. 위기상황시 자본관리 계획(안)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제12호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자금조달계획”에 의거 위기상황시 자본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라. 위기상황시 자금조달 계획(안)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제12호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자금조달계획”에 의거 위기상황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마. 소매 신용대출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운영(안)

가계 신용대출의 비대면 유입고객 증가에 따른 비대면 특성 반영한 가계 신용대출 전략모형의 개발, 대안정보의 활용, 모형성능개선 결과에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바. 소매SOHO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운영(안)

「쓸편한 사업자대출」 출시 및 머신러닝 기반 「개인사업자 비대면 SOHO 신용평가모형」 이행 후 AS등급 대비 BS등급의 하락현상이 심화되어 대고객 금리의 안정적인 운영과 등급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강화하는 AI모형 개발에 결의하였습니다.

결의-사. 「쓸편한 생각대로 라이더 대출」 LGD 적용(안)

「쓸편한 생각대로 라이더 대출」의 재무회계(IFRS9)·관리회계·신용원가에 적용되는 LGD, 규제자본·재무회계(K-GAAP)·신용자본원가(내부자본관리)에 적용되는 LGD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결의-아. 리스크관리그룹 업무분장 변경(안)

“IB자산 리뷰 프로세스” 제도의 종료와 IB자산 감리 규정화에 따라 업무담당규정 제64조 3항 6호는 중복의 의미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2호는 내용을 변경하는것에 결의하였습니다.

(자) 2021년 정기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11월 24일(수) 15시 10분 ~ 15시 40분  
[소집통지일: 2021년 11월 16일(화)]

| 항 목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가. 가계대출 현황 및 관리 방안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 및 관리 방안 | 특이의견 없음  |     |     | -    |

| 항 목 |                                       | 위원회 활동여부 | 가결여부 |
|-----|---------------------------------------|----------|------|
|     | 다.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 특이의견 없음  | -    |
|     | 라. 2021년 비일반기업 신용평가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마. 2021년 통합위기상황분석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라. 정기보고사항                             | 특이의견 없음  | -    |

2021년도 정기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는 3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보고안건 총 6건이 위험관리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 보고-가. 가계대출 현황 및 관리 방안

올해 가계대출은 新바젤Ⅲ의 조기도입에 따른 자금공급비중과 적정성장전략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자산 성장을 하였으며, 연말 자금공급비중은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 보고-나.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 및 관리 방안

개인사업자 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에 따라 올해 9월말 기준 대출 성장률이 10.5%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량자산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우량비중, 담보비율, 연체율, 대손비용률 모두 기업대출전체 대비 양호하며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 보고-다.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2021년 유동성리스크 상세 관리전략 검토 결과, 2022년 유동성리스크 상세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 보고-라. 2021년 비일반기업 신용평가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 PD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모형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적합성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한 2021년 비일반기업 신용평가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마. 2021년 통합위기상황분석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효율적인 자본 관리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2021년 통합위기상황분석 정기 적합성검증을 실시하였고, 검증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차) 2021년 임시 제6차 위험관리위원회: 2021년 12월 28일(화) 13시 30분 ~ 14시 00분  
[소집통지일: 2021년 12월 20일(월)]

| 항 목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임상현      | 서기석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가. 2021년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나. 2021년 11월 유동성리스크 한도 미준수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다. 2021년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라. 2021년 ALM시스템(금리·유동성리스크)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마. 2021년 시장리스크 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바. 2021년 외환결제관련리스크 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     |     | -    |
| 4. 심의·결의안건                                |          |     |     |      |
| 가. 2022년 자본관리 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나. 채권 발행한도 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다. 2022년 은행 리스크 총한도 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통과   |
| 라. 2022년 유형별 리스크한도 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2022년 신용원가 및 대손분담금 반영비율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항 목 |                               | 위원회 활동여부 |    |    | 가결여부 |
|-----|-------------------------------|----------|----|----|------|
|     | 변경(안)                         |          |    |    |      |
|     | 바. 2022년 장외파생금융상품 리스크한도 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사. AIRS+ (기업전략모형) 개발 및 운영(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 아. 2022년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적용(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임시 제7차 위험관리위원회는 3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심의안건 총 3건, 결의안건 총 5건, 보고안건 총 6건이 위험관리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 보고-가. 2021년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2021년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요약, 리스크지배 구조, 가용자본과 내부자본 현황,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내역 및 위기사 자본관리계획,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자본계획, 모니터링 및 점검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 보고-나. 2021년 11월 유동성리스크 한도 미준수 보고

2021년 11월 통합 LCR의 내부한도 미준수로 인해 11월 유동성리스크량이 4,041억원으로 산출되어 한도인 4,000억원을 41억원 초과하였지만 12월 통합 LCR이 내부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보고-다. 2021년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신용평가시스템의 성능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규제기준 및 내부운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2021년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사후검증 결과 예측값 대비 실측값이 적정 수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보고-라. 2021년 ALM시스템(금리·유동성리스크)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DATA MART,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별로 검증한 항목 및 주요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마. 2021년 시장리스크 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데이터/시스템 관리, 시장리스크 측정, 통제구조/한도관리에 대하여 질적 및 양적 검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인 시장리스크 관리 체계는 적정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바. 2021년 외환결제관련리스크 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외환결제관련리스크 시스템의 3개 검증 대상 부문인 데이터 관리, 산출 로직, 통제 및 관리체계에 대해 질적 및 양적 검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인 외환결제관련리스크 관리 체계는 적정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심의-가. 2022년 자본관리 계획(안)

2022년 최소유지 자기자본비율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6.0%, 기본자본비율 14.0%, 보통주자본비율 12.5%로 하는 자본관리 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심의-나. 채권 발행한도 설정(안)

안정적인 장기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채 발행한도 설정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다. 2022년 은행 리스크 총한도 설정(안)

은행의 리스크를 가용자본 대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2년 은행리스크 총한도를 22조 4,700억원, 위험성향은 80.6% 설정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결의-가. 2022년 유형별 리스크한도 설정(안)

2022년 은행 리스크 총한도 설정에 따라 유형별 리스크한도(신용/시장/운영/금리/유동성/외환결제관련/신용편중/포트폴리오효과), 금리EaR 한도, 전년대비 주요 변동요인, 유형별 리스크한도 관리방안에 설명하고 유형별 리스크한도

설정을 결의하였습니다.

#### 결의-나. 2022년 신용원가 및 대손분담금 반영비율 변경(안)

2022년부터는 신용원가의 반영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변경하는 변경(안)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 결의-다. 2022년 장외파생금융상품 리스크한도 설정(안)

2022년 장외파생금융상품 리스크한도 설정을 위하여 신용/시장리스크 한도 산출내역을 설명하고, 총 한도 7,500억원, 신용리스크 한도 5,000억원, 시장리스크 한도 2,500억원으로 결의하였습니다.

#### 결의-라. AIRS+ (기업전략모형) 개발 및 운영(안)

'20년 6월 머신러닝 기반의 AIRS+모형의 이행 후 모형의 자동 최신화 및 기업CSS 활용을 위한 기업전략모형의 개발 및 운영(안)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 결의-마. 2022년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적용(안)

2022년 신용평가시스템 및 신용리스크 측정을 위한 측정요소에 대하여 규제자본은 금융감독원 승인 PD, LGD, CCF를 사용하고(미승인 경우 바젤표준법 사용), IFRS9 충당금 RC는 경기순환주기를 반영하기 위해 장기평균 관측치(최장10년)를 사용하며, 관리회계 RC는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5년치를 반영하는 원칙에 따라 측정요소 적용(안)을 결의하였습니다.

### 3) 평가

신한은행은 위험관리위원회가 법령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위험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2월초 전년도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위험관리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당행은 2021년 중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행정지도 등과 관련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1. 보수위원회

#### 가. 총괄

당행 보수위원회는 경영진, 본부장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가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어 건전하게 수립되어 운영되는지를 관리하며,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이사회 내 상설위원회로서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당행 정관<sup>118</sup> 및 이사회규정<sup>119</sup>에 설치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현재 위원장은 서기석 이사이며, 서기석 위원장과 더불어 이훈야 이사, 노용훈 이사(20.1.1 신규 선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보수위원회규정<sup>120</sup>에 의거하여 작성 및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 나. 구성

#####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수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

<sup>118</sup> 신한은행 정관 제44조(위원회) 제1항 제4호

<sup>119</sup> 신한은행 이사회규정 제13조(위원회) 제1항 제4호

<sup>120</sup> 신한은행 보수위원회규정 제9조(의사록)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당행의 보수위원회는 총3인(서기석 이사, 이혼야 이사, 노용훈 이사)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인(서기석 이사, 이혼야 이사)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서기석 이사가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수위원회규정<sup>121</sup>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가 1인 이상 참여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는 보수위원회 안건에 내재된 리스크 측면을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중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인 노용훈 이사가 보수위원회에 참여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 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수위원회규정<sup>122</sup>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위원회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와 이혼야 이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위원 재임기간이 각 22개월로 이를 충족합니다.

## 2) 구성원

### <2021년 정기주주총회일 이전>

| 서명  | 구분  | 직위  | 선임일/임기만료일            | 금융,회계,재무<br>분야 종사 경험 | 위험관리위원회<br>위원 여부 |
|-----|-----|-----|----------------------|----------------------|------------------|
| 서기석 | 사외  | 위원장 | 2020.3.25~2022.정기주총일 |                      |                  |
| 이혼야 | 사외  | 위원  | 2020.3.25~2022.정기주총일 |                      |                  |
| 노용훈 | 비상임 | 위원  | 2020.1.1~2021.12.31  | 해당                   | 해당               |

<sup>121</sup> 신한은행 보수위원회규정 제2조(구성) 제3항

<sup>122</sup> 신한은행 보수위원회규정 제3조(임기)

## <2021년 정기주주총회일 이후>

| 서명  | 구분  | 직위  | 선임일/임기만료일            | 금융,회계,재무<br>분야 종사 경험 | 위험관리위원회<br>위원 여부  |
|-----|-----|-----|----------------------|----------------------|-------------------|
| 서기석 | 사외  | 위원장 | 2020.3.25~2022.정기주총일 |                      | 해당 <sup>123</sup> |
| 이혼야 | 사외  | 위원  | 2020.3.25~2022.정기주총일 |                      |                   |
| 노용훈 | 비상임 | 위원  | 2020.1.1~2021.12.31  | 해당                   | 해당                |

### 3)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

당행의 위험관리 부서는 리스크총괄부와 리스크공학부이며, 준법감시 부서는 준법감시부와 자금세탁방지부입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 각각 36명, 45명, 48명(변호사 12명 포함),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총괄부의 경우 해당 업무 평균근속 연수는 3년 5개월, 리스크공학부의 경우 2년 9개월, 준법감시부의 경우 2년, 자금세탁방지부는 2년 2개월로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보유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 권한과 책임

### 1) 총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위원회 활동내역의 서류 보존 의무와 관련하여 보수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설치, 운영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의

<sup>123</sup> 2021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2021.4.1)에서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관리·감사활동내역을 서류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를 확정하고, 평가 및 보수안을 확정하며, 경영진 평가체계의 세부사항 등을 결의합니다. 또한 상무 호칭을 사용하는 전문계약인력,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를 결정하며, 변동보수를 받는 상무 호칭을 사용하는 전문계약인력,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영진, 본부장,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등을 결의합니다.

##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행 보수위원회는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를 확정하고,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수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sup>124</sup> 2021년 3월 4일 개최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2021년도 경영진 평가기준과 2020년도 겸직 경영진의 은행 평가결과를 확정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와 성과평가 및 보수안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결의하였습니다. 이어 2021년 3월 24일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2021년도 경영진 보수운영과 2020년 은행 경영진 평가결과를 확정하였으며, 경영진의 2020년도 업적평가등급에 연동된 단기성과급 지급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상무 호칭을 사용하는 전문계약인력,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를 결정합니다.<sup>125</sup>

2021년 3월 24일 개최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본부장에 대한 2021년도 보수운영 및 평가기준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본부장에 대한 2020년도 평가결과를 확정하였으며, 업적평가등급에 연동된 단기성과급 지급에 대하여도 제2차 보수위원회를 통하여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보수위원회를 통해 상무호칭을 사용하는 전문계약인력의 평가 및 보수기준, 그리고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지정 및

<sup>124</sup> 신한은행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결의사항 등) 제1항 제1호, 제2호

<sup>125</sup> 신한은행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결의사항 등) 제1항 제4호

운영을 확인하여 결의하였습니다.

###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경우 지배구조법에 따라 2017년부터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4일 개최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2020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심의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행 보수위원회는 2021년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행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라.1)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중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당행 보수위원회는 2021년 3월 4일 개최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실시한 전년도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시 보수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보수체계 관련 운용 전반에 대해 내규 및 법규의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행 보수위원회는 2021년 3월 4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외규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은행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외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국내: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
- 해외: 해당 없음

##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

당행은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에 지배구조법에서 정의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의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 3월 24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변동보상의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부행장, 상무 등을 포함한 임원<sup>126</sup> 과 본부장이 변동보수대상자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범주에 따라 2021년 12월말 기준 임원은 은행장 1명, 상임감사위원 1명, 부행장 21명, 상무 4명<sup>127</sup> 등 총 27명이며, 본부장은 총 48명 입니다.

당행은 이와 별도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과도한 위험을 추구를 방지하고, 우수성과 및 역량 보유 직원의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총 222<sup>128</sup>명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류               | 인원 수             | 직명                                         |
|------------------|------------------|--------------------------------------------|
| 임원 등             | 75               |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부행장, 상무, 본부장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222              | GIB, GMS, S&T센터 소속 직원 중 기획인력, 사무직원 등 일부 제외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18 <sup>주)</sup>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외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sup>126</sup> 등기임원 중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변동보수 대상자에서 제외

<sup>127</sup> 상무 호칭을 사용하는 전문계약인력 3명이 반영된 인원임

<sup>128</sup> 인사이동 등이 반영된 2021.12.31 기준 인원임

주) 잔여 이연지급 보유 대상자 중 타그룹 전출로 인해 본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은 46명 별도 (2018, 2019, 2020년 성과에 대한 이연분)

※ 해당연도 성과에 대해 익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 지급

##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1) 의사결정 절차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합니다.<sup>129</sup>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과정을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안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sup>130</sup>,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2) 활동내역 개요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며 경영진 등의 평가 및 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2021년도에는 총 3회의 보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위원회 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100%로, 위원 모두가 결의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제시 및 논의를 하였습니다.

2021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결의안건 15건, 보고안건 2건입니다. 결의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보고안건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 3) 회의 개최내역

---

<sup>129</sup> 신한은행 보수위원회규정 제5조(소집) 제1항

<sup>130</sup> 신한은행 보수위원회규정 제7조(결의방법) 제1항

(가) 2021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2021년 3월 4일(목) 09:00 ~09:30

[소집통지일: 2021년 2월 24일(수)]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서기석      | 이혼야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보고 안건 없음 |     |     |      |
| 4. 결의안건                      |          |     |     |      |
| 가. 2021년도 경영진 평가기준 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0년도 겸직경영진 은행 평가결과 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2020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2020년도 보수체계 설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는 이사 3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4건이 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경영진 평가기준과 2020년도 겸직 경영진의 은행 평가결과를 확정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와 성과평가 및 보수안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결의하였습니다.

(나) 2021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2021년 3월 24일(수) 08:30 ~09:00

[소집통지일: 2021년 3월 16일(화)]

| 항 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서기석                                | 이혼야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가. 2021년도 경영진 전략과제 및 사업그룹 KPI 평가기준 |     |     |      |

|                                        |    |    |    |    |
|----------------------------------------|----|----|----|----|
| 4. 결의안건                                |    |    |    |    |
| 가. 2021년도 경영진 보수 운영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2021년도 본부장 보수 운영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2021년도 은행 전략과제 세부기준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2021년도 본부장 업적평가 기준 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2020년도 경영진 및 본부장 평가결과 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바. 2020년도 경영진 및 본부장 단기성과급 지급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사. 장기성과급 성과지표 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아. 정관 및 중요규정의 개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지정 및 운영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차. 상무 호칭을 사용하는 전문계약인력 평가<br>및 보수 기준 확정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는 이사 3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제2차 보수위원회에는 결의안건 총 10건과 보고안건 총 1건이 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2021년도 경영진 및 본부장 보수운영을 확정하고, 2021년도 은행 전략과제 세부기준을 정하고, 2021년도 본부장 평가기준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도 경영진 및 본부장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단기성과급 지급을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성과급 성과지표, 정관 및 중요규정의 개정을 확인하고 금융투자업무담당자와 상무 호칭을 사용하는 전문계약인력의 보수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제1호 결의안 '2021년도 경영진 평가기준 확정' 중 “전행 경영계획 범위내 사업그룹 KPI 및 전략과제 수행 평가, 사업그룹 재무계획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은행장에게 위임함(차기 보수위원회 보고 예정)”에 의거 경영진 전략과제 및 사업그룹KPI 평가기준을 보고하였습니다.

(다) 2021년도 제3차 보수위원회: 2021년 8월 25일(수) 14:10 ~14:30

[소집통지일: 2021년 8월 17일(화)]

| 항 목                                      |  | 이사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 서기석      | 이혼야 | 노용훈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가. 2021년도 경영진 전략과제 및<br>사업그룹 KPI 평가기준 변경 |  | 특이 의견 없음 |     |     |      |
| 4. 결의안건                                  |  |          |     |     |      |
| 가.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장 평가기준 신설 및<br>변경          |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21년도 제3차 보수위원회는 이사 3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진행되었으며, 결의안건 총 1건과 보고안건 총 1건이 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본부장 평가기준 신설 및 변경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제1호 결의안 ‘2021년도 경영진 평가기준 확정’ 中 “전행 경영계획 범위내 사업그룹 KPI 및 전략과제 수행 평가, 사업그룹 재무계획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은행장에게 위임함(차기 보수위원회 보고 예정)”에 의거 경영진 전략과제 및 사업그룹 KPI 평가기준 변경을 보고하였습니다.

#### 4) 평가

당행은 보수위원회가 경영진 등의 평가보수체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개선할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매년초 전년도 보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개최 빈도의 적정성, 회의 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범위와 깊이의 적정성, 은행으로부터의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기 점검은 객관성과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은행은 본 평가 외에도 사외이사만의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보수체계

### 가. 주요사항

####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 방식

(가)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

경영진은 그룹KPI, 은행KPI, 담당그룹KPI, 담당업무 전략과제가 일정 비율로 업적평가에 반영<sup>131</sup>되며, 그룹/은행/담당업무의 재무적인 지표와 비재무적 평가요소가 모두 성과지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임감사위원/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CRO)/소비자보호책임자 등은 업무의 특성상 은행의 계량적 지표와 연계된 평가를 배제하고 담당업무 전략과제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은행 및 개인성과 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은행 재무성과, 담당그룹KPI와 비계량적인 전략과제 성과를 포함하여 업적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단기성과급 지급률이 변동됩니다. 이와 더불어 4년간의 은행 장기성과를 반영하여 장기성과급 금액 등이 산정됩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해당부서 등이 연간 창출한 재무성과의 달성율에 따라 일정비율(Profit Share Ratio)을 연동하여 지급하는 팀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합니다.

####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경영진 등에 대한 성과보수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성과급은 직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확정 후 즉시 지급하며,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

<sup>131</sup> 은행장에 대한 성과지표는 그룹KPI, 은행KPI, 은행 전략과제로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는 해당연도의 재무성과에 연동하여 60%를 일시 지급하고, 40%는 3년에 걸쳐 이연 지급합니다.

####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경영진 등의 성과보수 중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평균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수량이 결정되고, 지급시점의 주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당행 장기성과급 구조상 지급 이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장기보상 전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은행 등의 가치가 훼손되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보수금액이 이에 연동하여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영진이 단기성과급 지급시까지 신한은행 경영진 평가 및 보수규정에 명시한 환수 사유<sup>132</sup>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경영진의 단기성과급을 환수 할 수 있으며, 환수는 지급전 단기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수 여부의 결정 및 환수 금액의 산정은 보수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동 규정에 명시한 사유<sup>133</sup>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성과급의 지급을 유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신용위험 비용, 위험자본 비용, 직접비 및 간접비 등을 고려한 재무성과의 달성율에 따라 반납 또는 인센티브 지급의 구조로 지급됩니다.

당해년도 성과가 적자이거나 산출된 성과급이 (-)일 경우 당해년도 지급예정이었던 이연성과급부터 순차적으로 환수됩니다.

####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은행 경영진 등에 지급되는 장기성과급은 부여 당시 일정 수량의 주식연계상품 등이 부여되며, 4년 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주식수량이 변동되며, 최종 운영기간

---

<sup>132</sup> 신한은행 경영진 평가 및 보수규정 제12조 제1항, 제2항

<sup>133</sup> 신한은행 경영진 평가 및 보수규정 제12조 제3항, 제4항

종료시점의 주가에 따라 최종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운영기간이 종료되어야 이연 보수 최종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해당연도 재무성과에 연동하여 지급액이 확정되어 3년간 일정 비율로 이연되는 구조입니다.

###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 등의 고정보수는 기본급과 활동수당으로 구성되며, 변동보수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동보수의 각 규모는 기본급의 일정 배수<sup>134</sup>로 결정됩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기본급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이 외에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정기상여급 등을 재원으로 구성한 팀 인센티브 pool(Reserve)에 재무성과에 연동한 일정비율을 배분받는 식으로 변동보수가 구성됩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경영진 등의 변동보수 중 단기성과급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장기성과급은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변동보수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 등의 성과보수 중 단기성과급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장기성과급은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변동보수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의 비중은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CEO의 경우 직무의 특성 및 업무 책임

---

<sup>134</sup> 신한은행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합니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변동보수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의 비중을 60%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변동성과급 중 이연지급되는 장기성과급의 비중은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경우 5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변동보수 중 40%를 일정 기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 4)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수체계의 독립성

당행은 리스크총괄부 및 준법감시부 직원들의 업무성과 목표 설정 시, 은행의 계량적인 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일반 직원과 독립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부서 직원들의 경우, 업무성과 목표 설정 시 은행 KPI 등의 계량적인 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리스크관리그룹 전략과제 및 고유직무에 대한 달성도를 통해 독립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의 경우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그 이행활동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부서원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은행의 감사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도 은행의 계량적인 실적과 연동되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연초에 설정한 전략과제목표에 대한 평가를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CRO)의 경우에도 은행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되지 아니하는 성과보상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5)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행은 1999년부터 전직급을 대상으로 개인성과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개인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성과 연계 보수 강화 및 직원들의 주인의식 제고를 위하여 영업이익 중 일부를 재원으로 경영성과급 제도를 운영 중이며, 사업그룹 및 부서 성과의 달성 정도에 따라 현금 및 장기성과급(ESOP)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행은 2007년부터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합리적 보수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1년에 직무가치 등을 반영하여 부서장급 직무수당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6)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해지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임을 규정<sup>135</sup>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행은 보수위원회가 보상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의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결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2015년부터 내부 규정에 명시<sup>136</sup>하고 있습니다.

### 7)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행은 임직원들이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sup>137</sup>하고 있습니다.

---

<sup>135</sup> 신한은행 보수위원회규정 제8조(관계인의 출석, 관계자료 제출 및 외부자문) 제2항

<sup>136</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8조(보수위원회)

<sup>137</sup> 신한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9조(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등 금지)

## 8)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21년 중 보수체계는 전년도의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부행장-부행장보 직급을 통합하여 경영진의 기본급 수준을 조정하였고, 담당직무의 규모에 따라 활동수당 가산 기준 등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 9)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경영진 등에 대한 변동보상은 다양한 리스크 지표<sup>138</sup>를 포함한 은행의 성과에 연동하여 보수규모가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기보수는 4년간의 은행의 평균성과에 따라 최종 지급금액이 산정되며, 평가기간 중 한 해라도 성과가 부진할 경우 장기보수 전체의 지급금액이 축소되거나 지급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리스크 지표 등의 평가 결과는 연 단위로 산출되며, 경영진 등의 전체 평가 중에서 일정비율로 반영되어 성과급 산정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량지표 이외에도 전략과제 형태의 비계량지표가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경영진 등의 업적평가등급 산정시 반영되어 보수에도 연계됩니다.

해당 리스크 지표는 은행 전체의 다양한 리스크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

<sup>138</sup> 신한은행 성과평가시 다음의 리스크지표들을 적용합니다.

1. RORWA(Return On Risk-Weighted Asset): 위험가중자산 대비 수익률 (세전이익/위험가중자산)
2. RAROC(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경상이익 - 예상손실) / 위험자본)
3.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 / 총여신
4. 연체율: 연체대출금 / 총대출금

## 나. 보수 세부사항<sup>139</sup>

###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억원, 명)

| 구분              | 임직원<br>보수총액(A) <sup>주1)</sup>   |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sup>주2)</sup> |         | 임직원수<br>(C) | 임직원<br>평균보수(A/C) |
|-----------------|---------------------------------|-----------------------------|---------|-------------|------------------|
|                 |                                 |                             | 비율(A/B) |             |                  |
| 전년도<br>(2020년)  | 13,491                          | 30,769                      | 0.44    | 14,021      | 0.962            |
| 당해년도<br>(2021년) | 작성 중<br>(2022년 4월 15일 이내 공시 예정) |                             |         |             |                  |

주1) 해당년도 말 재직 임직원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해당 금액에는 2016년에 1개년분이 부여되어 회사의 과거 성과(2016년~2019년)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임원 및 본부장의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이 포함됨.

주2) 2020년 작성분: 연결기준의 (t-1)기의 금액을 기재 (예시: 당해연도가 2020년인 경우 2019년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억원)

| 구분              |       | 임원                              |        | 직원    |       |       |
|-----------------|-------|---------------------------------|--------|-------|-------|-------|
|                 |       | 등기 임원                           | 비등기 임원 | 관리자   | 책임자   | 행원 등  |
| 전년도<br>(2020년)  | 보수총액  | 22                              | 80     | 1,606 | 8,008 | 3,763 |
|                 | 성과보수액 | 5                               | 34     | 353   | 1,010 | 359   |
| 당해년도<br>(2021년) | 보수총액  | 작성 중<br>(2022년 4월 15일 이내 공시 예정) |        |       |       |       |
|                 | 성과보수액 |                                 |        |       |       |       |

##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sup>139</sup> 2021년 12월말 재직 기준입니다.

##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명, 억원)

| 구분              |           | 수급자수 <sup>주1)</sup>             | 기본급 <sup>주2)</sup> | 성과보수액   |    |
|-----------------|-----------|---------------------------------|--------------------|---------|----|
|                 |           |                                 |                    | 이연지급 대상 |    |
| 전년도<br>(2020년)  | 임원 등      | 78                              | 145                | 187     | 90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191                             | 175                | 104     | 41 |
| 당해년도<br>(2021년) | 임원 등      | 작성 중<br>(2022년 4월 15일 이내 공시 예정) |                    |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주1) 해당 년도 중 6개월이상 임원 등(임원,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           | 성과보수액                           |     |                   |                       |                   |
|-----------------|-----------|---------------------------------|-----|-------------------|-----------------------|-------------------|
|                 |           |                                 | 현금  | 주식 <sup>주1)</sup> | 주식연계상품 <sup>주2)</sup> | 기타 <sup>주3)</sup> |
| 전년도<br>(2020년)  | 임원 등      | 187                             | 97  | 90                | -                     |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104                             | 104 | -                 | -                     | -                 |
| 당해년도<br>(2021년) | 임원 등      | 작성 중<br>(2022년 4월 15일 이내 공시 예정) |     |                   |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주1) 주식: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 받아 산정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 주1)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 기타: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           | 이연보수액 <sup>주1)</sup>            |                     |       |
|-----------------|-----------|---------------------------------|---------------------|-------|
|                 |           |                                 | 지급확정 <sup>주2)</sup> | 지급미확정 |
| 전년도<br>(2020년)  | 임원 등      | 199                             | 10                  | 189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41                              | 41                  | -     |
| 당해년도<br>(2021년) | 임원 등      | 작성 중<br>(2022년 4월 15일 이내 공시 예정) |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주1) 이연보수액: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주2) 해당연도의 익년도에 1/4분기 중 성과가 확정되어 지급확정된 금액 명시(예: 2020년도의 경우 2021년도 1/4분기에 2017년 부여분에 대한 성과확정되어 지급)

※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하였으며, 2020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2021년 1/4분기 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2020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           | 이연보수액                           |    |     |        |    |
|-----------------|-----------|---------------------------------|----|-----|--------|----|
|                 |           |                                 | 현금 | 주식  | 주식연계상품 | 기타 |
| 전년도<br>(2020년)  | 임원 등      | 199                             | -  | 199 | -      |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41                              | 41 | -   | -      | -  |
| 당해년도<br>(2021년) | 임원 등      | 작성 중<br>(2022년 4월 15일 이내 공시 예정) |    |     |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억원)

| 구분              |           | 이연보수액                           |    |      |      |      |    |
|-----------------|-----------|---------------------------------|----|------|------|------|----|
|                 |           |                                 | t기 | t-1기 | t-2기 | t-3기 | 이전 |
| 전년도<br>(2020년)  | 임원 등      | 199                             | 90 | 71   | 28   | 10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41                              | 41 | -    | -    | -    | -  |
| 당해년도<br>(2021년) | 임원 등      | 작성 중<br>(2022년 4월 15일 이내 공시 예정) |    |      |      |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20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0년(t기) 발생분, 2019년(t-1기) 발생분, 2018년(t-2) 발생분 등으로 구분]

##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억원)

| 구분              |           | 이연보수액 축소액 <sup>주1)</sup>        |                          |                          | 직·간접적<br>조정에 노출된<br>금액 <sup>주4)</sup> |
|-----------------|-----------|---------------------------------|--------------------------|--------------------------|---------------------------------------|
|                 |           |                                 | 직접적<br>조정 <sup>주2)</sup> | 간접적<br>조정 <sup>주3)</sup> |                                       |
| 전년도<br>(2020년)  | 임원 등      | -                               | -                        | △7                       | 189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 -                                     |
| 당해년도<br>(2021년) | 임원 등      | 작성 중<br>(2022년 4월 15일 이내 공시 예정) |                          |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증가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명, 억원)

| 구분              |           | 수급자수                            | 퇴직보수액 | 1인기준 최고 지급액 |
|-----------------|-----------|---------------------------------|-------|-------------|
| 전년도<br>(2020년)  | 임원 등      | 0                               | 0     | 0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1                               | 3.2   | 3.2         |
| 당해년도<br>(2021년) | 임원 등      | 작성 중<br>(2022년 4월 15일 이내 공시 예정) |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 8)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명, 억원)

| 구분              |           | 수급자수                            | 보장성 상여금 | 1인기준 최고 지급액 |
|-----------------|-----------|---------------------------------|---------|-------------|
| 전년도<br>(2020년)  | 임원 등      | 0                               | 0       | 0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0                               | 0       | 0           |
| 당해년도<br>(2021년) | 임원 등      | 작성 중<br>(2022년 4월 15일 이내 공시 예정) |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성의 보장상여는 보장성 상여금에서 제외(이하 동일)

주) 기존 고용자: 당해 회계연도 이전부터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게 해당된 자를 기재

## 9)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명, 억원)

| 구분              |           | 수급자수                            | 보장성 상여금 | 1인기준 최고 지급액 |
|-----------------|-----------|---------------------------------|---------|-------------|
| 전년도<br>(2020년)  | 임원 등      | 0                               | 0       | 0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0                               | 0       | 0           |
| 당해년도<br>(2021년) | 임원 등      | 작성 중<br>(2022년 4월 15일 이내 공시 예정) |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주) 신규 고용자: 당해 회계연도중에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된 자를 기재

## 10) 일회성 인센티브 지급 건수 및 금액

(단위: 명, 억원)

| 구분              |           | 수급자수                            | 일회성 인센티브 | 1인기준 최고 지급액 |
|-----------------|-----------|---------------------------------|----------|-------------|
| 전년도<br>(2020년)  | 임원 등      | 2                               | 1.7      | 1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0                               | 0        | 0           |
| 당해년도<br>(2021년) | 임원 등      | 작성 중<br>(2022년 4월 15일 이내 공시 예정) |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주) 기업이 신규인력 채용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상(Sign-on awards)

### [첨부]

- 첨부 1. 신한은행 정관
- 첨부 2. 이사회 규정
- 첨부 3. 감사위원회 규정
- 첨부 4.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 첨부 5. 보수위원회 규정
- 첨부 6.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 7.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 8.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 신한은행 정관

2006. 4. 1. 제정<sup>140</sup>  
2007. 3.17. 개정  
2009. 3. 17. 개정  
2010. 3. 24. 개정  
2011. 3.22.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3. 27. 개정  
2014. 1. 1. 개정  
2015. 3. 18. 개정  
2016. 3. 23. 개정  
2016. 8. 1. 개정  
2016. 8. 22. 개정  
2017. 3. 22. 개정  
2018. 2. 22. 개정  
2018. 11. 1. 개정  
2018. 12. 27. 개정  
2019. 9. 16. 개정  
2019. 12. 27. 개정  
2020. 6. 25. 개정  
2021.03.24.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은행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hinhan Bank라 표기한다.<개정 2019.12.27.>

**제2조(목적)** ① 은행은 다음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7.>

1.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

---

<sup>140</sup> 시행일 기준, 이하 동일

2.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업무

3.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4. 내국환·외국환업무

② 은행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③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개정 2019.12.27.>

② 은행은 국내외에 지점·사무소·대리점 및 기타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4조(공고방법)** 은행이 공고할 때에는 한국경제신문 및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문서에 의한다.<개정 2019.12.27.>

##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0주로 한다.<개정 2019.12.27.>

**제6조(일주의 금액)** 은행의 일주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개정 2019.12.27.>

**제7조(발행할 주식의 종류)** ① 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발행 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개정 2019.12.27.>

② 은행의 주권은 일주권·오주권·일십주권·오십주권·일백주권·오백주권·일천주권·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개정 2019.12.27.>

③ 은행은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8조(우선주식의 종류)** ① 은행이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 범위 내로 한다.<개정 2019.12.27.>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에 주주총회에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개정 2012.04.15.>

③ 은행이 발행할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은행이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개정 2019.12.27.>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한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전환주식)** ① 은행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과 동수로 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은행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9.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모증자를 위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신주식의 배정방법 및 발행사항은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주주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04.15., 2016.08.01.>

**제11조(신주발행의 한도)** 은행이 제10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6.08.01., 2019.12.27.>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은행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27.>

**제13조(주식의 명의개서)** ①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1. 양도의 경우에는 그 주권
2. 상속·유증 또는 재판의 집행 및 회사의 합병·기타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

② 은행은 증권의 전자등록 및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의 일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09.16., 2019.12.27.>

**제14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①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및 신탁 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 또는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② 전질이나 질권이전의 등록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전항에 준한다.

**제15조(주주명부의 기재)** 제13조, 제14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은행은 이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주권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청구자에게 환부한다.<개정 2019.12.27.>

**제16조(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은행 소정의 청구서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② 주권을 오손 또는 훼손한 때, 주권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은행 소정의 청구서에 그 주권을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주권의 진위를 감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12.27.>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은행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개정 2019.12.27.>

② 은행은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개정 2019.12.27.>

③ 은행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은행은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제18조(주주 등의 성명, 주소 및 인감 등의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3장 사채

**제19조(사채의 발행)** ① 은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0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9.09.16.>

[본조신설 2012.04.15.]

**제19조의2(사채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은행은 제3장에서 규정하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본조신설 2019.09.16.]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은행은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

국인 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은행은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 국인 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 의로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 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 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22조(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① 은행은 사채의 액면총액이 10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한 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한다)을 이 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②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

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된다.<개정 2019.12.27.>

1. 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 ③ 은행의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내용 및 조건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본조신설 2015.03.18.]

##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시기)** ① 은행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개정 2019.12.27.>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말일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제24조(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은행장이 이를 행하며, 은행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의장)** ① 주주총회 의장은 은행장으로 한다.

② 은행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제28조(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

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하여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그 사본은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 이사회

**제32조(이사의 수)** ① 은행의 이사는 5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11.12.27., 2016.08.01., 2019.12.27.>

② 삭제<2016.08.01.>

**제33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개정 2012.03.27., 2014.01.01., 2017.03.22.>

1. 사외이사 :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 (연속하여 6년 초과 재임 불가, 당행 또는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초과 재임 불가)
2. 상임감사위원인 이사: 3년 이내
3. 제1호 내지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이사: 3년 이내

② 제1항의 임기는 필요시 그 임기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08.01.>

**제35조(사외이사의 자격기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개정 2015.03.18., 2016.08.01.>

1.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은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5. 삭제<2015.03.18.>

6. 삭제<2015.03.18.>

7. 삭제<2015.03.18.>

8. 삭제<2015.03.18.>

② 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는 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개정 2015.03.18.>

1. 삭제<2015.03.18.>

2. 삭제<2015.03.18.>

3. 삭제<2015.03.18.>

③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신설 2015.03.18., 2016.08.01.>

**제36조(결원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7조(은행장)** ① 은행은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의 결의로 은행장 1인을 선임한다.<개정 2016.08.01., 2019.12.27., 2020.06.25.>

② 은행장은 은행을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은행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한다.<개정 2019.12.27.>

③ 은행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03.18.>

**제38조(경영진)** ① 은행은 은행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1.12.27., 2019.12.27.>

② 은행장 외의 경영진은 지주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경영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12.27., 2016.08.01., 2016.08.22., 2018.02.22., 2018.12.27., 2020.06.25.>

**제39조(이사의 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은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②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은행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2.27.>

③ 이사는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④ 이사는 이사로서의 의무위반으로 은행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40조(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은행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개정 2019.12.27.>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며 은행장은 경영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은 이를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의 소집은 회일 7일전에 소집목적 기재한 통지서를 각 이사에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이사회 결의 등)**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와 직접, 간접으로 이해관계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단체에 대한 거래가 이사회에 상정된 때에는 당해 이사는 그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밝혀야 하며 당해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가 행하는 심의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04.15.>

④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신설 2016.08.01.>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제43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8.>

**제44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8.01., 2017.03.22.>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삭제<2016.08.01.>

②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위원회에서 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며 제40조제4항,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3.18.>

**제45조(이사회 권한위임)** 상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은 은행장에게 위임한다.

**제46조(이사 또는 경영진에 대한 비용 보상)** 은행은 이사 또는 경영진이 은행을 대표하여 소송, 제소, 변론의 당사자가 되어 은행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분담금, 경비, 손실, 채무에 대하여 상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은행이 이를 보상한다. 그러나 이사 또는 경영진의 직무수행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제46조의2(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구체적인 이사의 보수 지급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신설 2021.03.24.>

## 제6장 감사위원회

**제47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상임감사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12.03.27., 2014.01.01.>

②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신설 2015.03.18.>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정한 요건에 합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3.18.>

**제48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은행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설 2012. 4.15><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2. 4.15<신설 2012.04.15.>

⑤ 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2.04.15.>

⑥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아니하거나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개정 2018.11.01.>

⑧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4.15., 2018.11.01.>

⑨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신설 2018.11.01.>

**제49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회계 및 재무 또는 관련업무 전문가 이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 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감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임감사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는다. 다만, 당행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임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신설 2014.01.01.>
1. 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서 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
  2. 당행의 대주주(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3. 당행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
  4. 당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5. 당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6. 당행의 자회사 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 등을 말한다), 당행의 자은행, 당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금융지주회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등을 말한다)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 제7장 계산

**제51조(회계기간 및 결산)** ① 은행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12.27.>

② 은행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4.15.>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은행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 각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신설 2012.04.15.>

④ 감사위원회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은행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와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04.15.>

⑥ 은행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4.15.>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보고)** 은행은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개정 2018.11.01., 2019.12.27.>

**제53조(이익금의 처분)** 은행은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의결로써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1. 법정준비금 :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
2. 주주배당금
3. 배당평균적립금
4. 임원상여금
5. 퇴직위로금
6. 기타적립금
7. 후기이월금

**제54조(주주 배당금)**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매회계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55조(중간배당)** ① 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단,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개정 2019.12.27.>

② 은행이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날을 정한 때에는 그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2.04.15.>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 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 등)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 4. 1부터 시행한다.
2. (사외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제3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정관 시행 이후 최초로 임기가 개시되는 사외이사의 임기는 그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1년으로 할 수 있다.
3. (상임감사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제3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정관 시행 이후 최초로 임기가 개시되는 상임감사위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1년으로 할 수 있다.

####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7. 3. 19부터 시행한다.
2. (이사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정관 시행 이후 최초로 중임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1년으로 할 수 있다.

#### 부칙

이 정관은 2009. 3.17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0. 3.24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1. 3.22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2조, 제46조, 제49조는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 이 정관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이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이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이 정관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이 정관은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이 정관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이 정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이 정관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이 정관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이 정관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이 정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이사회규정

2006. 4. 1. 제정<sup>141</sup>

2007. 3. 5. 개정

2008. 4. 21. 개정

2009. 2. 26. 개정

2009.12.21. 개정

20210. 3. 24. 개정

2010. 5. 31. 개정

2010. 7. 22. 개정

2010. 12. 30. 개정

2011. 5. 17.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3. 27. 개정

2014. 1. 1. 개정

2015. 2. 26. 개정

2015. 11. 25. 개정

2016. 8. 1. 개정

2016. 8. 22.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 2. 22. 개정

2018. 12. 27. 개정

2020. 2. 26. 개정

2021.11.0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8.01.>

---

<sup>141</sup> 시행일 기준, 이하 동일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영진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영진이라 함은 은행장과 이사회를 얻어 은행장이 선임한 자로서 은행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12.27.>

**제4조(구성)** 이사회는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15.02.26., 2016.08.01.>

**제5조(이사회역할)** ① 이사회는 은행의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시,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내부통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5., 2016.08.01., 2016.08.22., 2018.02.22.>

③ 이사회는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 등'이라 한다)를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감독하고,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 결과에 대해 검토 및 승인(보고 포함) 한다.<신설 2018.02.22.>

④ 이사회는 은행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자본을 보유하고, 은행 스스로 리스크를 모니터링, 관리함에 있어 보다 우수한 리스크관리기법을 개발·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사의 권한 및 의무)** ① 이사는 주주 이익의 보호 및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은행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이사회 등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법률 회계 경영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은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은행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이사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

에 따라 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사와 이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2.26.>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④ 은행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사실을 이사회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

**제8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른 이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02.26.>

**제10조(결의사항 등)** ① 이사회에 제출할 사항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12.27., 2012.03.27., 2014.01.01., 2015.02.26., 2015.11.25., 2016.08.01., 2016.08.22., 2017.12.29., 2018.02.22., 2018.12.27., 2020.02.26.>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나.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중요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가. 은행 정관

나. 이사회규정, 이사회내 위원회규정, 지배구조 내부규범

다. 경영진운영규정, 경영진평가및보수규정, PU운영규정, PS운영규정, 경영진 퇴직위로금 규정

라. 내부통제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마.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바. 고문 운영규정

3.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마. 조직·인사·급여에 관한 기본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들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단,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선임 및 해임은 제외)

나. 은행장 외의 경영진, 경영진급 국외 현지법인장,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 고문의 위촉 및 해지에 관한 사항(단, 해지의 경우 기간만료 또는 타인의 상근임원이 되거나 타인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자동 해지되는 경우 제외)

라.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 이사 보수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마. 사외이사 및 이사회등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사. 은행장 직무대행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이사 등과 은행 간의 거래 승인에 관한 사항

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경우

(1) 이사 또는 상법 제 542조의 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 주주

(2) 제1단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단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단부터 제3단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단부터 제3단까지의 자가 제4단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진 회사

6. 은행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제도 기본 체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

가. 1건당 500억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동·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나. 1건당 200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다. 건당 자기자본 (직전 회계연도말 또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 중 최근의 은행법상 자기자본기준, 이하 같음)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을 신규 출자하는 경우 (추가 출자시 기존출자액과의 합산 기준)

라. 지주회사 기준 (증)손자회사 및 그 이하의 회사에 해당하는 은행의 (손)자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사항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의 (손)자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의 경우는 보고서항으로 같음 할 수 있음)

마. 기타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재산의 차입, 용역계약이외의 계약, 소송에 관한 사항(은행장 이하 각 전결권자의 직무전결사항으로 운영되는 자금 차입 등은 제외)

바. 외국금융기관 등과의 포괄적 업무제휴, 자본의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사. 나목 또는 마목에도 불구하고 정례적인 계약은 중요한 계약에서 제외한다.

9.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의 수립 및 조정

나. 자본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다. 은행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총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라. 위험관리위원회 부의대상 안건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여신에 관한 중요사항

가. 여신정책방향의 결정

나.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거액여신 대상기업군에 대하여 취급한 거액여신 총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한 경우의 해당 거액여신 대상기업군 소속업체에 대한 신규 (증대포함) 여신

11.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감독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다. 소유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라. 주주총회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마. 이사회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바. 기타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삭제<2016.08.01.>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8.22.>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종합적인 경영성과 및 분석(사업계획 추진실적 포함)
3. 사업그룹 별 주요 재무현황
4. 분기 별 점포변동 현황
5.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6.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7. 기타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결의사항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03.27., 2015.11.25., 2016.08.01.>

②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이사의 의결권 수는 출석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8.01.>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02.26.>

**제12조(관계인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08.01., 2021.11.08.>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삭제<2016.08.01.>

②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 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외이사만의 회의)**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의 통일된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사외이사만의 회의의 개최를 소집 및 주재하며 회의결과를 경영진에게 제시할 수 있다. 단,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 선임사외이사가 동 역할을 수행한다.

**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① 이사회자료를 회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소집권자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 인사 등 비밀의 유지가 중요한 사항의 경우

②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 회계, 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26.]

**제16조(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17조(보수 등)** 이사회의 이사 중 경영진이 아닌 이사에 대하여는 그 책임과 활동의 정도에 따른 보수(수당을 포함한다)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 자료수집비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삭제**<2016.08.01.>

부칙

이 규정은 2006.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 3. 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 4.2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 2.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 12.2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 3.24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 5.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 7.2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 12.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 5.1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2항 제5호, 제11조 제1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감사위원회규정

2006. 4. 1. 제정<sup>142</sup>  
2010. 5. 31. 개정  
2012. 3. 27. 개정  
2013. 2. 27. 개정  
2013. 3. 27. 개정  
2013. 6. 27. 개정  
2014. 1. 1. 개정  
2014. 3. 25. 개정  
2015. 2. 26. 개정  
2016. 4. 11. 개정  
2016. 8. 1. 개정  
2017. 3. 22. 개정  
2018. 11 1. 개정  
2018. 12. 28. 개정  
2020. 12. 24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등(「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개정 2017.03.22.>

---

<sup>142</sup> 시행일 기준, 이하 동일

**제3조(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6.04.11., 2017.03.22., 2018.11.01., 2020.12.24.>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3.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4. 내부감사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5. 외부감사인 선정 및 외부감사인 해임 요청
6.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7.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8.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9.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①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2.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은행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은행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개정 2016.04.11.>
- ④ 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04.11.>

1. 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법령 및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04.11.>

## 제2장 구성

**제7조(선임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상임감사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개정 2016.04.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되 위원 중 1인 이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개정 2017.03.22., 2018.11.01.>

③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17.03.22.>

## 제3장 회의

**제8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종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결의사항 등)** ①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01., 2018.12.28.>

1.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4. 임시 이사회 소집청구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7. 내부감사관련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8. 내부감사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9. 외부감사인 선정 및 외부감사인 해임 요청
10.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11. 상임감사위원 평가목표설정 및 평가
12.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승인
13. 관련법령, 정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1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내부통제시스템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2.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4. 내부통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7.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9.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은행이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
10. 관련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1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12. 자금세탁방지체계의 이행수준과 효과에 대한 평가
1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04.11., 2016.08.01.>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부감사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

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결권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8.01.>

#### 제4장 의사록, 권한의 위임 및 보고

**제13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 소관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하며, 상임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3.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위임한 상임감사위원의 직무와 감사보조기구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권한 대행)** ① 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상임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 상임감사위원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부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16조(이사회보고)**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이사회 부의 사항과 검토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4.11.>

④ 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3.22.>

⑤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 사업연도마다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대면 보고한다.<신설 2018.12.28., 2020.12.24.>

⑥ 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이행수준과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매 사업연

도마다 이사회에 보고한다.<신설 2020.12.24.>

## 제5장 보칙

**제17조(위원회에 대한 보고)** 상임감사위원은 제14조에 의해 위임 받은 사항 이외에 중요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4.11.>

**제18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은행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은행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은행에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18.11.01.>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 및 은행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1.01.>

⑤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11.01.>

**제18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정)** ① 위원회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은행은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은행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정하고,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외부감사인 선정 시 정한 사항들이 준수되었는지 평가하여 문서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제18조의3(외부감사인의 해임 요청)** 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외부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외부감사인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해임 요청된 외부감사인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임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외부감사인 해임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④ 은행이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은행은 외부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제19조(감사보조기구)**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 단위의 감사보조기구를 둔다.

② 감사보조기구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원과 적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 활동의 보고 등)** 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2. 감사 결과 및 그 조치내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업무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03.22.]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위험관리위원회규정

2006. 4. 1. 제정<sup>143</sup>  
2010. 3. 24. 개정  
2013. 3. 27. 개정  
2014. 1. 1. 개정  
2014. 5. 30. 개정  
2015. 2. 26. 개정  
2016. 8. 1. 개정  
2016. 8. 22. 개정  
2021. 3. 2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26.>

**제2조(역할)**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5.02.26.>

1. 은행이 직면하는 제반 리스크의 인식, 측정, 통제 등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2. 상기 1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하부 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개정 2015.02.26.>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신설 2015.02.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사외이사인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신설 2016.08.01.>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관부서는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로 한다.

---

<sup>143</sup> 시행일 기준, 이하 동일

**제4조(소집)** ① 정기 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15.0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02.26.>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02.26.>

**제5조(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위험관리위원회가 결의한 한도 범위내에서의 각종 세부 한도 설정은 하부 위원회에 위임한다.<개정 2014.01.01., 2014.05.30., 2015.02.26., 2016.08.01., 2016.08.22.>

1. 사업그룹별 위험을 감안한 자기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
2. 리스크 유형별 한도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4.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유형별 리스크측정 방법론의 중요 변경 사항
7. 신용평가시스템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추정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사항
8. 시장리스크 측정관련 금융위원회 등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사항
9. 운영리스크 측정관련 금융위원회 등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사항
10. 금리 및 유동성 리스크 측정요소 관련 중요 변경 사항
11.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결과
12.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자금조달계획
1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14. 은행장이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15.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01.01., 2015.02.26., 2016.08.22.>

1. 리스크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및 조정
  - 가. 리스크관리 기본 정책
  - 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절차

- 다. (위험)자본관리 기본정책
- 라. 리스크 공시정책
- 마.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2. 은행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총한도 설정
- 3. 현지법인 관련 자본금 출자 및 증자, M&A, 이사회에서 결의할 지분참여 등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련 사항 (단, 추가 출자시에는 기존출자액과의 합산기준으로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승인
- 5. 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 6.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보고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01.01., 2015.02.26., 2016.08.22.>

- 1. 위원회가 설정한 각종 리스크 한도 대비 운용현황
- 2. 각 부문별 리스크 량 대비 성과분석
- 3. 신상품 또는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현황 분석
- 4.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적립에 관한 사항
- 5. 거래신용공여총액한도 및 신용 익스포저 최대한도(Exposure Limit) 관리현황
- 6. 업종별, 국가별 신용 익스포저 한도 대비 운용현황
- 7. 위험자본 관리 현황
- 8. 각종 리스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 9. 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 10. 위험관리위원회의 지시사항 및 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선행 및 추인)** 제5조의 결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행(선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에 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2.26.>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5.02.26.>

**제10조(보고)** 위원회는 위원회가 행한 주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3.24.>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련 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6.>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 소관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5.02.26.>

**부칙**

이 규정은 2006.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 3.24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 3.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보수위원회 규정

2010. 3. 24. 제정<sup>144</sup>

2011. 3. 7. 개정

2013. 2. 27. 개정

2013. 3. 27. 개정

2015. 2. 26. 개정

2016. 8. 1. 개정

2016. 11. 1. 개정

2017. 3. 22. 개정

2018. 2. 22. 개정

2018. 12. 2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영진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의 평가보수체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26., 2016.08.01., 2017.03.22.>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한다.<개정 2015.02.26.>

②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신설 2015.02.26.>

③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가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15.02.26.>

**제3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위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3.03.27.>

---

<sup>144</sup> 시행일 기준, 이하 동일

②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02.26.>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개정 2013.02.27., 2015.02.26., 2016.08.01., 2016.11.01., 2017.03.22., 2018.02.22., 2018.12.27.>

1. 경영진의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경영진의 평가 및 보수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경영진급 국외 현지법인장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의 수립, 평가 및 보수안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5.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안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7. 경영진, 본부장,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은행의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9. 은행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대상자의 결정
10.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삭제<2018.12.27.>
12. 삭제<2018.12.27.>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02.26., 2016.08.01.>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결권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8.01.>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5.02.26.>

**제8조(관계인의 출석, 관계자료 제출 및 외부자문)**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9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6.>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 소관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5.02.26.>

**제10조(서류 보존)** 위원회의 설치, 운영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의 관리·감시활동내역을 서 류로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6.>

[전문개정 2013.02.27.]

**제11조삭제**<2016.08.01.>

**부칙**

이 규정은 2010. 3.24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 3. 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6. 8. 1. 제정<sup>145</sup>

2017. 11. 22 개정

2019. 4.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개정 2019.04.01.>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은행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가.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 나.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다.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sup>145</sup> 시행일 기준, 이하 동일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② 은행은 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기타 은행장이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제2호 다목의 후보군 관리내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은행장 후보 추천)** ① 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은행장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3조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개정 2017.11.22.>

②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은행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은행장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명단과 약력

3. 은행장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은행장 후보 추천 이유

6. 은행장 후보의 경력

7. 기타 은행장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사외이사 후보 추천)** ① 위원회는 은행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③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은행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은행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은행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였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와 은행 등(지주회사 및 계열회사 포함),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내규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의 경력
  8.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⑦ 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임원선임일 이후 매년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후보 추천)** 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제9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자신이 후보가 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결권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결권 수는 재적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은행장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은행장의 의결권 수는 재적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지배구조 내부규범

2011. 5. 17. 제정<sup>146</sup>

2011. 8. 31.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3. 27. 개정

2013. 3. 27. 개정

2014. 1. 1. 개정

2015. 2. 26. 개정

2015. 11. 25. 개정

2016. 1. 1. 개정

2016. 8. 1. 개정

2016. 8. 22. 개정

2016. 11. 1. 개정

2017. 2. 24. 개정

2017. 3. 22. 개정

2018. 2. 22. 개정

2018. 11. 1. 개정

2018. 12. 27. 개정

2019. 3. 26. 개정

2020. 2. 26. 개정

2020. 6. 25. 개정

2020. 11. 26. 개정

2021. 09. 24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은행의 지배구조에

---

<sup>146</sup> 시행일 기준, 이하 동일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행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8.01.>

**제2조(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08.01., 2016.08.22., 2017.03.22.>

1.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대표이사·회장·은행장·사장·부사장·부사장보·부행장·부행장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은행 및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사회등”이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동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5. “경영진”이란 임원 중에서 다음 각 목에 기재된 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1.26.>
  - 가. 사외이사
  - 나. 비상임이사
  - 다. 상임감사위원
  - 라. 상무 호칭을 사용하는 전문계약인력
6.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수위원회가 의결 대상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7. “성과보수”란 성과에 연동(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8.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란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9.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란 제64조 제2항에 따라 은행의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2장 이사회와 이사에 관한 사항

### 제1절 이사회

**제3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11.12.27., 2016.08.01.>

② 이사회가 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6., 2016.08.01.>

③ 은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02.26., 2016.08.01.>

**제4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은행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 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선임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5.02.26.>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또는 은행으로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사회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외부 법령 및 내부 규정에서 정한 중요 업무 집행에 관하여 결의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며, 은행 경영을 지원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며 세부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1.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직의 주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은행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6. 대주주·임원 등과 은행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은행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은행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종합적인 경영성과 및 분석(사업계획 추진실적 포함)
3. 사업그룹 별 주요 재무현황
4. 분기별 점포 변동 현황
5.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6.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7. 기타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법에서 정한 이사회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폐쇄에 관한 사항은 은행장에게 위임한다

⑤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은행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⑥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의 「결의사항 등」의 제·개정을 통해 권한 위임을 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 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제6조(이사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16.08.01.>

②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이를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08.01.>

③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른 이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소집 시에는 회일 7일전에 소집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결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회규정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결의사항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15.11.25., 2016.08.01., 2017.03.22.>

② 이사회 결의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를 갖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이사의 의결권 수는 출석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8.01.>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02.26.>

**제8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연1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한다.<개정 2011.12.27.>

② 제1항의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12.27., 2016.08.01.>

## 제2절 이사

**제9조(이사의 선임)** ① 상임이사는 지주회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상임감사위원은 지주회사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6.08.01., 2018.12.27.>

② 비상임이사는 지주회사와 협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08.01.>

④ 삭제<2017.02.24.>

⑤ 삭제<2017.02.24.>

⑥ 은행은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은행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08.01., 2016.08.22.>

**제10조(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

② 사내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46조에 따른다.<신설 2016.08.01., 2016.08.22.>

③ 상임이사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외부 법령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08.01.>

④ 비상임이사는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6.08.01.>

⑤ 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는 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개정 2015.02.26.>

⑥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개정 2015.02.26., 2016.08.01.>

1.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은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⑦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신설 2016.08.01.>

⑧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신설 2016.08.01.>

1.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11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주주이익의 보호 및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법률, 회계, 경영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 외부기관의 자문 용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은행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책무를 해태하여 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개정 2014.01.01.>

1. 사외이사: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
2. 상임감사위원인 이사: 3년 이내
3. 제1호 내지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이사: 3년 이내

② 제1항의 임기는 필요시 그 임기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03.27., 2014.01.01.>

③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당행 또는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개정 2012.03.27., 2014.01.01., 2017.03.22.>

④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제17조의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개정 2014.01.01., 2015.02.26., 2017.03.22.>

⑤ 삭제<2017.03.22.>

**제13조(이사의 퇴임)** ① 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의 직을 상실한다. 다만, 동법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11.12.27., 2015.02.26., 2016.08.01.>

② 주주총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한 경우 등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는 사임, 임기만료,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임한다.<개정 2016.08.01.>

③ 이사의 퇴임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최소 구성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은행은 이사를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은행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관계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08.01.>

**제14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은행,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26.]

**제15조(이사의 자료요청권 등)**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08.01.>

[본조신설 2015.02.26.]

**제16조(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은행,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 2016.08.22.>

② 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에의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은행(지주회사 및 계열회사 포함)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08.01.>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은행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개정 2016.08.01.>

⑤ 은행은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6.08.01.>

⑥ 은행이 제5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기부담액의 최대 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한다.

⑦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 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은행(계열회사 및 은행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은행이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해야 한다.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26.]

**제17조(이사의 평가)** ① 은행은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6.>

② 삭제<2017.02.24.>

③ 삭제<2017.02.24.>

④ 삭제<2017.02.24.>

⑤ 은행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한다.<신설 2015.02.26.>

⑥ 은행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신설 2015.02.26.>

⑦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

⑧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는 본 규범 제54조에 따른다.<신설 2016.08.01., 2016.08.22.>

⑨ 비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08.01.>

**제18조(이사의 보수)** ① 은행은 사외이사의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08.22., 2017.03.22.>

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수당, 직책수당, 회의 수당, 참가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은행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8.01.>

③ 사내이사의 보수는 본 규범 제55조에 따른다.<신설 2016.08.01., 2016.08.22.>

④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08.01.>

[본조신설 2015.02.26.]

**제19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운영)** ① 은행은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기획부를 사외이사 지원부서로 운영한다.<개정 2016.08.01.>

② 전략기획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08.01.>

1. 제4조 제6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2. 제2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업무 지원
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 전략기획부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 제2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

[본조신설 2015.02.26.]

**제20조(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은행은 이사가 은행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

② 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 2016.08.22.>

③ 은행은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일 2주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2.26.]

**제21조(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은행은 이사가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 회계, 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

[본조신설 2015.02.26.]

**제22조(이사에 대한 교육)** ① 은행은 선임 이사에 대하여 은행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6.08.01.>

1. 은행 또는 자회사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2. 다른 금융기관의 재직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임된 경우

② 은행은 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

[본조신설 2015.02.26.]

###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와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 제1절 이사회내 위원회

**제23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8.01., 2017.03.22.>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삭제<2016.08.01.>

②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다.<개정 2016.08.01.>

③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신설 2016.08.01.>

④ 이사회내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절차는 제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24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개정 2019.03.26.>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은행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제25조(감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 이사로 한다. 이 경우 감사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개정 2015.02.26.>

②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한다.<신설 2016.08.01.>

③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08.01.>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2016.08.01.>

⑤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3.03.27.>

⑥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체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03.27., 2015.02.26.>

⑦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5.02.26., 2018.11.01.>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의 제시
3.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의 제시
4.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 동의
5. 외부감사인의 선정
6. 외부감사인 해임 요청
7.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8.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9. 관계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10.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26조(상임감사위원)** ①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12.27., 2014.01.01., 2016.01.01., 2016.08.01.>

1. 은행장, 그룹장, 그룹장의 전결권을 갖는 상무 또는 본부장의 일상업무 집행에 대한 사전·사후감사
2. 감사 실시 등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4. 감사역 보직, 전보 등 인사 시 사전 협의 및 근무 평정
5. 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 개폐
6. 감사위원회가 지시 또는 별도로 결의하여 위임한 사항
7. 은행장 또는 감독기관이 의뢰하는 업무의 감사
8. 사고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
9.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가진다.<개정 2014.01.01.>

③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1조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1.12.27., 2014.01.01., 2016.08.01.>

**제27조(위험관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과반수로 한다.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03.27.>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5.02.26., 2016.08.01.>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은행의 위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보수위원회)** ①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하며,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5.02.26., 2017.03.22.>

②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수위원회는 경영진(“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부터 제35조까지 같다)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의결한다.<개정 2015.02.26., 2016.08.01., 2016.11.01., 2017.03.22., 2018.02.22., 2018.12.27.>

1. 경영진의 평가 및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
2. 경영진급 국외 현지법인장 평가 및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
3.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4.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안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6. 경영진, 본부장,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은행의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8. 은행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대상자의 결정
9.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0. 삭제<2018.12.27.>
11. 삭제<2018.12.27.>
12. 삭제<2018.12.27.>

④ 위원회는 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5.02.26., 2016.08.01.>

**제29조(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연1회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내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개정 2011.12.27., 2015.02.26., 2016.08.22.>

② 제1항의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12.27., 2016.08.01.>

**제30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연임 제한)** 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8.22., 2017.03.22.>

[본조신설 2015.02.26.]

**제31조(성과보수 기본원칙)** ① 보수위원회는 은행의 보수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보수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3.22.>

② 은행은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과도한 성과 보수 지급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08.01., 2017.03.22.>

③ 은행은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성과연계 보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으로 보수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다.<개정 2017.03.22.>

[본조신설 2015.02.26.]

**제32조(보수와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① 은행은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담당자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은행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은행의 보수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3.22.>

③ 은행은 보수위원회의 설치·운영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의 관리·감시활동내역을 서류로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03.22.>

[본조신설 2015.02.26.]

**제33조(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① 은행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 중 성과보수 비

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한다.<신설 2016.08.01., 2017.03.22.>

② 은행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상당부분은 성과보수이어야 하며, 개인, 해당 부서, 은행전체 차원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개정 2016.08.01., 2017.03.22.>

③ 은행은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은행의 경영진(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4조 및 제35조에서 같다),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보수제도를 설계한다.<개정 2016.08.01., 2017.03.22.>

[본조신설 2015.02.26.]

**제34조(이연지급)** ① 은행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는 담당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이연지급한다. 다만,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08.01., 2017.03.22., 2018.02.22.>

② 은행은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로 받는 성과보수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일정 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02.22.>

가.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인수, 팩토링 업무

나.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다.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의 발행 업무

라. 그 밖에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은행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③ 이연지급 시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작도록 한다.<신설 2016.08.01., 2018.02.22.>

④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한다.<신설 2018.02.22.>

[본조신설 2015.02.26.]

**제35조(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① 은행은 은행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은행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비상장법인인 은행은 지주회사 주식관련 상품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8.01., 2016.08.22., 2017.03.22.>

② 은행은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해서 부여시점 이후 최소 일정기간 동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은행은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기보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7.03.22.>

④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 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한다.<신설 2018.02.22.>

[본조신설 2015.02.26.]

**제36조(현금보수 지급 등)** ① 이연지급된 보수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수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17.03.22.>

② 지급확정기간 중 은행은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을 재무성과나 손실규모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본조신설 2015.02.26.]

**제37조(보수체계 재조정)** 은행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경우, 은행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보수체계를 건전한 리스크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되도록 재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03.22.>

[본조신설 2015.02.26.]

**제38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수의 제한)** ① 은행의 보장형 상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② 은행은 과도한 퇴직 보수로 은행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리스크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7.03.22.>

[본조신설 2015.02.26.]

**제39조(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등 금지)** 은행 임직원들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증을 활용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7.03.22.>

[본조신설 2015.02.26.]

**제40조(성과평가 지표)** ① 은행은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한다.<개정 2017.03.22.>

1.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반영
2. 고객만족도 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고객만족도 평가를 정기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
3.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비경상적인 요인들은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지표를 반영
4.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표를 반영
5. 은행의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변동보수 제도를 활용
6.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반영

③ 은행은 단기적 외형과 매출 확대를 지양하고, 수익성과 건전성의 조화, 고객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영업점 성과평가지표를 설정한다.

1. 은행의 장기적 수익성과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표를 구성
2.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방지와 관련한 지표를 적용

[본조신설 2015.02.26.]

## 제4장 경영진에 관한 사항

### 제1절 은행장

**제41조(은행장 경영승계 원칙)** ① 은행장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은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1.01., 2020.06.25.>

② 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은행장의 최소 자격요건
3.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4. 은행장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5. 은행장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6. 은행장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7. 그 밖에 은행장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은행은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경영승계계획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은행의 보고 내용을 점검하여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20.06.25.>

④ 은행은 소속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및 개발계획과 평가 및 개발활동 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한다.<신설 2020.06.25.>

[본조신설 2016.08.01.]

**제42조(은행장 경영승계 지원)** 전략기획부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은행장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개정 2011.12.27., 2012.03.27., 2014.01.01., 2016.01.01., 2016.08.01.>

**제43조(은행장의 자격)**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은행장으로 선임한다.

[본조신설 2016.08.01.]

**제44조(은행장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은행장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②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주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1.01.>

[본조신설 2016.08.01.]

**제45조(은행장의 추천 관련 공시)**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은행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6.08.01.>

1. 은행장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약력
3. 은행장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은행장 후보자 추천이유
6. 은행장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은행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02.26.]

## 제2절 경영진

**제46조(경영진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진이 되지 못한다.<개

정 2016.08.01.>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경영진의 겸직 제한과 관련해서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08.01.>

③ 은행장의 자격요건은 제43조에 따른다.<개정 2016.08.22.>

④ 은행장 외의 경영진은 도덕성을 갖추고,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통해 은행의 건전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6.08.01., 2016.08.22.>

⑤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경영진이 될 수 없다.<개정 2014.01.01., 2016.08.01.>

1. 감봉: 3년
2. 정직: 4년
3. 면직: 5년

**제47조(경영진의 권한과 책임)** ① 은행장은 은행을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은행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은행장 외의 경영진은 은행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한다.<신설 2016.08.01., 2016.08.22.>

③ 경영진은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

④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개정 2016.08.22.>

**제48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은행은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경영진(등기 임원 제외)의 선임 및 해임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② 은행은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를 명문화한다.

**제49조(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 ① 은행장은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08.01., 2020.06.25.>

② 은행장 외의 경영진은 지주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신설 2018.02.22., 2018.12.27., 2020.06.25.>

③ 이사회는 자질, 업적, 역량 등을 감안하여 경영진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경영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2018.02.22.>

④ 이사회는 은행장 외의 경영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에도 경영진의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08.01.>

1. 법규, 정관, 내규,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은행과 경영진간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서 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50조(업무대행자 선임 등)** ① 은행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전략기획, 재무기획,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결의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타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은행장이 정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08.01.]

**제51조(경영진의 임기)** 은행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따르며, 은행장 외의 경영진의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08.01.]

**제52조(경영진에 대한 교육)** ① 은행은 경영진에 대하여 은행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6.08.01.>

1. 은행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2. 다른 금융기관의 재직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은행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으로 선임된 경우

② 은행은 경영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

**제53조(경영진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 활용)** ① 은행은 경영진 후보자에 대하여 사내 또는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집합연수, 사이버강좌 등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경영진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직급에 따른 평가방식을 적용하되 재직기간 중 공적 및 과실 사항을 참고로 하며, 필요시 별도의 임원적합성평가 등을 추가로 할 수 있다.

③ 은행은 경영진 후보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경영진 선임 시에 고려한다.

④ 경영진 후보자가 외부전문가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16.08.22.>

[전문개정 2016.08.01.]

**제54조(경영진의 성과평가)** ①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1.12.27., 2015.02.26., 2016.08.01., 2016.11.01., 2017.03.22., 2018.02.22., 2018.12.27.>

② 경영진의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임원의 담당업무 성과 외에 지주회사 등 상위 조직 단위의 업무 성과와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1.12.27., 2015.02.26., 2016.08.01.>

③ 경영진의 대한 평가 결과는 보수의 지급, 재선임 또는 해임 시에 활용한다.<개정 2011.12.27., 2016.08.01.>

**제55조(경영진의 보수)** ① 경영진에 대한 보수는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02.26., 2016.08.01., 2016.11.01., 2017.03.22., 2018.02.22., 2018.12.27.>

② 경영진의 보수는 연봉(기본급, 단기성과급)과 활동수당으로 한다.<개정 2016.08.01.>

③ 경영진에 대해서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성과연동형 장기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2.26., 2016.08.01., 2017.03.22., 2020.02.26.>

[본조신설 2011.12.27.]

## 제5장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등

**제56조(내부통제체제)** ①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와 임직원 및 은행이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한다.<개정 2021.09.24.>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다.<신설 2021.09.24.>

[본조신설 2016.08.01.]

**제57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③ 은행이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은행은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6.08.01.]

**제58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가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 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본조신설 2016.08.01.]

**제59조(리스크관리체제)** ① 은행은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6.08.01.]

**제60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① 은행은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다.<개정 2017.03.22.>

② 은행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다.<개정 2017.03.22.>

③ 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03.22.>

④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03.22.>

⑤ 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개정 2017.03.22.>

[본조신설 2016.08.01.]

**제61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7.03.22.>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개정 2017.03.22.>

[본조신설 2016.08.01.]

**제62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03.22.>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은행의 본질적 업무(은행이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은행의 경영 업무
4.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6.08.01.]

**제63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7.03.22.>

② 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한다.<개정 2017.03.22.>

③ 은행 및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개정 2017.03.22.>

④ 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03.22.>

[본조신설 2016.08.01.]

## 제6장 공시

**제64조(정기공시)**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은행이 속한 관련 협회 등의 장이 정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08.01., 2016.08.22., 2017.03.22.>

1. 은행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은행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이유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사외이사후보 추천 개요
  -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임원 선임기준
  - 라. 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은행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 마. 법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바. 사외이사 후보와 은행(계열사 포함),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 카. 전략기획부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타. 은행장 후보자 추천이유 및 은행장 후보자의 경력
- 파.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
-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 포함),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현황
  -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은행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 라. 관련법령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 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및 운용현황
  -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카. 은행과 사외이사등이 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5. 은행장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
  - 나. 은행장 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라. 은행장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내역
  - 마. 은행장 후보군 관리 내역
  - 바. 지주회사의 이사회의 은행장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은행장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 6.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후보자와 제안자와의 관계
  - 다. 은행장 후보자 추천이유
  - 라. 은행장 후보자의 경력

7.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8. 위험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9.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권고·지시한 사항 및 은행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10.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② 은행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작성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08.01., 2017.03.22.>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을 포함한 은행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 체계의 주요 특성

3.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수를 포함한다)

4.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5.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6.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7. 회계연도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기준 최고 지급액

8. 회계연도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③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 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은행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성과보수는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개정 2017.03.22.>

④ 삭제<2017.02.24.>

[본조신설 2015.02.26.]

**제65조(수시공시)** ① 은행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한다.<개정 2016.08.01.>

② 은행은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한다.<개정 2016.08.01.>

③ 삭제<2017.02.24.>

[본조신설 2015.02.26.]

**제66조(주주총회)** ① 은행은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

한 안건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③ 은행은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한다.<개정 2016.08.01.>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부동산 임대차,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거래 현황 등과 주요 거래내역을 임원선임일 이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공표하고,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08.01.>

[본조신설 2015.02.26.]

**제67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개정 2016.08.01.>

[본조신설 2015.02.26.]

**제68조삭제**<2017.02.24.>

부칙

이 규범은 2011. 5.1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범은 2011. 8.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범은 2011. 12.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범은 2012. 3.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범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범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범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범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범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범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범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범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범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범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

2004. 5. 10 제정  
2005. 6.29 개정(1)  
2009.11.12 개정(2)  
2010. 2.26 개정(3)  
2011.2.8 개정(4)  
2011.2.21 개정(5)  
2015.2.26 개정(6)  
2015.8.24 개정(7)  
2016.8.1 개정(8)  
2018.2.20 개정(9)  
2018.12.12 개정(10)  
2019.12.13 개정(11)  
2020.5.21 개정(12)  
2021.3.25 개정(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회사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2021.3.25 신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10.2.26 시행) (2021.3.25 개정)  
②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한 위원은 자회사 경영관리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21.3.25 개정)  
③ 당해 자회사 경영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이사 아닌 경영진 및 제6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의 감사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결의 및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2021.3.25 개정)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4.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5. 자회사 감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해 달리 결의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제7조(자회사 경영승계계획)**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제안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의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수립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평가 및 개발활동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프로세스

**제8조(후보추천 및 검증)**

① 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경영승계 계획 상의 가속승계 절차를 따른다.

④ 회사는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자회사 대표이사 대행자 및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6.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21.3.25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계인 출석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적용범위)** 제6조 및 제7조는 자회사 중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4. 5. 10부터 시행한다.

## 부 칙(1)

1.(시행일) 이 규정은 2005. 6. 29부터 시행한다.

## 부 칙(2)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3)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4)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5)**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6)**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26부터 시행한다.

**부 칙(7)**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8.24부터 시행한다.

**부 칙(8)**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9)**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0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제5조 제5항은 제주은행의 경우 2018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관련 규정을 변경한 때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10)**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12.12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12.13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5.21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3.25부터 시행한다.